Ⅳ. 신라의 정치ㆍ경제와 사회

- 1. 중앙통치조직
- 2. 지방・군사제도
- 3. 경 제
- 4. 사회구조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1. 중앙통치조직

1) 관등과 관직

진한연맹체를 구성한 하나의 邑落國家에 불과하였던 斯盧國은 3, 4세기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최후의 승자가 됨으로써 新羅라는 새로운 모습을 띤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 4세기 중반 奈勿王代부터 사용된 麻立干이라는 王號는 그와 같이 변모된 국가에 어울리는 칭호였다.1) 그러나소위 마립간시대에는 아직 피복속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지배할 정도로 중앙의 지배체제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자연히 재지세력을 통하여 간접지배를 행할 수밖에 없었다.2)

복속된 재지세력들 가운데에서 일부에게는 중앙정부가 干과 같은 직책을 부여하여서 기존의 지배권을 계속 승인하여 줌으로써 신라의 지배체제내로 포섭하려고 하였으며,3) 한편 다른 일부는 왕경으로 옮겨서 部에 배속됨으로

¹⁾ 마립간이란 왕호의 첫 사용시기에 대해서는《三國遺事》는 내물왕대부터로,《三國史記》는 눌지왕대부터라하여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북중국 前秦과의 최초의 교섭에서 신라의 사신인 衛頭와 前秦王 苻堅과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서도 그를 짐작할 수 있다(《太平御覽》권 781,新羅 및《三國史記》권 3,新羅本紀 3,내물니사금 26년). 한편이 시기에 이르러 대형의 봉분과 막대한 부장품을 수장하는 積石木槨墳이 출현하는 것도 그와 같은 변화의 일단을 입증하여 준다.

²⁾ 당시의 지방지배 형태를 한마디로 貢納制에 바탕한 간접지배라고 일컫고 있지 만 그 구체적인 실태는 다양하였다.

^{3) 《}三國史記》권 45, 列傳 5, 朴堤上傳에 보이는 水酒村干・一利村干・利伊村干 등에서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복속되기 이전에는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 韓條에 보이는 臣智・險側・樊濊・殺奚・邑借 등으로 불리웠다. 따라서 干의 지급은 곧 그들을 신라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써⁴⁾ 재지적인 기반이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4, 5세기는 크게 보아 기존의 지배체제가 기본적으로 온존된 상태에서 재편을 준비해 간 과 도기였다고 하겠다.

신라가 그와 같이 느슨하게 짜여진 마립간적인 지배체제를 벗어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로의 전반적인 전환을 시도한 것은 6세기 초의 智證王(500~513)과 法與王(514~539)대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에 왕경과 지방에 걸쳐 존재한 다양한 지배세력을 대대적으로 재편성하면서 部가가지고 있던 기능에 대신하여 보다 작은 범위의 혈연을 근간으로 한 집단적인 신분제로서 성립한 것이 骨品制라면 지배세력 개인이 관료조직 속에서 차지하는 서열의 표시로서 마련된 것이 바로 官等制였다. 개인적인 신분표시로서의 성격을 띤 관등제가 혈족적인 신분제인 골품제의 테두리 속에서 운용된 만큼 양자는 당연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관등제는 원래 읍락국가단계 이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체에서의 席次나 서열을 표시하는 데에서 원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 그러나 마립간시대에는 아직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인 관등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정치적·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독자성을 지녔던 왕경의 部들을 기반으로 한 部長들은 干이라 칭하면서 각기 국왕에 직속되지 않고 그들에 예속된독립된 관료조직을 갖추고 있었다.6) 국왕도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부에 세력기반을 가진 부장으로서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또한 지방에서도 간이라 불리는 재지세력들이 나름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마립간시대의 국왕이란 마립이 宗・頭를 뜻하는 데서 드러나듯이기 왕경과지방에 각기 독자적인 기반을 가진 채 존재하는 간들의 중층적인 구조에 바탕을 두고 그 상위에 위치하였을 뿐 이들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간

⁴⁾ 대표적으로는 骨伐國王 阿音夫가 來降하여 왔을 때 第宅·田莊을 주어 왕경에 안치시키고 그 곳을 郡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례를 손꼽을 수 있겠다(《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조분니사금 7년).

⁵⁾ 李丙燾,〈古代南堂考〉(《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 1, 1954;《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628~631等).

^{6)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23년.

⁷⁾ 李丙燾, 앞의 책, 626~628쪽.

들 가운데 일인자였을 따름이다. 이처럼 마립간시대의 다원적인 관료조직이 바탕이 되어⁸⁾ 6세기 초에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가 성립되고 부장이나 재지세력이 가졌던 독자적인 기반이 해소되면서 일원적인 관등제가 성립하였던 것이다.

관등은 서열화된 것이지만 그 자체에는 원래 관직적인 요소를 동시에 내 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마립간시대에는 관등과 관직이 미분화된 상태였다. 가령 伊湌이나 阿湌 등은 그 자체가 서열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관직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원적인 관등제가 성립하고 난 뒤 관등인 大舍・舍知・吉士 등이 여전히 관직으로도 기능하고 있는 데서도 방증된다. 9) 그런 의미에서 관등제의 성립이란 다른 한편으로는 관등에 내재된 관직적인 요소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관등제가 성립한 후 새롭게 관직이 설치되는 것은 그를 증명한다.

흔히 관등제라고 하면 京位制를 지칭하지만 통일 이전의 신라 관등제에서는 경위제와 外位制의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다. 경위는 제1등인 伊伐滾(角干)에서 造位에 이르기까지 17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왕경인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였다. 이 17등의 기본적인 경위 이외에도 군공포상 등의 필요에서 때로는 1등인 각간의 상위에 大角干과 太大角干까지 두어지기도 하였으나이들은 상설된 관등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非常京位였다.10) 그런 의미에서 경위 17등의 골격은 멸망기까지 변함없이 존속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골품제와의 관련하에서 重位制를 운용한 것은 관등제상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三國史記》에는 경위 6등인 阿湌이 重阿湌에서 4重阿湌까지, 10등인 大奈

⁸⁾ 朱甫暾, 〈新羅 中古期 村落構造에 대하여(1)-外位와 地方民 身分制->(《慶 北史學》9, 1986), 14~15쪽.

^{9)《}三國史記》권 33, 志 2, 色服志의 冠制 사례나 진흥왕 22년(561)에 건립된〈昌寧 眞興王 巡狩碑〉의 古奈末典에서 알 수 있듯이 奈麻와 大奈麻도 관직으로 사용된 듯한 흔적이 엿보인다.

^{10) 《}三國史記》권 38, 志 7, 職官 上. 여기에서는 대각간이 660년 백제 멸망 후 김유신을 군공포상하면서 처음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三國史記》권 44, 列傳 4, 居柒夫傳과〈昌寧碑〉에 각각 大角淮・大一伐干의 사례가 보이므로 그것은 착오임이 분명하다. 통일 이후 대각간은 17관등의 위에 상설 관등으로 자리잡아 가는 추세에 있었다. 몇몇 관직의관등범위가 대각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麻는 重奈麻에서 9重奈麻까지, 11등인 나마는 중나마에서 7重奈麻까지로 분화한 것으로 되어 있고¹¹⁾ 또 9세기 금석문에 의하면¹²⁾ 8등인 沙飡에도 중위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들 중위제의 운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논자들에 따라 약간의 이견이 제기되어 있으나¹³⁾ 관등제가 골품제와의긴밀한 관련 아래에서 운용되었던 데서 중위제가 생겨난 것으로 보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중위가 설정된 관등은 그를 상한으로 승진상의 제약을받는 골품소지자에 대한 특진의 길로서¹⁴⁾ 마련된 것이었다. 이 중위제는 7세기에 들어와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17등 경위는 그 명칭으로 볼 때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등이벌찬에서 9등 級湌에 이르는 湌(干)群과 10등 대나마 이하의 非湌(干)群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비찬군 경위는 다시 奈麻群과 12등 大舍 이하의 舍知群으로 분류된다.15) 양자를 구별하려는 것은 나마군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먼저 표기 방법상에서 나마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6세기 전반기에는 금석문에 의하는 한 찬군은 干支란 語尾를 사용하였으며, 사지군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 帝智・第・智 등이 붙어 있다가 6세기

^{11)《}三國史記》권 38, 志 7, 職官 上.
이 밖에 阿湌 重位는〈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를 비롯한 몇몇 금석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¹²⁾ 文聖王 18년(856) 만들어진〈新羅 竅興寺鐘銘〉에 三重沙干의 사례가 보인다.

¹³⁾ 大奈麻 重位를 부정하는 견해(末松保和,〈梁書新羅傳考〉,《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 1954, 406~407쪽)와 奈麻 重位를 부정하는 견해(邊太燮,〈新羅 官等의 性格〉,《歷史敎育》1, 1956, 70~76쪽)가 있는가 하면,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도 있다(武田幸男,〈新羅の骨品體制社會〉,《歷史學研究》299, 1965, 3쪽). 한편나마 중위에 대해서는 大舍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했던 4頭品 출신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三池賢一,〈新羅の官位制度〉下,《駒澤史學》18, 1971, 20~21쪽), 지방민의 특진의 길로 마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鍾旭,〈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歷史學報》64, 1974, 61~62쪽).

¹⁴⁾ 末松保和, 위의 책, 404~405쪽. 한편 李基東,〈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135쪽에서는 중위제가 진골 중심 의 골품제와 비진골 중심의 관료제라는 두 개의 異質的인 階層, 原理가 서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도달한 일종의 妥協點이라고 하였다.

¹⁵⁾ 三池賢一,〈「三國史記」職官志外位條の一解釋〉(《駒澤大學研究紀要》5, 1970), 113 ~115쪽에서는 경위를 干群・mar系・雑類의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三池는 나마와 대나마를 대사・사지와 함께 mar계로 취급하였다.

중반 무렵에는 모두 탈락되었다. 干群에 비추어 보면 그 語義는 알 수 없지만 사지군은 모두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16) 그런데 나마만은 아무런 語尾가 원래부터 없어 이들과는 구별되고 있다.17) 둘째 나마는 한편으로는 기록상의 착오인지 모르겠으나 푸이란 어미를 갖기도 하였다.18) 따라서 이로 보면 나마는 사지군보다는 오히려 간군에 가까운 성격의 관등이었을 듯한 느낌이 든다. 셋째 그와 관련을 갖는 것이지만 〈봉평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마군은 간군과 동등하게 회의체에 참여하는 존재로 되어 있다.19) 이후의 금석문들에서도 대사 이하는 회의체 참여가 배제된 반면 나마는 그 구성원이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경위 17등은 3등분해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경위가 왕경인을 지급대상으로 한 관등인 반면, 1등인 嶽干으로부터 11등 阿尺에 이르는 11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진 외위는 지방민을 지급대상으로 하였다. 외위는 1등에서 7등인 간에 이르기까지의 간군과 8등 一伐에서 11등 아척에 이르는 비간군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간군외위는 7등인 간에서 분화한 것이며, 비간군외위의 명칭이 경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20) 원래 외위

¹⁶⁾ 干群 京位 가운데서도 伊伐湌과 3등인 洒湌은 그 異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나 분화과정이 다른 관등과는 달랐던 것 같다. 원래 각각 달리 성립되었 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듯한 느낌이 짙다.

¹⁷⁾ 그런데 末松은《日本書紀》에 보이는 奈麻禮란 사례에 근거하여 나마계에도 원래 知가 붙었을 것으로 보았으나(末松保和, 앞의 책, 405쪽),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금석문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奈麻의 표기 변화에 대해서는 權惠永,〈新羅 官等 阿湌·奈麻에 對한 考察〉(《國史館論叢》21, 國史編纂委員會, 1991, 48쪽) 참조.

^{18)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 新羅. 《翰苑》 권 30, 蕃夷部 新羅.

¹⁹⁾ 이런 의미에서 나마는 다원적인 관료조직이 갖추어져 있던 시기에는 원래 국왕이나 그에 버금가는 萬文王에 속한 관료였고 다른 部長들에게는 없었던 관료가아니었나 싶다. 그런 뜻에서 3세기 단계에 보이는 고구려의 다원적 관료체계의시기에 국왕에게만 속한 主簿나 혹은 優台와 같은 성격의 관등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舍知系는 고구려의 使者 계통의 관등이 아니었을까 싶다. 고구려 관등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金哲埈,〈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博士華甲記念論叢》, 1956;《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참조.

²⁰⁾ 외위 8등 一伐, 9등 一尺, 10등 彼日, 11등 阿尺은 각각 경위 1등인 伊伐湌, 2등 인 伊尺湌(伊湌), 3등인 波珍湌, 6등인 阿湌과 간을 제외하면 같다(武田幸男, 앞 의 글, 10쪽 및 盧泰敦, 〈三國의 政治構造와 社會經濟〉, 《한국사》 2, 국사편찬위

는 간 이하의 하위 다섯 관등이 경위를 바탕으로 먼저 성립되었고 그 다음 상위의 간군외위가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외위 11등 체계는 두 단계의 과정을 밟아 완성되었던 것이다.21) 17등 경위나 비간군외위의 명칭이 순수한 신라식인 것과는 달리 嶽干・述干・高干・貴干・撰干・上干 등 간군외위의 명칭은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한문식인 점도 그러한 사정을 방증하여 준다. 간은 원래 족장층 가운데 한정된 세력에게 주어진 것인 만큼 여기에서 분화된 간군외위는 재지세력 중에서도 특정 집단만이 수여받았던 것같다. 골품제와 경위제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간군외위와 비간군외위 사이에는 지방민들의 신분에 따라 커다란 斷層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위와 경위는 운영상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경위는 군공에 의한 포상으로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공에 따라 승진한다는 의미에서22) 관료제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 반면 외위는 주로 포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관등제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일정하게 신분적인 속성을 강하게 띤 것이 아닌가 한다. 골품제에서 제외된 지방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가 따로 마련될 필요가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7세기 초를 전후로 한 어느 때부터 군공포상 등을 목적으로 지방민 가운데서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외위 대신 경위를 지급하기 시작하다가 통일 후인 文武王 14년(674)에 이르러서는 지방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에 외위 대신 경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외위는 소멸되고 따라서 관등은 경위로 일원화되었다.23) 이처럼 왕경인과 지방민을 구별지워 관등제를 마련한 것은 중고기 신라 관등제 운용상의 큰 특징의 하나였다.

원회, 1978, 210쪽).

²¹⁾ 朱甫暾,〈6세기초 新羅 王權의 位相과 官等制의 成立〉(《歷史教育論集》13·14, 慶北大, 1990), 268쪽.

하일식, 〈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와 外位制〉(《學林》12·13, 延世大, 1991), 30 ~35쪽.

^{22) 〈}鳳坪碑〉에 보이는 愼宂智와 蔚州〈川前里書石〉의 眞宂智가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524년에는 9등 級湌, 525년에는 沙湌, 539년에는 波珍湌으로 되어 있어 그 의 관등 승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²³⁾ 三池賢一, 앞의 글(1970), 118~121쪽 및 武田幸男, 앞의 글, 11~12쪽 참조. 이 상과 같이 보면 경위와 외위의 관등대비표는 통일기에 한정하여 사용된 것으로 이해하여야지 이를 중고기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관등제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삼국사기》권 1, 신라본기 1, 儒理尼師今 9년(32)조의 기사를 그대로 따라 이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부터 6 세기 이전 성립설, 6세기 초 성립설, 또는 6세기 이후 단계적 성립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智證王 4년(503)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迎日 冷水里 新羅碑〉(이하〈냉수리비〉로 약칭함)에 의하면 미분화된 형태의 干支가 보이는 점, 部別로 인명을 나열하여 다원적인 관등 제의 존재를 시사하는 점, 관직을 소지하였으면서도 관등을 소지하지 않은 사례가 보이는 점 등에서 관등제의 초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아직이 때까지는 경위 17등과 외위 11등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음이 확실하다.

〈표 1〉 〈영일 냉수리 신라비〉에 보이는 관등

면

區 分	部 名	人 名	官 等	備考
	沙喙	至 都 盧	葛 文 王	
		斯 德 智	阿 于 支	
		子 宿 智	居伐于支	
七王等	喙	亦 夫 智	壹 干 支	會議參與者
		只 心 智	居伐于支	
	本 彼	頭腹智	于 支	
	斯 彼	暮 斳 智	于 支	
	沙喙	壹 夫 智	奈 麻	
		到 盧 弗		
		須 仇 ?		
典事人	喙	心 訾 公	(耽 須 道 使)	實務執行者
	喙	沙夫那		
		斳 利		
	沙喙	蘇那支		

한편 법흥왕 11년(524)에 건립된〈蔚珍 鳳坪 新羅碑〉(이하〈봉평비〉로 약칭함)에는 大阿干支·大奈麻 등과 함께 小舍·吉之·小烏·邪足智 등의 하위 관등이 보이므로 이 때에는 경위 17등 체계가 완성되었음이 거의 틀림없다. 또한 봉평비에는 下干支를 비롯하여 一伐·一尺 등이 보이므로 외위 가운데 간 이하 비간군외위가 성립하여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간군외위는 이 시기 이후의 어느 시기에 분화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6세기초 금석문에 근거하면 경위는 지증왕 이후 법흥왕대에 이르는 사이에 완성되어 법흥왕 7년(520)에 반포된 律令 속에 법제화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 때까지 7등인 간 이하 11등 아척에 이르는 외위 다섯 관등은 먼저 성립되었으나 간군외위의 분화는 약간 늦었던 것 같다²⁴⁾.

〈표 2〉 〈울진 봉평 신라비〉에 보이는 관등

區 分	部	名	人 名	官 等 名	備考
所 教 事 層	喙	部	牟 卽 智	寐 錦 王	
	沙	喙部	徙 夫 智	葛 文 王	
	本	波部	? 夫 智	于 支	
	岑	喙部	? 昕 智	于 支	
	沙	喙部	而 ? 智	太 阿 干	
			吉 先 智	阿 干 支	
			一毒 夫 智	一吉干	会議益阳老
	喙 部	部	勿 力 智	一吉干	會議參與者
			愼 宂 智	居伐于	
			一 夫 智	太 奈 麻	
			一 亦 智	太 奈 麻	
			牟 心 智	奈 麻	
	沙	喙部	十 斯 智	奈 麻	
			悉介智	奈 麻	
	喙	部	內 沙 智	奈 麻	
	沙	喙 部	一登智	奈 麻	實務執行者
大人			? 次	邪 足 智	
	喙	部	比 須 婁	邪 足 智	

신라의 관등제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뒤늦게 성립되었던 만큼 그로부터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신라의 地方制나 軍制가 고구려 또는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고구려의 관

²⁴⁾ 朱甫暾, 앞의 글(1990), 264~268쪽.

등제는 족장을 의미하는 兄과 租稅收取 등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使者가 기본이 되어 분화하였는데²⁵⁾ 제5등인 皂衣頭大兄 이상은 국가의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였다고 한다.²⁶⁾ 신라의 경위는 크게 간군과 비간군으로 나누어지며 간은 형과 같이 족장을 의미한다. 비간군은 대나마에서 조위까지이나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사지로서 고구려의 사자와 동일한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관등이 형과 사자가 기본이었듯이 신라의 17등 경위도 간과 사지가 바탕이 되어 분화한 것으로 보면 어떤 영향 관계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신라의 경우 제5등인 대아찬과 6등인 아찬 사이에 단층이 있어 그이상의 관등이 진골에게만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부의 장관이 대아찬이상에게만 한정되었던 것도 고구려와 관등제의 운용에서 유사성을 느끼게한다. 다만 고구려의 경우 兄系와 使者系가 정연하게 정비된 것이 아니라 뒤섞여 서열화된 반면 신라의 그것은 간군과 비간군이 정연하게 분화한 점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이 점에서는 신라의 관등이 백제의 관등과 오히려유사하다. 백제의 16관등이 率・德・督 등의 어미를 가진 각 群別로 정연하게 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신라 관등제와의 유사성이 찾아진다. 게다가관등과 색복과의 관계에서도 양자 사이에는 어떤 영향 관계가 엿보인다. 신라의 公服이 紫・緋・靑・黃의 넷으로 구분된 반면 백제의 그것은 자・비・청으로 3구분이지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요컨대 삼국의 관등제는 상호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신라 관등제가 가장 늦게 성립된 만큼고구려나 백제로부터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운영상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6세기 관등제가 성립된 후 신라의 관료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것은 官府나 官職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豫邑의 지급이나 기타 업무의 수행은 관등

²⁵⁾ 金哲埈, 앞의 책, 129~138쪽.

^{26) 《}翰苑》 권30, 蕃夷部 高麗.

武田幸男,〈高句麗官位制の史的展開〉(《朝鮮學報》86, 1978;《高句麗史と東ァジァ》, 岩波書店, 1989, 395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신라와 마찬가지로 관등 5등을 경계로 신분적인 斷層을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법흥왕 이후 진흥왕·진평왕대를 거치면서 점 차 관부가 증치되고 관직체계가 갖추어지면서 관등과 관직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운영되었다. 이제 관료제의 운영 자체는 관등 중심에서 관직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삼국사기》 직관지에는 각 관직에 취임 가능한 관등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하나의 관직에 취임 가능한 관등이 하나만 대응된 것이 아니라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고 그 폭이 상당히 넓었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나 후대의 고려·조선과도 다른 신라 관등제 운영상에 보이는 현저한 특징인 듯 싶다. 고구려의 경우 사례는 많지 않으므로 잘 알 수는 없으나 하나의 관직에하나의 관등만이 대응되는 예도 있고 또 다른 몇몇의 관직에는 어떤 관등이상이라고 하여 상한을 설정해 두지 않기도 하였다. 27) 반면 백제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나의 관직에 하나의 관등만이 대응되도록 하였다. 28) 이들 몇몇 사례만으로서 그 관직과 관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보아도 하한과 상한을 명백히 규정한 신라와는 다르다. 이처럼 규정된 이유는 관등과 관직이 골품제에 의해 제약받았던 데서 비롯된것이 아닐까 싶다. 29)

신라의 관등제와 관직의 관계가 게재되어 있는 《삼국사기》 직관지는 통일 이후 대대적인 정비과정을 거친 것을 토대로 다시 정리한 것이므로 통일 이 전의 사정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30) 그러나

^{27)《}翰苑》 권 30, 蕃夷部 高麗.

^{28) 《}翰苑》 권 30, 蕃夷部 百濟. 《北史》 권 94, 列傳 82, 百濟.

²⁹⁾ 李基東, 앞의 책, 135~136쪽.

³⁰⁾ 가령 軍主의 경우《三國史記》권 40, 志 9, 職官 下에 의하면 취임할 수 있는 관등 범위가 9등인 級湌에서 2등인 伊湌까지이지만 법흥왕 11년(524)의 〈봉평비〉에는 奈麻로 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과 어긋난다. 또한 진흥왕 22년(561)의 〈昌寧碑〉에는 四方軍主의 관등이 8등인 沙湌과 9등인 급찬이며 〈赤城碑〉에서는 阿湌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두 사례는 모두 위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처음에는 각 관직에 따른 관등의 범위가 직관지의 규정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다가 오랜 운용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그 폭이 확대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점은 금석문상에 보다 많이 보이는 道使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도사가 현령의 전신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현령의 관등 범위는 17등 造位에서 8등인 사찬까지로 되어 있다. 그런

그를 감안하더라도 통일 이전의 관등과 관직의 운용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짐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를 토대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하면 관등과 관직의 관련은 그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관직의 관등범위에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는 경우이다. 가령 兵部의 장관인 병부령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의 범위는 대아찬에서 태대각간까지로 규정되었을 뿐 그 외의 단서조항이었다. 각 관부의 장관뿐만 아니라 직관지에 보이는 대부분의 하위직들의 경우에도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고 그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른 형식이 몇 가지 보이는데 관등과 관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일반적인 형식보다도 이 점을 오히려 주목 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직관지의 정리과정에서 바뀌지 않은 원형의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먼저 신라 중고기의 핵심적인 군단인 6停의 최 고지휘관 將軍의 경우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 범위는 眞骨上堂에서 上臣까 지로 되어 있다. 上堂과 상신이 관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서는 마 치 관등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6정의 장군직은 다른 관직이 겸하는 관직이었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31) 말하자면 다른 관부의 상당 이상 상대등에 이르는 관직이 6정의 장군직을 겸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골상당이라고 한 것은 상당에 취임할 수 있는 골품이 진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6두품 혹은 그 이하도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 진골만이 취임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제약규정이 보이지 않는 軍主(都督) 나32) 仕臣에는33) 그러한 단서조항이 누락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는 신라사 회가 진골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와 관련되 는 뚜렷한 사례로 9誓幢의 장군은 眞骨級湌에서 각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데 금석문상에서는 大舍·小舍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근이 일반적인 관등 범위 였던 듯한데 이후 관직운영에서 그 범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하겠다.

³¹⁾ 朱甫暾,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新羅文化》3・4, 1987), 28쪽.

³²⁾ 申瀅植、〈新羅軍主考〉(《白山學報》19, 1975;《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4, 212等).

³³⁾ 李基東, 앞의 책, 133쪽.

그런데 6정과 9誓幢의 고급 군관인 大官大監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 범위가 진골은 舍知에서 阿湌까지, 6두품은 奈麻에서 4重阿湌까지로 골품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은 다른 관직의 관등 규정과 관련지어서 보면 주목할 만한사실이다. 다른 관직도 원래는 모두 그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되었을 것으로보이는데 직관지가 편찬될 때 골품에 따른 구분없이 하나로 정리되어 버리므로써 관등 범위는 원래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동일한 관직에도 이처럼 골품에 따라 관등의 범위가 달랐던 점은 신라 골품제 사회의 한 특징을 여실히 보여 준다.

요컨대 관등은 그 자체에 관직적 성격을 원래부터 지녔으나 그를 해소하여 일원적인 기준하에 서열화함으로써 성립되게 되었다. 초기에는 하나의 관직에 취임 가능한 관등의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았으나 운용의 과정에서 점차 상한과 하한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운용에서 보다 범위가 늘어났던 것은 골품제와 관등, 관직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하나의 관직에는 골품에 따른 관등 범위가 각기 달랐을 터인데 이것이 직관지의 정리과정에서 골품에 따른 차등이란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버리고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등 범위가 실제보다 늘어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직관지의 관직과 관등의 관계를 이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행정조직

신라에서 중앙행정관부가 설치되고 행정을 전담하는 관직이 두어지기 시작한 것은 6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관부는 거의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에도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서 관직을 둔 경우는 있었는데 당시의 관직 자체는 서열적 성격을 띠었으므로 이들은 6세기에관등으로 발전하여 갔던 것이다.34)

관부가 설치되기 이전의 행정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나마 〈냉수리

³⁴⁾ 中古期에 관부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면서도 관부가 두어지기 이전에 관직이 먼저 두어지거나 장관보다도 실무자가 먼저 두어진 사례가 많았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정에서 연유한다.

비〉나〈봉평비〉에서 엿볼 수 있다. 이들 비문에 보이는「此七王」과 典事人이나 (〈표 1〉참조), 所敎事집단³⁵⁾과 大人³⁶⁾의 사례에서(〈표 2〉참조) 알 수 있듯이 관료조직은 크게 회의체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층과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층의 두 집단으로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었고 그 내부에는 다시 역할이 분담되었을 것이다.³⁷⁾ 이는 관부조직을 통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인간 중심으로³⁸⁾ 운영되던 신라 초기 행정조직체계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 중심의 행정체계로서는 처리해야 할 사무의 규모가 간단하고 수가 적을 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하고 다양해지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5세기 후반 이후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직접 지배로 전환하면서 행정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다. 게다가 주변세력과의 접촉이 확대되면서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이 빈발하였고 그에 따른 군사적인 수요가 높아졌다. 또한 4~6세기에 걸쳐 새로운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나 牛耕의 도입으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면서 경제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났을 것임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39) 이에따라 그를 관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기존의 중앙행정조직은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행정관부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인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행정조직은 이제 세분화・전문화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당도하게

³⁵⁾ 所敎事集團의 14인 가운데 매금왕과 갈문왕만이 敎를 발하는 주체로 나머지 12 인을 객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文暻鉉,〈居伐牟羅 男彌只碑의 새 檢討〉,《朴永 錫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297~299쪽).

^{36) 〈}봉평비〉의 해당 부분에서는 앞의 '?事'까지 넣어서 '?事大人'으로 읽는 것이 타당할 듯하나(李宇泰,〈蔚珍鳳坪新羅碑의 再檢討〉,《李元淳敎授停年紀念 歷史學論叢》, 敎學社, 1991, 109쪽) 여기에서는 편의상 大人이라고 하였다.

³⁷⁾ 이를테면〈냉수리비〉의 典事人 가운데 沙喙 출신의 蘇那支는 동일한 부 출신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고 喙部 출신자들의 밑에 기록된 데서 그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所敎事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寐錦王이나 葛文王이 회의체 내에서 행한 역할이 같았을 리는 없으므로 그들 간에도 역할에 따른 소구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38) 〈}냉수리비〉의 典事人이나〈봉평비〉의 大人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³⁹⁾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4~5세기 新羅社會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8. 1991).

全德在,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사회변동〉(《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 연구회, 1990).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관부와 관직의 설치로 나타났다.

중앙관부로서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법흥왕 4년(517)의 兵部이며 장관인 병부령은 그에 앞서 같은 왕 3년에 두어졌다. 이후 점차적인 과정을 밟아 여러 중앙의 행정관부와 관원이 증치되어 갔으며 하나의 완성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은 神文王 5년(685)에 이르러 각 관부를 令一卿一大舍一舍知一史의 5등관제로 갖추면서부터이다.40) 그런데 통일 이전의 중앙행정관부 설치시기와 그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41).

첫째 시기는 법흥왕과 진흥왕대이다. 법흥왕 18년에는 上大等이 두어졌고, 진흥왕 5년(544)에는 관리의 斜察을 담당하는 司正府⁴²⁾의 차관인 卿 2인, 진흥왕 26년에는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執事部의 전신인 稟主에 후일 차관직이 되는⁴³⁾ 典大等 2인이 두어졌다. 이렇게 보면 이 시기에는 하부관원이 없는 상대등을 일단 논외로 하면 병부에만 장관인 령이 두어졌고 나머지는 뒷날의 차관직을 최고관원으로 한 셈이다.

병부의 관원 설치를 보면 大監은 진평왕 45년(623), 弟監은 11년, 弩舍知와 弩幢은 文武王 12년(672)이나 5등관인 史의 설치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이 사는 법흥왕 4년 병부의 설치와 함께 두어졌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법흥왕 3년에 병부령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4년에 다시 병부를 설치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사의 설치 외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감이 설치되는 진평왕 11년 이전까지 병부는 수과 史 두 관원으로 구성된 셈이다.

⁴⁰⁾ 李基白,〈新羅 執事部의 成立〉(《震檀學報》25·26·27, 1964;《新羅政治社會史 研究》,一潮閣, 1974, 154等)

⁴¹⁾ 李基白,〈稟主考〉(위의 책), 141쪽. 이 논문에서는 통일기까지를 포함하여 4期로 분류하였으나 여기서는 통일 이후는 논외로 하였다.

⁴²⁾ 사정부는 태종무열왕 6년(659)에 두어졌으나 이 때에는 장관인 令이 설치된 것이 며(李基東, 앞의 책, 124~125쪽) 그 차관인 卿이 설치된 것은 진흥왕 5년이다.

⁴³⁾ 품주의 전대등이나 사정부의 경도 그 장관인 중시나 령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그 자체가 장관이었음은 물론이다. 후일 그 위에 상급관직이 두어지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차관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품주와 사정부도 그에 준하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령 품주의후신인 집사부의 구성관원의 설치 연대를 보면 장관인 中侍는 진덕왕 5년 (651), 대사 2인은 진평왕 11년(589), 사지 2인은 신문왕 5년(685)에 설치되었고 5등관인 사의 설치 연대는 알 수가 없다. 하나의 관원으로 관부가 구성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⁴⁴⁾ 전대등이 설치되던 진흥왕 26년(565)에는 사가 함께 두어져 품주란 관부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조롭다.

이상과 같이 보면 첫째 시기에는 병부·품주·사정부 등 3개 관부가 설치되었으며 관원구성이 장관(차관)과 실무자의 이원체제로 된 것이 특징이었다. 병부령 1인이 진흥왕 5년 증치된 뒤에는 장관 2인과 복수의 실무자가 기본적인 관원구성이었다고 하겠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냉수리비〉와 〈봉평비〉에 보이는 此七王—典事人,所敎事—大人이란 2원적인 체계와 지극히 유사하다. 아마도 앞선 시기의 그와 같은 이원적인 운영체계가 관부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닐까 싶다.

또 하나 이 시기의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병부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품주와 사정부는 그 장관의 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던 점으로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병부에 예속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품주는 租調의 출납을 관장하였을 터이지만 이는 지방조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방을 관장한 병부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품주의 존립은 불가능하였다. 한편 사정부의 감찰대상이 되는 관리란 지방관과 군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병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품주와 사정부의 관원이 병부에 미치지 못하는 조직을 갖추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데에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병부가 행정관부의 중심에 놓였던 것은 신라의 성장과 발전이란 당시의 대내외적인 사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하겠다. 설치 연대가 명시되어 있는 大官大監(진흥왕 10년)・弟監(진흥왕 23년)・監舍知(법흥왕 10년)・少監(진흥왕 23년)・軍師幢主(법흥왕 11년) 등의 軍官이 모두 이 시기에 설치되는 것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⁴⁴⁾ 井上秀雄, 앞의 책, 278쪽에서는 당시의 관부에는 장관만이 존재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필요시 귀족의 家臣이 일을 처리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이 는 하급실무자의 설치 연대를 늦게 잡았던 데서의 추정이었다.

둘째 시기는 진평왕대이다. 먼저 이 시기에 새로이 설치된 관부를 보면 재위 3년(581)에 관리의 관등을 담당하는 位和府, 6년에는 貢賦를 담당하는 調府와 馬政・車乘을 담당하는 乘府, 8년에는 儀禮와 敎育을 담당하는 禮部가 두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부들도 역시 설치 당시부터 완성된 조직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위화부는 관부조직이 완성된 후에도 독특하게 衿荷臣・上堂・大舍・史의 4등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금하신과 상당은 신문왕대에 두어졌다고 하며45) 대사와 사의 설치 연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화부가 창설된 진평왕 3년에는 일단 대사와 사로 구성된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조부에는 진평왕 6년 장관인 령 1인을 두었으며 진덕왕 5년(651)에 장관 1인을 증치하면서 3등관인 대사 2인을 두었고, 4등관인 사지 1인은 신문왕 5년(685)에 두었다. 차관인 경 2인과 5등관인 사 8인의 설치시기가 보이지 않는데 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으나 실무자인 사는 조부의설치시기에 령과 함께 두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은 예부처럼 진덕왕 5년에 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부는 장관인 령 2인이 진평왕 6년에 두어졌으나 경과 대사는 진덕왕대에, 사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신문왕대에 두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는 진덕왕 5년에 3인이 증치되는 것으로 미루어 그보다 앞선 시기에는 8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장관과 같은 시기에 두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따라서 예부는 진평왕대에 령 2인과 사 8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겠다. 승부는 령 1인이 이 때에 두어진 것으로 되어 있을 뿐46) 다른 관원들의 설치는 불명이나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예부와 조부에 준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이상과 같이 보면 진평왕대 초에 설치된 4개의 관부 가운데 대사와 사로 구성된 위화부만은 극히 예외적이며, 조부·예부·승부의 관원은 모두 영과 사의 이원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병부의 관원조직을 모방한

^{45) 《}三國史記》 권38, 志7, 職官上, 位和府.

^{46)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6년조에는 령이 1인 두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직관지에는 2인이 두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같은 해에 설치된 조부의 경우를 참조하면 전자가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앞선 시기에 두어진 품주와 사정부가 2원적인 구성을 가졌으나 령이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제 병부에 버금가는 조직을 가진 관부가 두어진 것으로서 그 자체 큰 변화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시기 관부의 관원은 모두 2원적인 구성을 하였으면서도 습과 史, 卿(전대등)과 史, 大舍와 史의 3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당시의 행정적인 중요도에 따른 구분에 의해서였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시기의 관원 구성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점차 2등관체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3등관인 弟監이 眞平王 11년(589)에 두어짐으로서 병부가 가장 먼저 3등관체제로 전환하였다. 같은 해에는 품주에도 역시 3등관인 대사가 두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2등관체제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부조직상의 일대 변화라 할 만하다.

그와 관련하는 것이지만 이 때에 처음으로 部나 府에 예속하는 屬司가 두어지는 점도 주목된다. 속사로서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진평왕 5년 병부에 두어진 船府署로서 여기에 대감과 제감을 각각 1인씩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속사 설치의 효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진평왕 46년에는 賞賜署와 大道署가 설치되었다. 대도서는 예부의 속사이며 상사서는 倉部(府)의 속사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아직 창부가 품주에서 분화되어 독립하기 이전이므로 상사서는 사실상 품주의 속사로 성립하였다가 후일 창부가 독립되면서 그 곳으로 이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속사는 당시핵심이 되는 부서로서 병부・예부・품주의 셋에 두어진 셈이다.47)

진평왕대 후반의 관부 설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병부에 제2등관인 대감이 설치된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병부가 처음으로 령-대감-제감-사의 4등관제 조직을 갖추게 되었거니와 이것이 典範이 되어 진덕왕대에는 다른 관부도 모두 4등관제로 일시에 전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부조직의

⁴⁷⁾ 외빈을 담당하는 領客府의 경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三國史記》권 38, 志 7, 職官 上에 의하면 영객부는 원래 倭典이었는데 진평왕 43년(621)에 개칭하였다고 하며 장관인 수 2인은 진덕왕 5년에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新羅本紀 4, 진평왕 13년(591)조에는 이 때에 영객부령 2인을 둔 것으로 되어 약간의 착오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관부들이 진평왕대 전반과 후반에 각각 변화가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다.

정비는 병부가 선도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진평왕대의 관제개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왕실 궁중사무를 전담하는 內廷官府가분치되는 점이다. 진평왕 7년(585)에 大宮・梁宮・沙梁宮에 각각 私臣을 두었다가 같은 왕 44년에 이들을 통합하여 內省私臣을 두었다는 것이다. 48) 이는 진평왕대에 추진된 왕권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컨대 진평왕대의 관제개혁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반부에는 기존의 병부조직을 모방하여 예부·조부·승부가 두어지며, 특히 병부의 관원에 3등관이 설치됨으로써 전통적인 이원체제를 벗어나는 실마리가 마련된 점, 속사가 처음으로 두어진 점, 왕실사무가 분리되기 시작한 점에서 주목된다. 이로 보면 진평왕대는 전통적인 체제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眞智王이 귀족들에 의해 폐위된 뒤 그를 이어 즉위한 것도 진평왕대의 관부조직에서 그와 같이 전통적인 체제를 벗어나려는 시도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

진평왕대 후반에는 전반부에 성립된 체제를 보다 강화해 갔던 점이 뚜렷하다. 가장 선도적인 병부에 대감을 설치하여 4등관 조직을 갖춘 점, 병부외의 다른 관부에도 속사를 둔 점, 왕실사무를 전담하는 내성기구를 설치한점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진평왕대 후반의 관제정비는 전반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아도 좋겠다. 이로써 진평왕대에는 6典組織의 기본골격이갖추어진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평왕대는 관제조직상의 발전기였다고 할만하다.49) 행정관부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성격의 군단을 조직한 것도 이 시기의 체제정비와 관련하여 참고가 된다.50)

⁴⁸⁾ 內省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三池賢一、〈新羅內廷官制考〉上・下(《朝鮮學報》61・62, 1971・1972).

李仁哲,〈新羅 內廷官府의 組織과 運營〉(《新羅政治制度史研究》,一志社, 1993).

⁴⁹⁾ 李基白, 앞의 책, 140쪽 참조.

木村誠은〈6世紀における新羅骨品制の成立〉(《歷史學研究》428, 1976), 22~26쪽에서 진평왕대의 행정기구 정비를 각 관청간의 분업체계가 확립되는 등 그 나름의 체계가 갖추어지는 시기로 주목하였다. 한편 金瑛河는 진평왕대의 행정제도 정비를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의 완성으로 이해하였다(〈新羅 中古期의政治過程試論〉,《泰東古典研究》4, 1988, 17쪽).

⁵⁰⁾ 진평왕대에 신설된 군단을 보면 5년 誓幢, 13년 四千幢, 20년 河西州弓尺, 26년 軍師幢, 27년 急幢, 47년 郞幢 등이었다.

셋째 단계는 진덕왕대이다. 진덕왕대의 관제개혁은 대체로 재위 5년(651)의 1년 동안 일시에 대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 동안 관제개혁이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진덕왕대의 관제정비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것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주목되는 것은 각 관부의 관원을 일률적으로 令一卿一大舍一史의 4등관체제로 정비하였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병부가 진평왕 말기에 제일 먼저 4등관제로 된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시기 전체 관부에 걸쳐 거의 일률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은 그를 모범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 때에 품주를 집사부로 개칭하면서 전대등 이하 3등관제의 상위에 중시를 설치하였던 데서 대표되듯이 다른 중요 관부 중에서도 장관이 령이 아닌 경우에는 령을 두어 4등관제로 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2등관인 경이나 3등관인 대사를 두어 관제조직을 완전하게 4등관제로 정비하였다. 한편 주요 관부의 장관이 1인이었던 경우는 1인더 중치하여 복수제로 하고 倉部나 左理方府와 같은 관부는 새롭게 창치하였다. 이 밖에 國學・音聲署・典祀署 등 속사의 기본 관원들을 둠으로써 업무분장을 보다 강화하였다.

진덕왕대 행해진 관제정비 가운데 4등관제로의 정비나 속사의 증치 등은 기본적으로 진평왕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주목되는 것은 집사부의 정치적 위상을 높인 점이다. 이는 진덕왕대 관제정비의 방향을 보여 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원래 집사부의 전신인 품주는 租調의 출납을 관장하는 관부로서 중고기를 통하여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지배의 진전이나 영토의 확장, 그리고 군사상의 목적에서 조조출납의 비중이 점차 커져 가면서 진평왕대에는 거기로부터 調만을 전담하는 조부가 분리되었다가 진덕왕대에 이르러 다시 창부가 분치됨과 동시에 장관으로 중시가 두어졌다. 이로부터 집사부는 조조와는 사실상 상관없이 국가의機密事務를 총관하는 관부로51) 그 기능이 크게 변하였다.

그 동안 행정관부가 분산적으로 두어지면서 이를 총관하는 기구는 없었다.

^{51)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진덕왕 5년.

국왕을 대신하여 귀족회의의 주재자로 두어진 상대등이 관제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부를 총관하는 기능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나⁵²⁾ 이제집사부의 장관을 중시로 삼아 기밀사무를 관장케 함으로써 그 위상을 격상시켜 다른 관부를 총관하게 하였다. 이는 전체 관부의 관원구성을 4등관제로정비한 사실과 아울러 오래도록 잔존해 온 전통적인 행정체계의 방식을 거의 벗어나 국왕 중심의 권력집중화 시도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먼저 주요 관부 가운데 집사부만이 장관 단수제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다. 진덕왕 5년(651)의 시점에서 설치되어 있던 중요 관부의 장관은 거의 복수제이다. 장관을 복수제로 취한 목적에 대해서는 귀족합의제적인 전통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⁵³⁾ 복수의 장관이 일시에두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설치시기가 다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분장을위해서였던 것으로 봄이 옳을 듯하다.⁵⁴⁾ 복수의 장관 설치는 아마도 중요 관부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나아가 서로를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싶다. 국왕에 직속하는 집사부에는 다른관부들과는 달리 오히려 장관을 1인만 둠으로써 권력집중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왕을 정점으로 권력을 집중하려는 시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중에는 국왕과 가까운 인물이 임명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그 동안상대등이 가졌던 지위를 시중이 대신하게 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⁵⁵⁾품주를 집사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侍衛府를 둔 것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

⁵²⁾ 위화부의 장관인 금하신이 다른 관부의 장관과는 달리 伊湌에서 大角干까지 취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착목하여 중고기에 상대등이 위화부의 장관을 겸직하고 이 위화부가 마치 전체 관부를 총관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李仁哲, 〈新羅 中央行政官府의 組織과 運營〉, 앞의 책) 지나친 억측이다.

⁵³⁾ 井上秀雄, 앞의 글, 266~267쪽.

李基東. 앞의 책. 136~138쪽.

단 이기동은 장관 복수제와 함께 兼職制도 합의제적인 운영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신라의 겸직제가 진평왕대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는 견해(李文 基,〈新羅時代의 兼職制〉,《大丘史學》26, 1984, 16쪽)를 따른다면 오히려 겸직 제가 합의제적인 정치운영의 영향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⁵⁴⁾ 이를테면 병부령의 경우에는 3인이 두어졌으나 그 설치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인 간격이 있었으므로 복수제는 합의제적인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 (朱甫敏, 앞의 글, 1987, 35~36쪽).

⁵⁵⁾ 李基白, 앞의 책, 155쪽.

는가를 아는 데 참고가 된다. 요컨대 진덕왕대의 중앙행정 관제개혁은 왕권 중심의 체제강화를 지향한 것이었다. 이는 바로 앞서 선덕왕 16년(647)에 일 어났던 상대등 毗曇의 난 후에 이루어진 체제정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평왕(579~631)과 진덕왕대(647~653)에는 상당한 관제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이상스럽게도 선덕왕대에는 아무런 관제상의 변화가 없다. 이는 선덕왕대(632~646)가 왕권파와 귀족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란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갈등관계가 무너지면서 비담의 난이 발발하게 되고 그결과 집권한 金春秋의 주도 아래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반란의 핵심이었던 상대등에 대신하여 국왕권을 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구로서집사부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덕왕대의 개혁은 기존의 중고적인 지배질서를 탈피하고 나아가 다가올 국왕 중심의 새로운 중대체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개혁이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신라의 중앙 관부는 일시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지배체제가 오래도록 뿌리내려 중앙행정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를 탈피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였 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6, 7세기는 전통적인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체 제를 지향해 간 과도기적인 시기였다고 하겠다.

진덕왕대까지 정비된 중앙관부의 조직상 특징은 신라적인 독자성을 강하게 내포한 점이다. 군사조직이나 지방통치조직은 將軍이나 軍主・幢主・道使 등의 직명에서 짐작되듯이 신라만의 독특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고구려나 백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행정관부는 그 명칭이나관원구성에서 신라적인 특색을 강하게 지녔다. 물론 병부처럼 부분적으로는 중국적인 요소가 엿보이지만 대부분의 관부는 모두 신라 독자적인 것이라보아도 좋다.

중앙행정관부는 크게 部와 府로 나뉘어진다.56) 양자의 기능이나 비중에

⁵⁶⁾ 倉部는《三國史記》권 38, 志 7, 職官 上에는 部로 되어 있으나 9세기의〈昌林寺無垢淨塔願記〉와〈皇龍寺九層木塔刹柱本記〉에는 倉府로 되어 있다. 후자에 따르면 직관지의 기록은 착오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部와 府는 전혀차이가 없이 혼용된 셈이 되며 따라서 실제적인 차이도 없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兵部나 執事部는 모두 금석문상에서도 그대로 되어 있으므로 직관지가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병부・ 집사부 · 예부 등 당시로서는 핵심적인 관부들만 部로 하여 나머지 관부와 구분한 것은 部가 府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部와 府 이외에 도 典・署・館 등의 관부가 두어졌으나 이들은 설치시기도 늦고 또한 대부 분 部・府의 屬司들이었다. 그런데 중고기에는 이들 관부를 총괄하는 관부가 두어지지 않았다. 왕명의 출납 등 기밀을 담당한 집사부는 진덕왕 5년에 두 어졌으나 이는 실제로는 중대적인 것이었으므로 중고기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그 전신인 품주는 진흥왕대에 설치되었으나 당시에는 차관인 典大 筆뿐이었으므로 그러한 기능을 하였을 리 만무하다. 이처럼 행정관부를 총관 하는 관부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중대한 일들이 합의제적으로 운영되고 있 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들 관부들은 모두 국왕 또는 상대등의 직접 적인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해야겠다. 상대등이 그 하부 관원이나 관부 가 없는 것도 그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57) 그렇다면 상대등의 권한을 계승하였을 시중이 상대등과는 달리 하부조직을 갖춘 관부의 장관이었다는 것은 행정의 집중화가 그만큼 진전되어 관료조직 자체가 발전하였음을 의미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중고기의 중앙 통치조직은 대체로 각 관부들이 2등관체제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미숙하였고 그 자체 회의를 통한 합의제적 운영의 전통이 강인하게 존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흔히 장관의 복수제를 그렇게 이해하나 병부령처럼 장관도 설치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이해는 근본적으로 잘못이며 오히려 겸직제가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복수의 장관은 필요에 따라 증치된 것이며 이는 업무분장을 통한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였다고 하겠다.

한편 중고기에는 중앙의 행정관제보다는 병제와 지방조직이 훨씬 발달하 였던 것이 특징이었다.《삼국사기》직관지에 기록된 部府 13官司 중 진골만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면 部는 병부·집사부·예부의 3개 관부에 한정되며 이들은 府와 일정한 차별성을 강조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57)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8년조에 上大等을 두고 처음으로 哲夫를 임명하면서 摠知國事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대등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 취임할 수 있는 장관의 경우 진덕왕 5년(651) 이전에는 상대등 1인, 병부 령 2인, 예부령 2인, 조부령 1인, 승부령 2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서 지방 통치조직이나 군사조직은 훨씬 정비되어 있었다. 이 점은 중고기의 행정조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참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중고기에는 아직 文官과 武官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내용적으로는 문보다 무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문과 무를 구별하려는 의식은 통일기에 文武官僚田의 지급에서 그 씨앗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58) 이 까닭으로 관료조직보다 군공 등 군사적인 것이 승진이나 경제적인 기반의 확보에서 훨씬 우선적인 것이었다. 관제상 군사조직이나 지방제보다 중앙 행정관부의 발달이 뒤늦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화백회의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신라에서 행정관부와 관원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은 진덕왕대였다. 그런데 행정조직이 미발달한 상황에서는 국가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회의체를 통하여 결정·집행되었다. 이 회의체는 행정관부가 설치되기 이전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행정관부가 설치되고 그 관원조직이 갖추어짐에 반비례하여 회의체가 가지는 역할이나 기능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갔다.

회의체를 통한 결정과 집행에 대한 일단의 윤곽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냉수리비〉와〈봉평비〉에서 짐작된다. 이들 비문에 의하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회의체를 통하여 결정하고 실행하였는데, 관료들은 회의체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층과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실무자층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다. 〈냉수리비〉에서는 七王等이 회의참여자였고 실무자들은 7인의 典事人이었다. 〈봉평비〉에서는 14인의 所敎事층이 회의참여자였고 4인의 大人이 바로실무자들이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회의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결정되

⁵⁸⁾ 文과 武가 점차 구분되기 시작하는 것은 통일기의 정치적인 안정과 그 속에서 군사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를 통한 6두품 출신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부 터였다고 생각된다.

고 공동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合坐制度는 고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으로서 부여나 고구려에서는 諸加會議,59) 백제에서는 諸率會議라 불리는60) 회의체가 존재하였다. 신라의 귀족회의체는 《唐書》新羅傳에 근거하여 흔히 화백회의라 불린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논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만장일치제적인 방법이 채택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신라 화백회의의 기원은 원시공동체사회의 씨족회의나 부족회의까지 소급이 가능하다. 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참가자의 범위나 논의내용등은 달라졌겠지만 회의체는 여전히 유력한 논의구조로서 존속하였다. 신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시조인 赫居世居西干을 맞아들이는 모습이나61) 婆娑尼師今 23년(102) 音汁伐國과 悉直谷國 사이에 영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을 비롯한 유력세력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사례에서62) 그와 같은 회의체의 시원적인 편린이 찾아진다. 이후 沾解尼師今 3년(249)에政廳인 南堂(혹은 都堂)이 설치되었다고 하는데63) 이곳에서 회의가 열렸을 것으로 상정하여 당시 존재한 회의체를 南堂會議라 부르기도 한다.64) 아마도남당의 설치는 그 전까지 존재하여 왔던 어떤 회의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하튼 회의체는 원시공동체사회 이대로 내용상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계속하여 존속되어 온 것임은 확실하다.

訥祗麻立干代에 행해진 회의에서 남당회의와 같은 회의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엿볼 수 있다. 눌지마립간은 즉위하자마자 實

⁵⁹⁾ 盧重國,〈高句麗國相考〉上(《韓國學報》16, 1979), 20~24쪽 참조.

⁶⁰⁾ 盧重國,《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 103~107等.

^{61) 《}三國史記》권 1, 新羅本紀 1, 시조 혁거세거서간 《三國遺事》권 1, 紀異 2, 신라시조 혁거세왕.

^{62)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파사니사금 23년.

^{63)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첨해니사금 3년조에는 이 해에 남당이 설치되고 5년(251)에는 처음으로 정사를 이곳에서 보았다고 한다. 이 연대는 물론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회의체의 존재는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3년에 설치하고 5년에 처음으로 정사를 보았다는 것으로 보면 회의 자체가 자주 열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⁶⁴⁾ 李丙燾, 앞의 책, 623~636쪽. 李鍾旭、《新羅國家形成史研究》(一潮閣, 1982), 212~221쪽.

聖麻立干에 의해 고구려와 倭에 각각 볼모로 보낸 아우들인 卜好와 未斯欣을 귀국시키기 위한 목적을 띤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차提上이 선임되어 복호와 미사흔을 구출하였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면 일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 자는 바로 국왕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회의에 참가한 대상은 群臣과 國中豪俠으로서65)실제 중앙의 臣僚들뿐만 아니라 水酒村干・一利村干・利伊村干 등과 같이참여한 유력한 재지세력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보이므로66) 그 범위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볼모의 탈출이란 국가간의 외교적 군사적인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는 커다란 문제였던 만큼 그 회의의 참여 범위가 왕경의 유력자들에 한정되지 않고 재지세력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하튼 이 시기까지는 재지세력에게도 사안에 따라 중앙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다만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왕경인이거나 지방민이거나 간에 干이라 칭할 수 있는 유력세력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회의체를 諸干會議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다. 67) 왕호가 마립간이라 불리웠던 것도 바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말하자면 宗干 또는 頭干으로서의 마립간은 단지 왕경의 干층만을 대상으로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간층들도 염두에 둔 왕호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회의체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6세기의 금석문을통해서이다.

지증왕 4년(503)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냉수리비〉에는 珍而麻村 출신의 節居利란 인물에 귀속된 財(物)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자 至都盧葛文王을 비롯한 '七王等이 共論하여'그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共論」이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 7인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하였음을 뜻하므로 어떤 회의체의 존재가 상정된다. 절거리의 재를

^{65)《}三國遺事》 권 1, 紀異 2, 奈勿王 金堤上.

^{66) 《}三國史記》 권 45, 列傳 5, 朴堤上.

⁶⁷⁾ 朱甫暾、〈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新羅를 中心으로ー〉(《韓國社會發展史論》, ー潮閣, 1992), 28零.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이번에 처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비문의 첫머리에 보이듯이 이미 斯夫智王과 乃智王68)대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그 때에는 왕이 敎를 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기재되었어도 국왕이 단독으로 그 사안을 결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당시에도 역시 왕이 회의를 주재하고 그 곳에서 결정된 결과를 王의 교로서 내리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번 문제에서 萬文王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당시의 특수한 사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59)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라 생각되며 원래는 왕이 회의주재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냉수리비〉에서 어떤 사안이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의 일단이 확인된다. 그런데 논의된 대상은 달랐지만 유사한 모습은 〈봉평비〉에서도 보인다.

〈봉평비〉는 오늘날 울진지역인 居伐牟羅 男彌只村에서 大軍을 동원하여야할 어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뒤 이를 처리하여 관련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국왕인 寐錦王과 葛文王을 비롯하여 本彼部·岑喙部(牟梁部)의 干支 등 14인이 주어진 사안에 대한 敎를 내리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14인이 함께 교를 발한다는 것은, 곧 이들이 적어도 외형상 동등한 자격을 갖고 그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음을 뜻한다. 이를 통해 바로 국왕을 주재자로 하는 회의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구조는 사안의 내용이나 참가자의 인원과 관등의 차이를 논외로 한다면 〈냉수리비〉와 거의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점은 일단 회의체의 종류나 그 참여자격의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사실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회의체에 대한 보다구체적인 실태는 〈진흥왕 순수비〉에서 확인된다.

진흥왕 22년(561)에 건립된〈昌寧碑〉를 비롯한〈北漢山碑〉・〈黃草嶺碑〉・〈磨雲嶺碑〉등 4기의〈진흥왕 순수비〉에는 각각 대등이란 직명을 가진 인물이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20여 명까지 보인다. 이들이 소지한 관등은

⁶⁸⁾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勤夫智王을 實聖王, 乃智王을 訥祗王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⁶⁹⁾ 鄭求福、(迎日冷水里新羅碑의 金石學的 考察〉(《韓國古代史研究》3, 1990), 42~43等.

朱甫暾,〈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新羅文化》6,1989),71~73쪽.

大一伐干(大角干)으로부터 11등인 나마까지이다. 550년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 〈丹陽 新羅 赤城碑〉에 伊史夫智 이하 5명이 소지한 직명으로 大衆等이보이는데 이것을 바로 대등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70) 있다. 이 대등은 중앙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특정한 임무를 분장하는 관부에는 소속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바로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구성원이라 한다.71) 때문에 이 시기 귀족회의를 大等會議라고 부르는 견해도72) 제기되어 있다.

한편 7세기 중엽의 진덕왕대에도 閼川公・林宗公・述宗公・虎(武)林公・廉長公・庾信公 등 6인의 大臣들이 참여한 회의체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들은 南山의 亏知巖을 비롯하여 靑松山・皮田・金剛山 등 이른바 4靈地에서 국가의 大事를 논의하였다고 한다.73) 이 회의의 참여자는 대신들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귀족회의로서의 화백회의가 특권화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나74) 여하튼 귀족회의의 한 실태를 보여 주는 것은 틀림없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5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삼국사기》·《삼국유사》 등의 문헌뿐만 아니라 금석문상에서도 귀족회의체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후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귀족회의가 존재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귀족회의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범위나 구조, 그 기능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정조직이 갖추어져 가면서 어떤 사안의 결정이나 집행은 각 행정부서 단위로 행해졌을 것이며 따라서 회의체의 위상은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참여 범위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회의체에 대해서 제시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회의 참여자의 범위나 규모가 일정하지 않았던 점은 주목된다. 가령 눌지왕대의 사례처럼 회의 참여자가 군신과 국중호협 등으로 그 폭이 지극히 넓었던 경 우도 있는 반면, 〈냉수리비〉나〈봉평비〉에서처럼 갈문왕 이하 7인 또는 매

⁷⁰⁾ 李基白、〈丹陽赤城碑發見의 意義와 赤城碑 王教事部分의 檢討〉(《史學志》12, 1978), 26쪽.

⁷¹⁾ 李基白、〈大等考〉(《歷史學報》17·18, 1962; 앞의 책, 78쪽).

⁷²⁾ 李鍾旭, 앞의 책, 219쪽.

^{73) 《}三國遺事》 권 1, 紀異 2, 眞德王.

⁷⁴⁾ 李基白, 앞의 책, 80~82쪽 참조.

금왕 이하 14인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진덕왕대에는 6인의 대신만으로 한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회의체의 규모가 달랐던 것은 사안에 따라 참여자의 구성을 달리하는 다수의 회의체가 동시에 존재하였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화백회의라 불리는 단일한 귀족회의를 상정하여 두고 그 곳에서는 국가의 중대사가 논의·결정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국가의 중대사란대외적인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나 불교수용, 정당한 왕위계승권자가 없을 경우 국왕추대나 혹은 폐위 등을 일컫는다. 예컨대 법흥왕대에 불교수용 문제가 논란되었을 때 국왕이 '群臣을 불러 물었다'고75) 한 것은 광범위한 신료들이 참여하는 귀족회의의 존재를76) 보여 준다는 것이다. 眞智王이 재위 4년만에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國人 등이 그를 폐위시켰다는 것도77) 바로 그와같은 귀족회의를 통해서였을 것임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에는 지나치게 막연한 측면이 엿보인다. 왜냐하면 〈냉수리비〉에 보이는 절거리의 財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국가의 중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통하여 과거의 판례에 따른 典據를 바탕으로 하여 소유권의 향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참여자의 폭이 넓은 귀족회의체를 통하여 결정되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단일한 귀족회의의 존재를 설정하여 그 곳에서 모든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었다고 하여서는 곤란하다. 참여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양한 규모의 귀족회의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테면 대내외적으로 큰 영향을미치는 국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신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회의체도 있었고, 그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의회의체도 넓은 의미의 귀족회의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등으로 구성된 화백회의 속에는 다시 다양한 소회의체가 존재하였다고 보아야한다. 참여자의 인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라 생각된다.이 소수가 참여하는 귀족회의체는 관부가 성립되기 이전의 정치 운영실태를반영한다고 생각된다.화백회의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소회의체에 참여할 수

^{75)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5년.

⁷⁶⁾ 李基白, 앞의 책, 79쪽.

^{77)《}三國遺事》 권 1, 紀異 2, 桃花女 鼻刑郎.

있는 자격이 부여된 직명이 바로 대등이 아니었을까 싶다.

아마도 시기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회의체는 단순하여 크게 세분화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신라국가의 발전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점차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면서 보다 소규모의 구체적인 일들을 다루는 소회의체의 출현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냉수리비〉에서 7인이 참여한「共論」은 바로 폭넓게 참여하는 귀족회의와는 별도의 소회의체가 존재하였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러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의 강화과정 속에서 그와 같은 소회의체조차도 그 기능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것은 점차 행정기구로 대체되어 갔을 것이다.

소회의체가 가진 기능은 행정기구가 설치되면서 이곳으로 이관되고 이제는 국가의 특정한 중대사만을 다루는 본래적인 의미의 귀족회의만 남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귀족회의라고 할 때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규모 귀족회의체만을 연상하여 왔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6세기 후반의 실태를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隋書》新羅傳에 "大事가 있으면 群官을 모아詳議하여 결정한다"고 한 것은 바로 그를 말한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위해서 열린 群官會議가 소수의 참여자로 구성되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7세기 중반의 진덕왕대에 보이는 소위 대신회의는소수만이 참여하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이 회의체는 대사를 논의하여 결정하는 데 참여자 수가 6인에 지나지 않았고 그것도 大臣에 한정되어 있었다. 대신의 구체적인 자격은 알 수 없으나 귀족회의의 성원을 지칭하는 대등이 곧 臣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⁷⁸⁾ 미루어 짐작하면 대신은 대등이면서도 그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 대신만이 참여하는 대신회의는 귀족회의 내부의 소회의체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회의체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기왕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이 대신회의는 귀족회의의 구성원이 대등에서 대신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회의의 성격도 특권화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79)

^{78) 《}三國史記》 권38, 志7, 職官上, 上大等 및 권40, 志9, 職官下, 外官.

⁷⁹⁾ 李基白, 앞의 책, 80~82쪽.

그러나 이 이후에도 대등이 계속 존재한 것으로⁸⁰⁾ 미루어 보면 귀족회의의 구성원이 대등에서 대신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대신회의가 귀족회의와는 별도로 존재하였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서》에서는 국가의 중대사가 군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하였는데, 왜 진덕왕대에는 대신회의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선덕왕대에 전혀 정치제도적인 개혁이 행해진 바가 없었다는 것과 관련지어 보면 선덕왕이 여자로서 즉위하게 되는 정치적 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평왕 사후 신라사 최초로 여왕의 즉위문제를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며 그 결과 이들 두 세력간에 이루어진 타협의 산물이 바로 대신 중심의 회의체 출현이었다.⁸¹⁾ 말하자면 서로 갈등하는 양대세력의 견제와 균형 위에서 대신회의가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선덕왕대에만 유독 행정관부의 설치와 같은 개편이 없었던 것도 그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대신회의 중심의 체제는 진덕여왕 원년(647)에 발발한 비담의 난으로 무너졌다. 이 대신회의가 진덕왕대에도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었으 나 유명무실해졌던 것이다. 그것은 閼川이 상대등으로서 대신회의의 주재자 였지만 대신들은 오히려 당시 실력자였던 김유신에게 복종하였던 데에서 알 수가 있다.82) 요컨대 귀족회의는 존재하였으나 선덕왕대에는 여왕의 즉 위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그 속에서 소수의 대신만이 참여하여 중대사를 결 정하는 대신회의가 두어졌다. 그러나 이것도 진덕왕의 즉위 후 김춘추·김

^{80) 《}三國史記》 권33, 志2, 色服.

⁸¹⁾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朱甫暾,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의 政治運營〉(《李基白 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4)에서 시도된 바 있다.

⁸²⁾ 대신회의가 진행중일 때 호랑이가 회의장에 뛰어들었는데 諸公은 놀라서 일어 났으나 상대등인 關川은 대연히 談笑하면서 그 꼬리를 잡고 땅에 쳐서 죽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제공들은 김유신에게 복종하였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알천이 형식적으로는 회의주재자였지만 실권은 김유신에게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대신회의가 그 자체 변질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김춘추·김유신일파가 실권을 장악한 진덕왕대의 대신회의가 형식적으로는 대사를 논의하지만 유명무실화 되었던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유신 일파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형식만이 남았을 따름이었다. 다수의 대등이 참여하는 귀족회의는 계속하여 존속하였지만 정치적 사정에 따라서 그 기능이 한결같지는 않았다.

귀족회의의 주재자는 원래 국왕이었지만 법흥왕 18년(531)에는 상대등을 새로이 설치하여 哲夫를 임명함으로써 그를 대신하게 하였던 듯하다.83) 그러나 철부의 사망 후 후임자가 계속적으로 임명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직 중고기에는 상대등이 귀족회의의 상설적인 주재자로 정착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다. 상대등은 오히려 국왕을 보좌하여 행정을 총관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던 듯하다. 상대등이 대등회의의 주재자로 정착하는 것은 정작 중고기 말엽에 와서의 일이다. 따라서 회의체를 통하여 중대한 일이 결정되던 시기에 실질적인 주재자는 국왕이었고 그를 대행하는 역할을 상대등이 담당하였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중고기의 상대등은 중대 이후의 시중과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임무도 총관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화백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하였을까. 5세기까지는 눌지마립간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지세력 가운데 극히 한정된 유력자 충들도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세기 이후 관등제와 골품제의 성립 등을 통하여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가 마련되어 가면서 재지세력들이 참여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들은 일단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세기 초에 귀족회의에는 왕경인이라 하더라도 회의 참여자는 관등상으로 볼 때 干群을 칭하는 세력들에 한정되었던 듯하다. 그것은 〈냉수리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 참여자층은 간군으로 실무자들이 나마를 칭하는 것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봉평비〉나 이후의〈창녕비〉 등에 의하면 회의 참여자층인 대등이 소지한 관등은 나마까지로 되어 있다. 이는 법흥왕 7년(520) 율령이 반포되고 골품제와 관등제가 법제화되면서 그에 따라 나타난 변화가 아닐까 싶다. 그 런데 나마는 골품제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5두품에까지 개방된 관등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관등만 한정할 때 그들에게도 귀족회의 참여자격이 개방

⁸³⁾ 李基白, 〈上大等考〉(《歷史學報》19, 1962; 앞의 책, 94쪽).

된 듯하나 이들은 간군 경위를 소지할 수 없었으므로 諸干會議의 전통을 계승한 귀족회의에의 참여가 배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등상으로는 나마에까지 귀족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일단 6두품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왕에 귀족회의 참여자격을 신분제상으로 진골에만 한정되었다고 보는 견해와⁸⁴⁾ 6두품까지로 보는 견해로⁸⁵⁾ 나뉘어져 있다. 원래 6두품과 진 골은 모두가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族長 출신으로서 그 기반이 같았다는 점, 그 까닭으로 모두가 간군 관등을 소지하였다는 점, 중고기를 통하여 이들은 모두 동등하게 신분을 상징하는 牙笏을 소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귀족회의 참여자격은 골품제 성립 후 6두품에까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⁸⁶⁾ 다만 진골 에게는 관등이 낮아도 참여자격이 부여된 반면 6두품에게는 진골에 비해 높 은 관등을 요구하였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귀족회의는 넓은 의미의 회의체와 좁은 의미의 회의체가 존재하였는데 좁은 의미의 회의체는 점차 행정관부가 설치되면서 그 속으로 흡수되어 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귀족회의라고 하면 다수의 대등들이 참여하는 넓은 의미의 회의체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귀족회의체의 구성원인 대등은 관등상으로는 나마 이상, 신분상으로는 진골과 6두품에 한정되었다. 이 귀족회의체는 신라 말까지 변함없이 존속하면서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었지만 그기능은 한결같지가 않았다. 국왕 중심의 체제가 미약한 경우는 상당한 기능을 행사하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朱甫暾〉

⁸⁴⁾ 今西龍,〈新羅骨品考〉(《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223쪽. 李基白, 앞의 책, 85~86쪽.

李基東,〈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53·54, 1972; 앞의 책, 84쪽). 이기동은 진골 가운데서도 奈勿王系 혈연집단으로 축소시켜 이해하였다.

⁸⁵⁾ 李丙燾, 앞의 책, 636~638쪽.

⁸⁶⁾ 朱甫暾, 앞의 글(1992), 32~42쪽.

2. 지방·군사제도

1) 지방조직

진한 12국 중의 하나였던 신라는 주변의 소국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4세기 경에는 마침내 진한지역을 모두 차지한 영역국가로 성장했다. 확대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방조직을 갖추어야 했다. 《三國史記》에서는 탈해왕대에 이미 '박씨 貴戚으로서 국내의 州郡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이름을 州主・郡主라 하였다'고 전한다. 또 音汁伐國과 屈阿火村을 정벌하여 縣을 두었고, 押督國・甘文國・骨伐國을 점령하고 郡을 설치하였으며, 沙伐國을 취하여 州를 두었다고 하는 등 복속 소국을 주・군・현으로 편제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삼국사기》에서는 왕이 주군을 巡撫하였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古陁郡・南新縣・古所夫里郡・甘勿・馬山 2縣・牛頭州・牛頭郡・平壤州・史勿縣・大山郡・沙伐郡 등 주・군・현의 구체적인 명 청까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증왕 6년(505) 이전에 주·군·현의 지방조직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1) 지증왕 6년 2월에 '왕이 친히 나라 안에 주·군·현을 정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2) 단지 신라 초기에는 복속 소국의 구영역을 단위로 어느 정도 자치를 허락하는 간접지배 형식의 지방통치가 행하여졌다.

伊西國·悉直國·압독국·召文國·사벌국 등 신라 초기의 복속 소국들은 비록 정복당하였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는 반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소국에 신라의 지방관이나 군부대가 배치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지배-복속관계를 맺고 정기적인 공납을 헌상하는 정도였다. 이에 따라 이들소국은 신라에 다시 침입해오거나 반기를 들 수 있었다. 반기를 든 소국에

¹⁾ 木村誠、〈新羅郡縣制の確立過程と村主制〉(《朝鮮史研究會論文集》13, 1976), 3~4等.

²⁾ 李宇泰,《新羅 中古期의 地方勢力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33쪽.

대해 신라정부는 즉각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하고 그 지배층을 다른 지방으로 옮겼다. 응징을 당한 소국들은 기존의 지배체제가 크게 손상된 가운데 신라와의 지배-복속관계를 복구해야 했다.3)

이와는 달리 처음 정복당하였을 때부터 기존의 지배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해체된 소국들도 있었다. 정복된 이후 신라에 반기를 들지 못했던 于尸山國 ·居柒山國 · 比只國 · 草八國 · 감문국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신라의 군 대가 주둔한 경우도 있었다. 대구의 多伐國은 파사왕 29년(108)에 신라에게 정복당하였는데, 첨해왕 15년(261) 2월에 신라는 達伐城을 쌓고 奈麻 克宗을 성주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신라의 성주가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다벌국에 주둔한 것이다.

신라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자진하여 항복해 온 경우도 있었다. 안강의 음즙벌국과 영천의 골벌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진해서 항복해 온 소국에 대해서는 신라정부가 해당 소국의 왕족을 경주에 데려다가 저택과 전장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고, 귀부해 온 소국의 왕을 이용하여 간접지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복속 소국들은 처음에는 얼마간의 자치가 허락되는 간접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점차 신라정부의 직접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4) 직접지배 상태로의 전환 배경은 피정복민에 대한 신라정부의 지배체제 강화와 계층분화에 따른 소국 渠帥層의 지위 약화에서 찾을 수 있다. 5) 그러나 좀더거시적 배경은 낙랑・대방군이 소멸하면서 백제를 중심으로 통합된 마한세력과 북방에서 수시로 침입하는 말갈족 그리고 남진하는 고구려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복속 소국들이 신라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는 정복 초기에 복속지역에 대하여 종래의 소국을 단위로 토산물의 공납을 요구하였다.6) 이는 신라의 지방조직이 강한 공동체적 유대로 인하여

³⁾ 全德在,〈新羅 州郡制의 成立背景研究〉(《韓國史論》22, 서울大, 1990), 9~12쪽.

⁴⁾ 河一植、〈6세기 新羅의 地方支配와 外位制〉(《學林》11·12, 延世大, 1991), 17 ~22\u22\u228.

朱甫暾,《新羅 中古期의 地方統治와 村落》(啓明大 博士學位論文, 1995), 23~47쪽.

⁵⁾ 全德在, 앞의 글, 22~35쪽.

⁶⁾ 李宇泰, 앞의 책, 34~38쪽.

복속지역 깊숙이 침투할 수 없었던 사정에도 기인하지만 당시 농업기술의 발달정도가 개별 호의 호구나 재산을 토대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복속 소국이 신라의 직접지배 영역으로 편제되면서 지방에 관리가 파견되고 지방민들을 전쟁이나 역역에 동원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갔다.7)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의 영향하에서 여타 소국을 압도할 만큼 성장한신라는 읍락내의 공동체적 관계의 약화와 해체에 따른 소국사회의 변동을 이용하여 소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갔다. 5세기 중반 이후에고구려의 남진이 본격화되자, 신라정부는 그에 대비하기 위해 변방지역이나내지에 성곽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8 何瑟羅人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泥河에 성을 쌓은 것을 비롯하여(468) 三年山城(470)・明活城(470)・일모・사시・광석・답달・구례・좌라(474) 등의 성을 쌓거나 수리하였다. 소지왕 7년(485)에는 仇伐城을 쌓았고, 8년에는 一善界의 丁夫 3천인을 징발하여 삼년(보은)・屆山(목천)의 2성을 고쳐 쌓았고, 9년에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官道와 월성을 수리하였으며, 10년에는 刀那城을 쌓았고 12년에는 鄙羅城을 重築하였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의 지방민을 동원하여 성을 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복속 소국의 해체가 진전되어 그러한 지역을 州郡으로 편제해도 좋을 만큼 당시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⁹⁾ 당시의 국가발전이 새로운 지 방 질서체제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지증왕 6년(505)에 주군제의 정비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¹⁰⁾

《삼국사기》에서는 지증왕 6년에 왕이 친히 나라 안에 주군현을 정하고 悉 直州를 두어 異斯夫를 軍主로 삼으니 군주라는 이름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지증왕 13년에 이사부는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었다. 《삼국사기》신라 본기 법흥왕 12년(525)조에는 대아찬 伊登으로 사벌주의 군주를 삼았다는 기

^{7)《}三國史記》권 48, 列傳 8, 勿稽子傳에 나해니사금대에 近郡 및 6부의 군사를 동원하여 浦上 8國의 군사를 파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⁸⁾ 全德在, 앞의 글, 57~58쪽.

⁹⁾ 李宇泰, 앞의 책, 44~45쪽.

¹⁰⁾ 申瀅植、〈新羅地方制度의 發展과 軍主〉(《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4), 186~229等.

록이 있는데,《삼국사기》지리지에서는 법흥왕 12년(525)에 군주를 두고 上州로 삼았다고 한다. 같은 주의 이름이 沙伐州와 상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11) 이러한 상황을 좀더 확연히 보여 주는 자료가〈창녕비〉의 기록이다.이 비문에는 四方軍主라 하여 比子伐軍主・漢城軍主・碑利城軍主・甘文軍主의 직명・이름・관등과 함께 上州行使大等과 下州行使大等의 직명・이름・관등이 전해지고 있다.《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 16년(555)에 比斯伐에 完山州를 두었고, 17년에 比列忽州, 18년에 사벌주를 폐하고 감문주를 두었으며아울러 북한산주를 설치했다고 전한다.

진흥왕 18년에 사벌주가 폐지되고 감문주(현 김천)가 두어졌음에도 22년에 세워진 〈창녕비〉에는 상주라는 지명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는 당시에 주라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당시 신라에서는 여러 개 郡의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1개 군 정도의 영역을 주라고도 하였다. 상주·하주는 전자에 해당하며, 사범주·감문주·비자범주는 후자에 해당하다.

상주·하주·신주 등의 州名은《삼국사기》권 40, 職官 下, 武官 六停條에도 보인다. 上州停·下州停·新州停 등의 6정 명칭이 바로 그것이다. 6정이보병군단의 명칭이므로 상주·하주·신주 등의 주는 軍管區의 성격을 갖는다.12) 따라서 상주·하주·신주 등의 주는 군관구의 성격을 지닌 廣域州라할 수 있고, 사벌주·비자벌주·한성주 등의 주는 軍主가 주재하는 州治로서협의의 주라 부를 수 있다.13)

〈창녕비〉에는 比子伐停이라는 停名이 전하고 있다.《삼국사기》무관조에서는 신라인이 營을 정이라고 하였음을 알려 준다. 이에 따르면 비자벌정은 군주둔지 자체를 의미한다. 군주둔지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촌 하나의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자벌정은 군정도 크기의 비자벌

¹¹⁾ 신라 중고기의 지방조직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姜鳳龍,《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와 朱甫暾의 앞의 책을 참고할 수 있다.

¹²⁾ 末松保和、〈新羅幢停考〉(《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 1954), 340~347等. 山尾幸久、〈朝鮮三國の軍區組織〉(《古代朝鮮と日本》,龍溪書舍, 1975), 174等.

¹³⁾ 李成市,〈新羅六停の再檢討〉(《朝鮮學報》92, 1979), 40\\ 李文基,《新羅兵制史研究》(一潮閣, 1997), 98\\\

주보다는 훨씬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군주둔지였다.

광역주인 상주는 법흥왕 12년(525)에 설치되어 문무왕 5년(665)까지 같은 주명을 사용하였으나, 협의의 주인 사벌주는 법흥왕 12년에 두어져서, 진흥왕 18년(557)에 감문주, 진평왕 36년(614)에 一善州, 신문왕 7년(687)에 사벌주로 각기 이름이 바뀌면서 주치가 이동되었다. 하주는 진흥왕 16년에 설치되어 문무왕 5년까지 주명의 변경이 없었으나, 비사벌주는 진흥왕 16년에 설치된 이후 같은 왕 26년에 大耶州, 선덕왕 11년(642)에 押梁州, 무열왕 8년(661)에 대야주, 문무왕 5년에 居列州, 신문왕 5년에 완산주로 그 주치가 이동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新州는 진흥왕 14년에 설치되어 진평왕 33년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며 태종무열왕 7년경에 이르러 南川州로 州名이 변경되었고 문무왕 4년에 漢山州로 바뀌었다. 신주의 주치는 진흥왕 18년에 한성주에 두어진 이후 29년에 남천주, 진평왕 26년에 한산주로 명칭과 위치가 바뀌었으며 문무왕 4년 이후에 광역주와 주치의 명칭이 같아졌다.

지증왕 6년(505)에 두어진 悉直州는 13년에는 하슬라주로 바뀌었다. 법흥왕 11년(524)경에는 그 주치가 실직주에 있었음이 〈봉평비〉의 悉支軍主를 통해 확인된다. 〈창녕비〉(561)에서는 于抽·悉直·何西阿郡이라 하여 이 지역에 두었던 州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河西州는 진평왕 20년경에 다시 설치되었다.14) 그 후 선덕왕 8년에는 실직주로, 무열왕 5년에는 다시 하서주로 그 주치와 州名이 바뀌었다. 비열홀주는 진흥왕 17년에 설치되어 29년에는 達忽州로, 선덕왕 6년에는 牛首州로, 문무왕 8년에는 비열홀주로, 13년에는 다시 우수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들 주의 경우에도 광역주와 주치의 명칭이 다른 시기가 있었다.15)

사벌주・비자벌주・한성주 등 협의의 주에 임명되었던 지방장관은 軍主였다. 〈창녕비〉에는 상주・하주 등의 광역주에 州行使大等이 2명씩 임명된 것으로 전한다. 이들 복수의 주행사대등은 6정에 편성된 복수의 장군직과 관련

¹⁴⁾ 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권 40, 志 9, 職官 下 武官조에 보이는 河西州弓尺이 진평왕 20년(598)에 두어졌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¹⁵⁾ 李文基, 앞의 책, 111~112쪽.

된 관직명이었다.16) 군주가 파견된 주치가 전방에 치우져 자리잡은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행사대등을 임명하여 후방지역의 군에 수시로 나아가 지방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광역주를 단위로 편성된 행군조직에 장군으로 출전시키기도 하였던 것이다.

군주는 협의의 주에 파견된 지방장관이면서 동시에 왕경인으로 편성된 6 정의 군단장이었다.17) 이에 따라 주치에는 군주를 비롯하여 道使・停助人 그리고 6정 소속의 군관과 병졸이 배치되어 있었다. 군주는 왕명을 받아 협의의 주내에서 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고 6정과 군·성·촌의 법당 병력을 통솔할 수 있었다.

지증왕 6년(505) 이후에 郡의 설치를 전하는 첫 기록은《삼국사기》권 34, 지리지에 보인다. 법흥왕이 阿尸良國을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는 기록과 법흥왕 19년(532)에 금관국을 멸하고 그 땅을 金官郡을 삼았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신라본기에서는 진흥왕 15년(554)에 '三年山郡의 高干 都刀가백제왕(성왕)을 쳐죽였다'는 기록이 찾아진다.

금석문들을 살펴보면 〈봉평비〉(524)에는 보이지 않던 군이〈명활산성비〉(551)에는 郡中上人,〈창녕비〉(561)에는 우추·실직·하서아군 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신라에서 군이 처음 설치된 시기가 법흥왕 11년에서 진흥왕 12년(551)경이었음을 의미한다.〈남산신성 제9비〉(591)에는 伋伐郡이 기재되어 있다. 급벌군은 《삼국사기》권 35, 지리지에서 보이는 及伐山郡으로 본래는 고구려의 군이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남산신성 제9비〉에서는 급벌군이진평왕 13년(591)경에 신라의 군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써 우추군・실직군·하서아군과 함께 급벌군이 진흥왕 22년 내지 진평왕 13년경에는 신라의 군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고구려 지배하에 들어간 濊가 독자적으로혹은 고구려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18) 고

¹⁶⁾ 李仁哲、〈新羅 中古期의 地方統治體系〉(《新羅政治制度史研究》,一志社, 1993), 170等.

¹⁷⁾ 軍主·幢主는 본래 남북조시대의 군관직명이었다(宮川尙志,《六朝史研究》政治 · 社會篇, 日本學術振興會, 1956, 557~577쪽). 북제에서는 군주가 종7품, 당주가 종9품의 군관이었다(《隋書》권 27, 志 22, 百官 中).

^{18)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9년 • 권 19, 高句麗本紀 7, 양원왕 4년.

구려가 오늘날 강원도 지역에 군을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연히《삼국사기》지리지 삭주・명주조에 본래 고구려의 군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군들은 진평왕 13년(591) 이전에 신라가 설치한 군이었다고 하겠다. 《삼국사기》지리지 尙州・良州・康州・漢州조에 기록된 군들 역시 신라의 영토확장에 따라 설치된 군이었다.

군에 파견된 지방관은 幢主였다.19) 당주는 군주와 마찬가지로 지방관이면서 동시에 군관이었다. 〈적성비〉(551)에 보이는 鄒文村幢主와 勿思伐城幢主는지방의 城・村에 편성되었던 外餘甲幢의 당주였다. 같은 비문에 기재된 高頭林城在軍主 2명 중의 한 사람인 金武力은 신주의 설치와 함께 진흥왕 14년 (553)에 新州軍主가 되었다.20) 추문촌당주와 물사벌성당주 역시 해당지역에군이 설치되면서 郡幢主로 되었을 것이다.21) 〈창녕비〉에는「軍主・幢主・道使」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군주가 주장관이고 도사가 성・촌에 파견된 지방관이었던 사실도 당주가 주와 성・촌의 중간행정단위인 군의 지방관이었음을 보여 준다.

〈창녕비〉에 보이는 우추・실직·하서아군사대등은 군의 지방관이 아니라 우추・실직·하서아군이 準州의 성격을 가진 탓에 3개 군에 수시로 왕명을 받아 파견되던 중앙관이었다. 이는 같은 비문에 기록된 州行使大等이 상주와 하주내의 여러 군에 수시로 파견되던 중앙관이었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주행 사대등을 통하여 국왕의 명을 받은 당주는 이를 다시 성·촌에 하달하였다. 〈창녕비〉에 신주행사대등과 비열홀주행사대등이 보이지 않는 까닭은 이들 주에는 진흥왕 21년(561) 당시까지 군의 설치와 당주의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산신성 제9비〉(591)에 보이는 급벌군은 진흥왕 21년에서 진평왕 13년 사이에 이들 주에 군이 설치되었음을 알려 준다.

¹⁹⁾ 李鍾旭,〈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歷史學報》64, 1974), 44~46쪽.

朱甫暾, 앞의 책, 79~89쪽.

^{20) 〈}적성비〉가 세워질 당시 高頭林城在軍主 2명은 지방장관을 겸하지 않은 단순 무관으로 생각된다.

²¹⁾ 李宇泰,〈新羅의 村과 村主-三國時代를 중심으로-〉(《韓國史論》7, 서울대, 1981), 76쪽.

6세기 후반 이후 군의 설치와 지방관의 파견은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명활산성비〉(551)와 〈남산신성비〉에는 邏頭가 보인다. 나두는 새로 증설된 군에 파견된 법당군관이면서 동시에 지방관이었다. 이렇게 설치된 군에는 4개 정도의 성촌이 있었다.²²⁾ 당주 혹은 나두로 불리던 지방관의 명칭은 진평왕 16년(594)경에 군태수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道使가 파견되었던 행정성·촌이 진평왕 33년경에 현으로 편제되고 그 지방관의 명칭이 소수 내지는 현령으로 바뀌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

지증왕 6년(505) 이후 진평왕 33년 이전까지 주·군 아래에 현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주·군 아래의 지방 행정단위는 성·촌이었다. 성·촌에는 〈봉평비〉(524)의 居伐牟羅道使 그리고 〈남산신성비〉의阿且兮村道使·仇利城道使·苔大支村道使 등을 통해 도사가 배치되었음을확인할 수 있다. 〈봉평비〉는 3~4개의 촌 가운데 중심촌에만 도사가 배치되었고, 주변촌에는 지방민으로 使人이 임명되었음을 보여 준다.23)

〈남산신성비〉는 군을 단위로 지방민을 역역에 동원하고 행정성·촌에 작업을 분담시켜 축성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군 아래의 행정성·촌이 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진평왕 13년경에 이미 현이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주가 임명되었던 행정성·촌은 진평왕 33년 이전에 이미 군으로 편제되었고, 그 이후에는 도사가 파견되었던 행정성·촌이 현으로 편제되었다.40 진평왕 33년 이후 군의 지방관은 大守였고, 현의 지방관은 小守 혹은 현령이었다. 지방 행정성·촌에는 지방민 중에서 임명된 촌주와 외위를 받은 인물들이 있어서 村政을 맡아보았다.

주·군·현 이외에 중고기의 지방 행정조직으로는 小京이 있었다. 소경은 지증왕 15년(514)에 아시촌(의성군 비안면), 진흥왕 18년(531)에 국원(충주), 선덕왕 8년(639)에 하슬라주(강릉)에 두어졌다. 소경은 수도의 偏在性을 보완하고 새로운 점령지에 신라의 정치·사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방통치

²²⁾ 李宇泰, 위의 글, 100쪽.

²³⁾ 金在弘,〈新羅 中古期의 村制와 지방사회 구조〉(《韓國史研究》72, 1991), 26쪽.

²⁴⁾ 이 때 郡으로 편제된 곳도 있었다(木村誠, 앞의 글, 12쪽).

의 거점으로 설치되었다. 소경에는 신라의 왕경인뿐 아니라 가야 혹은 고구려의 유민들을 사민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현지의 원주민과 신라인과의 갈등을 제3국인과의 갈등으로 대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써 갈등의 다원화를 통해 지방통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에서 나온 것이었다. 소경의 통치는 지방장관인 仕大等이 직접 국왕의 명령을 받아서집행하였다. 소경에는 사대등을 보좌하는 仕大舍와 小京餘甲幢의 군관들이배치되어 있었다.²⁵⁾

2) 군사조직

신라 상고기의 군사조직으로는 6部兵과 지방의 城・鎭에 편성된 병력이 있었다. 6부병은 왕경의 6部人으로 편성된 부대로서 신라 초기의 영토확장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지방의 성・진에도 왕경인으로 편성된 군부대가 주둔하였다. 성・진의 병력은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피정복소국의 반란에도 대비하였다.

성·진에는 왕경인뿐 아니라 지방인으로 편성된 군사조직도 있었다. 奈解 王 14년(209)에 왕손 栋音으로 하여금 近郡 및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阿羅國을 구원하고 浦上八國의 군사를 처부수었다고 한 기록은²⁶⁾ 지방의 성·진에 주둔한 군대가 지방민으로 편성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儒禮王 10년(293)에 沙道城을 개축하고 사벌주(상주)의 豪民 80여집을 옮겼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탈해왕 8년(64) 이후에 왕경에서 출동하는 신라의 군 사조직이 보병과 기병으로 편성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2세기 이후 경주지역의 고분에 매납된 무기·武裝의 출토 양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2세기경 경주고분에서 활・鐵矛・鐵鎌・鐵劍・環頭大刀・鐵斧 등과 함께 재갈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3세기경의 정래동 토광묘에서 출토된 短甲은 당시에 신라군이 甲胄로 무장하였음을 보여 주며, 4세기 후반에 鐵製 鐙子와 함

²⁵⁾ 李仁哲, 앞의 책, 184~193쪽.

^{26)《}三國史記》권 48, 列傳 8, 勿稽子.

께 출토되는 金銅製 갑주와 馬甲胄는 신라에 중장기병이 출현하였음을 알려준다. 5세기대의 대형 적석목곽분에서 금관을 비롯한 금제·은제·금동제 장신구가 부장되었고, 철제 갑주가 거의 부장되지 않은 대신에 비교적 소형분에만 철제 갑주가 매납되고 있다.27) 이는 철제 갑주의 사용이 하위신분으로확산되면서 실용화되었다는 증거이다.

5세기 중반 이후에는 개마와 기병용 갑주의 무장이 귀족들에게 보편화되고, 보병도 상당수가 板甲으로 무장하였다. 이는 6세기 초에 개마와 기병용 갑주의 무장이 좀더 낮은 신분으로 확대되면서 중장기병부대가 출현하게 된 것을 암시한다. 이 중장기병부대가 지방으로 이동·배치되면서 10정 가운데 伊火兮停이나 音里火停이 되었으며, 단갑으로 무장한 왕경의 보병은 6정 가운데 왕경에 배치된 大幢의 병졸로 편성되거나 지방에 배치된 6정의 군단본부 병력이 되었다.

5세기 후반 이후에 부산지역에서 출토되는 무기·무장도 이 지역에 보병·기병부대가 편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부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군사력 가운데 기병은 6세기 중반경에 麥良火停이나 召參停의 기간병력이 되고, 보병은 양산을 거쳐 창녕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의 기존 병력과합쳐져서 下州停의 기간병력으로 재편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산·대구·칠곡 등지에서 출토되는 무기와 무장은 이들 지역에 보병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 보병부대는 6세기에 접어들면서 上州停으로 이동되었을 것이다. 여타 지역의 고분에서도 철촉·철겸·도자·철부등이 소량씩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성·촌에 편성되었던 농민군사들의무장상태를 보여 준다.28) 6세기 초기에 이루진 法幢의 편성과 6정·10정의편제는 그 이전에 왕경과 지방의 주요 전략지점에 배치되었던 군사 조직과성·촌에 편성되었던 농민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라정부는 법흥왕 11년(524)경에 왕경의 6부병을 법당군단 가운데 京餘甲幢으로 편제하여 6畿停에 주둔시켰다. 지방 城鎭의 병력은 外餘甲幢으로 편

²⁷⁾ 宋桂鉉, 〈加耶出土の甲胄〉(《伽倻と古代東アジア》, 新人物往來社, 1993), 196쪽.

²⁸⁾ 李仁哲、〈6~7世紀의 武器・武装과 軍事組織의 編制〉(《韓國古代史論叢》7,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5), 38~45等.

제했다. 지방의 성촌에 외여갑당이 편성되었음은 〈단양 적성비〉에 보이는 '鄒文村幢主'와 '勿思伐城幢主'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²⁹⁾ 소경에도 법당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小京餘甲幢이라 이름하였다. 이처럼 법흥왕대에 왕경·소경·주·군·성·촌에 편성된 법당의 군관은 왕경인으로 임명되었으며 병졸은 지방의 농민군사들이었다. 《삼국사기》에 당주 혹은 태수·소수·현령 등이 농민군사를 동원하여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까닭은 법당군관이 지방관을 겸직하였기 때문이다. 6정의 군단장인 軍主가 州장관을 겸직하였듯이 법당의 군관 역시 지방관을 겸직하였다.³⁰⁾

법당군단에는 또한 官司守衛의 임무를 맡은 百官幢과 특수 병기를 제작하여 각 부대에 공급하던 四設幢이 속해 있었다. 사설당은 弩幢・雲梯幢・衝幢・石投幢으로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각기 弩・雲梯・衝車・抛車를 제작하여 각급 부대에 공급했다.31)

진흥왕 5년(544)에 신라정부는 전국적인 규모로 보병군단인 6정과 기병군단인 10정을 편성하기 시작했다.32) 이들 군단의 편성은 6세기 전반 이전에이미 중앙과 지방에 배치되었던 군사조직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졌다.《삼국사기》직관지 무관조에 따르면, 6정은 大幢・上州停・漢山停・牛首停・河西停・完山停으로, 대당은 진흥왕 5년에, 상주정은 13년에 설치되었으며, 한산정은 본래 新州停이었고, 우수정은 본래 比別忽停이었으며, 하서정은 본래悉直停이었고, 완산정은 본래 下州停이었다. 신주정은 진흥왕 14년에, 하주정은 16년에, 비열홀정은 17년에 각기 설치되었다.

하서정은 본시 실직정인데 무열왕 5년(658)에 실직정을 파하고 하서정을 두었다고 전한다.³³⁾ 〈창녕비〉(561)에 우추·실직·하서아군으로 기재된 지역에 하서주가 설치된 시기는 진평왕 20년(598)경이었다. 이 때 두어진 하서정

²⁹⁾ 武田幸男、〈中古新羅の軍事的基盤-法幢軍團とその展開-〉(《東アジア史における 國家と農民》、山川出版社, 1984), 221~257等.

³⁰⁾ 李仁哲, 〈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앞의 책), 294~324쪽.

³¹⁾ 李仁哲, 위의 책, 292~294쪽.

^{32) 《}三國史記》권 40, 志 9, 職官 下 武官. 末松保和, 앞의 책, 323~367쪽.

^{33) 《}三國史記》 권 40, 志 9, 職官 下 武官.

은 선덕왕 8년(639)에 실직정으로, 무열왕 5년에는 다시 하서정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신라 중고기의 보병군단인 6정은 진평왕 20년(598)경에는 그 설치 가 완료되었다고 하겠다. 이같은 6정의 설치과정이나 설치 이후의 이동과정 은 당시 신라의 영토확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다.³⁴⁾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문무왕 13년(673)에 상주정을 貴幢으로 개칭했다고 전한다. 그러나《삼국사기》열전에서는 진흥왕 23년(562)에 사다함이 5천 명의 騎兵을 이끌고 貴幢裨將으로 출전했다고 하며,35) 진평왕 46년경의 기사에는 「상주・하주・귀당・법당・서당」5軍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고,36) 신라본기 문무왕 원년(661)조에도 貴幢摠管과 上州摠管의 임명기사가 앞뒤로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귀당이 왕경의 귀족들로 편성된 기병부대이며, 진흥왕 23년 이전부터 이미 상주정과는 계통을 달리하여 존속해 왔음을 의미한다. 중고기에 편성된 서당・四千幢・郎幢・罽衿幢 등의 부대와 마찬가지로귀당은 6정에 포함되지 않는 채로 운영되어 온 부대였던 것이다. 문무왕 5년에 상주와 하주의 땅을 떼어 歃良州를 설치함으로써 상주・하주라는 지명이사라지게 되었고 백제・고구려 양국의 멸망과 五州誓의 설치(672)로 귀당의존속 필요성이 줄어들자, 신라정부는 기존의 귀당을 해체하고 문무왕 13년에종래의 상주정을 귀당이라 고쳐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삼국사기》 직관지의 귀당 관련 기사는 이러한 사정의 결과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대당・귀당・한산정・우수정・하서정・완산정으로 최종 정비된 6정의 군 사조직을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를 통해서 보면, 각 군단 조직은 군단본 부와 그 지원부대로 편성되었다. 군단본부의 군관 조직은「將軍一大官大監 ・隊大監-弟監-監舍知-少監・火尺」의 지위 순으로 편제되었다. 군관의

^{34) 6}정의 이동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州治의 이동과정과 일치한다. 한편《三國史記》 무관조의 軍號 六停이 大幢・貴幢・漢山停・牛首停・河西停・完山停만을 가리 킨다고 하여 신문왕 5년(685) 이전에는 군호 6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 해도 있다(李文基, 앞의 책, 70~82쪽). 그러나 이 글에서는 6정이란 왕경과 지 방의 5주에 보병군단 1개씩을 둔 방위체제라고 보아, 6개 정이 병존한 진평왕 20년(598)경부터 군호 6정이 있어 왔다는 입장에서 통설에 따라 6정을 중고시 대의 군사조직으로 설명한다.

^{35) 《}三國史記》 권 44, 列傳 4, 斯多含・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23년.

^{36) 《}三國史記》 권 47, 列傳 7, 訥催.

수는 해당 군단의 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달리하였는데, 이는 해당 부대의 병졸 역시 군관의 수에 비례하여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정의 각 군단본부에 소속된 군관과 병졸은 모두 왕경인으로 편성되었다.37)

6정의 예하 지원부대로는 軍師幢·大匠尺幢·步騎幢·黑衣長槍末步幢이 있었다. 군사당의 군관으로「당주(1)—감(2)—법당화척(5)」을 두었으며, 이들은 왕경인으로 임명되었다. 군사당의 병졸은 6정 주둔지의 성·촌에서 징발된 농민병사로 편성되었다. 38) 대장척당은「당주(1)—감(1)」의 군관과 성·촌에서 징발된 지방인 병졸로 편성되었다. 대장척당은 지방의 성·촌에서 축성기술자들을 징발하여 편성한 6정의 기술지원부대였다. 39)

보기당은 보병과 기병으로 편성된 부대였다. 군관은 「당주-감」으로 조직되었는데, 대당과 한산정에 배정된 「당주-감」은 각기 6명씩이고 여타 정에는 4명씩이 배정되었다. 흑의장창말보당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대당 30인, 귀당 22인, 한산정 28인, 우수정 20인, 완산정 20인 등으로 당주의 숫자만 전하고 그 아래 군관직의 숫자는 전하지 않는다. 그 명칭으로 보아 흑의 장창말보당은 검은 옷에 긴창을 든 보병부대였다. 보기당과 흑의장창말보당의 군관과 병졸은 모두 왕경인이었다.

법당군단과 6정군단 이외에 신라 중고기에 전국적인 규모로 편성된 기병 군단으로 10정이 있었다. 10정군단은 기병부대인 10정과 그 예하 지원부대인 三千幢으로 조직되었다. 10정은 音里火停(현 경북 상주 청리면)·古良夫里停(현 충남 청양 청양면)·居斯勿停(현 전북 임실 청웅면)·麥良火停(현 경남 밀양 삼량 진)·召參停(현 경남 함안 죽남면)·未多夫里停(현 전남 나주 남평면)·南川停(현 경기도 이천 읍내면)·骨乃斤停(현 경기도 여주)·伐力川停(현 강원도 홍천)·伊火 兮停(현 경북 청송 안덕면) 등 모두 10개 기병부대로 조직되었다.40) 10정의 각

³⁷⁾ 朱甫暾、〈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関가지 問題〉(《新羅文化》3・4, 東國大, 1987), 44等.

³⁸⁾ 木村誠, 앞의 글, 16쪽.

³⁹⁾ 李仁哲,〈新羅骨品體制社會의 兵制〉(앞의 책, 1993), 331쪽. 朴南守,《新羅手工業史》(신서원, 1996), 149~156쪽.

⁴⁰⁾ 安鼎福,《東史綱目》 권 3 上. 末松保和, 앞의 책, 360쪽.金崙禹,〈新羅十停과 所在地名 變遷考〉(《慶州史學》7, 1988), 21쪽.

부대는 「대대감(1)-소감(2)-화척(2)」의 군관으로 조직되었고 그 병졸은 4두 품 이상의 왕경인으로 편성되었다.41)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10정이 진흥왕 5년(544)에 모두 설치되었다고 전한다. 5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지역에서 출토되는 각종 마구와 기병용 갑옷과투구가 6세기 중반경에 기병군단이 창설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흥왕 5년경에 10정이 동시에 모두 창설된 것은 아니었다.

고량부리정·거사물정·미다부리정 등 3개 정은 당시에 백제의 영역 안에 있었고, 오늘날 경기도 지역에 설치되었던 남천정과 골내근정은 新州가 두어진 진흥왕 14년 이후에, 강원도 지역에 설치되었던 벌력천정은 비열홀주가두어진 같은 왕 17년 이후에나 편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 정은 진흥왕 5년에 음리화정·삼량화정·소참정·이화혜정 등 4개 정이 창설되고, 17년경을 전후하여 남천정·골내근정·벌력천정 등 3개 정이 설치되었으며, 백제영역을 거의 장악한 문무왕 5년(665)경에 나머지 고량부리정·거사물정·미다부리정 등 3개 정이 두어짐으로써 그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겠다. 10정 역시 6정과 마찬가지로 신라의 영토확장 과정에 비례하여 설치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는 10정이라는 기병군단이 신라의 삼국통일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삼천당은 10정의 예하 지원부대였기 때문에 10정의 주둔지에 배치되었다. 삼천당의 군관은 주둔지별로 당주와 감이 각기 6인씩이고 병졸이 각기 15인 이다. 9세기 초에 경주〈高仙寺 誓幢和尙碑〉에 비문을 새긴 인물이 '음리화 삼천당주'였다고 한 기록,42〉〈崇福寺碑〉에 보이는 '삼천계를 망라하여 경계를 삼으며 5백 년을 셈하여 한 봄으로 삼는다'는 구절,43〉 승려였던 驟徒가 병부 에 나아가 삼천당에 속하기를 청하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힘껏 싸우다 죽었 다는 기록44〉 등은 삼천당이 자원하여 종군한 僧兵으로 편성된 부대였음을

⁴¹⁾ 李仁哲, 앞의 책, 382쪽.

^{42)〈}高仙寺誓幢和尚塔碑〉(《朝鮮金石總覽》, 1919), 41~43等. 〈新羅誓幢和尚碑新片〉(黃壽永 編,《韓國金石遺文》, 1985), 72~74等.

^{43) 〈}崇福寺碑〉(《朝鮮金石總覽》), 123\.

^{44)《}三國史記》권 47, 列傳 7, 驟徒.

알려 준다. 각 부대에 병졸이 15인에 불과하고 대나마 이하의 관등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도 삼천당이 일반 양인을 편성해 넣은 부대가 아니라 자원한 승병으로 편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삼천당은 진평왕대에 10정의 예하 지원부대로 창설되었다. 삼천당이 모두설치된 시기는 10정과 마찬가지로 문무왕 5년경이었다. 新三千幢이 문무왕 12년과 16년에 창설된 사실은 舊三千幢과 10정이 그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신삼천당은 外三千이라 하여 우수주(춘천)·奈吐郡(제천)·奈生郡(영월)에 편성되었다. 삼천당이 10정의 주둔지에 편성되고 신삼천당역시 지방에 배치된 점을 고려하면 진평왕 13년(591)에 창설된 四千幢은 왕경에 편성된 승병부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부대 이외에 삼국통일 이전에 설치된 군사조직으로 侍衛府・罽衿幢・二罽幢・二弓・誓幢・郎幢 등이 있었다. 시위부는 진평왕 46년에 창설되어 신문왕 원년(681)에 최종 정비된 부대로 궁성의 숙위와 국왕의호종 및 경호를 담당하였다.45)

계금당은 무열왕 원년(654)에 창설된 기병부대로서 「대대감(1)—제감(1)— 감사지(1)—소감(1)—화척(7)」의 군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계금당은 왕경을 중심으로 활동한 기병부대였다. 이계당은 外罽라고도 하는데, 한산주 계당은 문무왕 17년에, 우수주 계당은 문무왕 12년에 창설되었다. 무열왕 7년에 屬 衿卒 宣服이 급찬의 관등을 수여받았는데 이는 계금당과 이계당의 병졸이 4두품 이상의 기병으로 편성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궁은 外弓이라고도 하며 漢山州弓尺은 진덕왕 6년(652),河西州弓尺은 진평왕 20년에 각각 창설되었는데 활을 주무기로 하는 부대였다. 서당은 진 평왕 5년, 낭당은 7년에 창설되었다. 서당은 문무왕 12년에 綠衿誓幢으로, 낭당은 17년에 紫衿誓幢으로 재편되어 9서당에 편입되었다. 재편된 9서당의 조직을 통해 서당과 낭당은 보병·기병으로 편성된 부대였음을 알 수 있다.

군사작전의 수행은 기본적인 군사조직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왕경·소경 ·군·성·촌(혹은 현)에 편성된 법당은 해당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

⁴⁵⁾ 李文基, 앞의 책, 149~175쪽.

위에서 전투를 수행했다. 軍主(뒤에는 都督)라 하더라도 왕의 명령없이는 군·성·촌의 법당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출동시키지 못했다. 군주의 병력동원은 6정 군단의 자체 병력과 주치에 편성된 법당에 한정되었다. 그러나왕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6정의 군단장인 군주는 군·성·촌의 법당을모두 동원하여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신주군주였던 金武力이 삼년산군의 병력과 합세하여 管山城전투에서 승리했던 일이나 금산당주 奚論이 한산주도독 邊品과 함께 백제의 枷岑城을 빼앗은 일이 여기에 속한다.46)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行軍을 편성하였다. 무열왕 7년(660) 및 문무왕 원년(661) 7월 17일과 8년 6월 21일에 있었던 複數의 行軍摠管 임명기사는 광역주를 단위로 편성된 행군조직의 장군 임명기사였다. 행군조직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 6정의 병력뿐 아니라 10정과 법당의 병력도 편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무왕 8년 6월 21일 대당총관에 임명되었던 仁問과 天存 그리고 한성주행군총관에 임명되었던 都儒가 바로 그 다음날인 6월 22일에 一善州 등 7郡과 漢城州兵馬를 통솔하였던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같은 행군조직은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편성된 임시 군단으로 전쟁이 끝나면 해체되었다. 그러나 행군조직 속에 편제된 6정ㆍ10정ㆍ법당 등의 군단은 鎭軍組織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계속 작전을 수행하였다.47)

이상과 같은 군사조직의 편성과 군사작전의 수행과정을 전체적으로 조감해보면 매우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군사조직의 편성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작전이 수행되었으며, 삼국통일을 달성하는 시점에서 군사조직의 양적 팽창이 최고조에 달하였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당시인들의 치밀성과 열정이 신라로 하여금 삼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3) 교통로 개척과 성곽시설

교통로란 사람과 車馬가 왕래하는 길이다. 생산의 지역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잉여생산이 증대되면 물자가 교역되게 된다. 물자를 교역하기 위해서는 교

^{46)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5년·권 47, 列傳 7, 奚論.

⁴⁷⁾ 李仁哲, 앞의 책, 340~344・361~366쪽.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로 개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일정한 넓이로 먼 길을 평탄하게 다 듬어야 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각종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인명을 보호 해야 하고, 그러한 교통로의 개척이나 교역체계를 반대하는 소국들의 무력행 사도 막아내야 했다.

교통로는 물자의 교역만을 위해서 개척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교통로가 개척되기도 하며, 정복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통로를 개척하기도 한다. 삼국통일 이전 신라의교통로 역시 물자교역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다른 소국을 정복하고 그 정복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나아가 지방 행정단위로 편제하여 각종 조세와 공물을 수취하여 운반해 오기 위해 개척되었다.

철생산을 기반으로 국력을 증대시킨 신라는 주변 소국들을 정복해 나아가게 된다. 이웃 소국의 정복은 해당 소국에 이르는 교통로를 개척하는 수단이될 뿐 아니라 그 다음 소국을 침략하기 위한 교통로 개척의 발판이 되었다. 이에 초기 신라가 주변의 소국을 정복해 나아간 방향에 따라 당시의 교통로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경주를 출발점으로 하여 음즙벌국(안강)・실직국(삼척)으로 통하는 길, 우시산국(울산)・거칠산국(동래)으로 통하는 길, 이서국(청도)・비지국(창녕)・초팔국(합천군 초계)에 이르는 길, 압독국(경산)・다벌국(대구)에 이르는 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영천의 골벌국과 의성의 소문국을 제외한 오늘날 경북지역의 낙동강 以東에 있던 소국들을 모두 정복하게 된 신라는 낙동강을 이용하거나 그 동쪽 강변을 따라 문경·영주까지 북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8) 이러한 교통로 개척의 연장선상에서 신라는 아달라왕 3년(156)에 雞立嶺(문경 조령)을 열었고, 그 5년에 竹嶺을 열었다. 여기서 '열었다'는 의미는 이들 두 고개의 통행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기존세력으로부터 신라가 통행권을 쟁취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49) 벌휴왕 2년(185)에 소문국을 정복하자, 영천의 골벌국은 조

⁴⁸⁾ 安春培, 〈신라와 가야의 土器〉(《韓國古代史論叢》 3, 1992), 278쪽.

⁴⁹⁾ 李賢惠,《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84), 189쪽. 朱甫暾, 앞의 책, 14쪽.

분왕 7년(236)에 스스로 항복하였다. 이로써 경주에서 영천-의성-안동-영 주-죽령에 이르는 길이 원활하게 되었다.50)

조분왕 2년에 낙동강 서쪽으로 진출하여 감문국(김천)을 정복하고 첨해왕대에 사벌국(상주)을 점령함으로써 신라는 진한 12국의 정복을 완료한다. 감문국의 정복으로 인하여 영천-경산-대구까지 이른 길이 김천-금돌성(상주모동)으로 연장되어 마한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새로 열리게 되었고,51) 사벌국의 점령으로 영천-대구-선산-상주-문경-조령(혹은 상주-보은-청주)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52) 이들 교통로 이외에도 정복된 소국과 소국을 연결하는 교통로도 개척되었다.

교통로 개척은 국가권력의 지방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지방세력을 약화시 킴으로써 중앙집권국가의 출현을 촉진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물자유통을 원활하게 만들었다. 신라에 복속되었다가 다시 반기를 들었던 실직국·압독국·사벌국 등이 곧바로 신라군에 진압되고 그 지배층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진 것도 신라군이 개척된 교통로를 따라 신속히 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가능한 일이었다.

개척된 교통로는 국왕의 지방 순행, 조세·공물의 운반, 교역 물자의 수송, 병력 및 역역에 동원된 장정의 이동 등에 이용되었다. 물자와 인원의 유통이 활발하게 되자, 소지왕 9년(487)에는 사방에 郵驛을 두고 官道를 수리하였다. 이 우역은 《삼국사기》권 37, 지리 4, 三國有名未詳地分조에 보이는 5門驛 가운데 兌門驛(西方)을 제외한 나머지 乾門驛・坤門驛・坎門驛・艮門驛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문역은 역시 삼국유명미상지분조에 보이는 5通 가운데 4통의 官道와 각기 연결되었다. 건문역(西北方)은 北搖通, 곤문역(西南方)은 東海通, 감문역(正北方)은 鹽池通, 간문역(東北方)은 北海通으로 나아가는 출발기점이었다. 5문역이나 5통의 이름은 신라통일기에 붙여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역이나 관도 자체는 소지왕대에 이미 정비되어 있었다.53) 관도의

^{50) 《}三國史記》권 3, 소지왕 22년조에는 소지왕이 古陁郡(안동)을 거쳐 栋已郡(영주)에 여러 차례 다녀온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⁵¹⁾ 鄭永鎬,〈尚州방면 및 秋風嶺 北方의 古代交通路 研究〉(《國史館論叢》16, 國史編纂委員會, 1990), 209~245쪽.

⁵²⁾ 申瀅植, 앞의 책, 198~200쪽.

정비로 물자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자 신라정부는 소지왕 12년에는 서울에 시장을 개설하고 사방의 화물을 통하게 하였다. 지증왕 6년(505)에 주군제를 실시하게 된 것도 관도의 수리로 국가 권력의 지방침투가 그만큼 더 용이해 져서 지방관의 파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6세기 이후에는 신라의 교통로 개척이 더욱 확대되었다. 가야의 멸망으로 울산-부산-김해-함안-진주 일대로 진출하는 길(동해통)과 창녕-초계-합천-거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⁵⁴⁾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가 멀리 함흥일대까지 진출함으로써 이들 지역으로 통하는 길도 열렸기 때문이다. 신라가 조령을 넘어 충주-여주-이천-용인-수원-남양만(당항성)으로 통하는 길(북요통)을 개척한 시기도 6세기 후반이었다. 경주에서 출발하여 영덕-울진-삼척-강릉에 도달했던 교통로(북해통) 역시 속초-고성-안변-원산-함흥까지 연장되었다.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로 개척이 더욱 확대되어 경주-청도-합천-남원-순창-나주에 이르는 길, 경주-대구-고령-거창-육십령-전주에 이르는 길, 경주(兌門驛)-양산-창녕-합천-거창-남원-무주-나주(海南通),55) 경주-대구-김천-상주-대전-공주-부여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통하는 교통로도 개척되었다. 문무왕 2년(662)에 김유신등이 수레 2천여 량에 쌀 4천 석과 벼 2만 2천여 석을 싣고 평양으로 갔다고 한다.56) 경주에서 출발하여 안동-죽령-원주-포천-신계-수안 등을 거쳐 평양에 도달했을 이 길(염지통)은 상당히 넓었던 모양이다. 우마차 하나에 13석씩 싣고 간 셈이니 우마차의 크기가 요즘과 별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

⁵³⁾ 井上秀雄、〈新羅王畿の構成〉(《新羅史基礎研究》,東出版, 1974), 399~405쪽. 海南通은 井上의 연구에서 兌門驛을 출발하여 가야지역을 거쳐 남원-광주-나주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가야세력을 정복하지 못했던 소지왕대에는 이 교통로가 개척되지 않았다고 보아진다.《三國史記》권 38, 志 7, 職官 上의 京都驛은 5문역을, 권 39, 志 8, 職官 中의 尻驛典은 왕궁 부근의 驛亭을 관리하는 관서로 생각된다. 지방에도 우역이 있었는데, 屈井驛(울산?)(《三國遺事》권 3, 塔像 4, 靈鷲寺)・褥突驛(충주)(《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8년 10월 25일) 등이 그것이다.

⁵⁴⁾ 申濚植, 앞의 책, 201쪽.

⁵⁵⁾ 井上秀雄, 앞의 책, 401쪽.

^{56)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2년 정월.

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의 관도는 대체로 우마차 하나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으며, 큰 관도는 마주 오는 우마차가 비켜 갈 수 있을 정도로 넓 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개척된 교통로는 신라군의 공격로였기도 하지만 적군의 침투로도되는 만큼 주요 전략적 지점에는 성곽시설이 만들어졌다. 《삼국사기》기록을 통해서 삼국시대에 신라가 축조한 성곽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숫자는 100개정도이고, 실제 답사를 통해 확인한 성곽의 숫자는 그보다 많아서 대략 16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57)

신라의 도성은 왕경을 둘러싼 長城이 별도로 축조되지 않고, 동에는 명활산성, 서에는 서형산성, 남에는 남산신성이 있어서 주위의 산성이 羅城의 역할을 하였다. 왕성인 月城을 보호하기 위한 성곽으로는 남산신성·서형산성·명활산성·경주남고루·도당산성·남산토성·고허성·부산성·귀성·작성·양동리성 등이 있었다.58)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말갈이나 고구려를 막기 위해 쌓아 놓은 성곽으로는 봉화의 도심리성, 청송의 상의동성과 주왕산성, 영덕의 주응동산성(달노산성)·축산동성, 영일의 남미질부성·북미질부성·성황동성·토성동성·장기목장성·문성산성·고읍성 등이 있다. 《삼국사기》에는 소지왕 3년(481)에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狐鳴城(청송 호명산) 등 7성을 취하고 彌秩夫(영일)로진군하였다가 신라·가야·백제군에게 격퇴되었다고 하였으며, 지증왕 5년(504)에 波里(삼척)·彌寶(영일)·珍德·骨火(영천) 등에 12성을 쌓았다고 하여, 당시 신라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고구려·말갈(동예)의 침입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영일지역에 쌓은 성들은고구려·동예 세력뿐 아니라 바다로 침입하는 왜적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⁵⁷⁾ 朴方龍,〈都城‧城址〉(《韓國史論》15, 國史編纂委員會, 1985), 337쪽. 한편 이 글에 제시된 성곽은《文化遺蹟總覽》(文化財管理局, 1977)과 井上秀雄이 작성한〈朝鮮城郭一覽〉(《朝鮮學報》103·104·107, 1982·1983), 그리고 여타 성곽 관련 논문 및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였음을 밝혀 둔다.

⁵⁸⁾ 李元根,《三國時代 城郭研究》(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80), 340~386쪽. 朴方龍, 위의 글, 338~387쪽.

왜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성곽으로는 울주의 강양리성·문수산성·언양읍성·천전리성(大甑山城), 양산의 순지리토성59)·양산읍성·북부동산성·신기리산성·단조산성, 부산의 토성동성·배산성·금정산성이 있다. 부산과 양산지역의 성곽들은 김해의 금관가야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영주-안동-의성-군위-영천-경주로 통하는 교통로상에도 많은 성곽들이 자리하고 있다. 즉 영주의 죽령고관성·상을곡성, 안동의 상리동성, 의성의 치선동성·병방동성·수정동성·봉양동성·마령산성, 군위의 지곡성·하곡동성·성령산성·효령면성·팔공산성·읍내동성, 영천의 계지동성·치산동성·화남동성·연정동성·관기동성·당지동성·가산동성·금대동성·대의동성등이 그것이다. 이들 성곽 중에는 의성의 수정동성(소문국 시기에 축성)처럼 진한 소국단계의 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신라에 점령된 후에는 이들성곽이 죽령을 넘어 경주 방향으로 침투해 오는 고구려와 동예의 방어에 이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달성·대구·경산지역에도 많은 성들이 분포하고 있다. 달성의 문산동성 등 10개 성, 대구의 달성·봉무동토성·용암산성·용두산토성·침산산성·검 단동토성·노곡동산성, 경산의 용산성·미산동성·압량면성·내동성·구일동 성·장산성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성곽 중에도 진한 소국단계에서 축성된 성곽도 있지만, 이들 성곽 역시 신라에 점령되었을 초기에는 가야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백제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하였을 것이다.

칠곡·금릉·상주지역에 있는 성곽들은 주로 백제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들이다. 삼국시대의 성곽으로는 칠곡의 관호동성·천생산성, 금릉의 동부동성·취적산성·속문산성(감문국 궁궐지)·교리성, 상주의 자산산성·병풍산성·금돌성·답달성·화달리성⁶⁰⁾ 등이 있다. 문경에는 마고산성·명전리성·상촌리성·노고성·노모산성이 있고, 예천에는 매곡성·어림성·원산성이 있는데, 이들 성곽들은 백제 혹은 고구려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축조되었을 것이다.

⁵⁹⁾ 沈奉謹,《梁山 蓴池里土城》(東亞大博物館, 1983).

⁶⁰⁾ 鄭永鎬,《尙州地區古蹟調查報告書》(檀國大博物館, 1969).

청도·창녕·밀양지역에 있는 성곽들은 신라에 점령되었을 초기에는 가야세력의 방어에, 나중에는 백제의 침략 방어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도지역에는 仇刀城·率伊山城·驚山城·烏刀山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만61) 구도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비정이 어렵다. 청도지역에 있는 삼국시대 성곽으로는 오례산성(仇刀城)·이서국읍성(토성)·백곡산성(이서국 궁터)·주구산성·성마루성·봉화성·성뚝산성·간미산성 등이 있다. 창녕에는 목마산성·화왕산성·신당산성·영취산성이 있고, 밀양에는 추밀화성·철마산성·백마산성이 있다.

경남 해안지역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곽이 26개 정도 있다. 이 가운데 신라가 축조하였음이 분명한 성곽은 진해의 배산성·귀산성,62) 거제의아주성, 진주·진양의 덕계산성·죽방산성, 하동의 고소성, 함안의 봉산성등이다. 합천·산청·함양·거창 등 경남 내륙지역에는 삼국시대의 성곽12개가 있으며 그 중에 신라가 축조한 성곽은 합천의 대야성와 함양의 팔량현고루 등 2개이다. 그 외에 연대미상의 성곽이 38개가 있다. 경북의 고령·성주 지역에도 삼한시대 성곽이 3개, 연대미상의 성곽이 19개가 있다.이들 연대미상의 성곽 가운데 신라가 축조한 성곽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63)

충청도·경기도·강원도·함경도지역에도 신라가 축조한 성곽들이 있다. 충청북도지역에 있는 신라의 성곽들은 보은의 삼년산성(오정산성)과64) 함림산성(노고성, 백봉산성), 옥천의 굴산성(산계리 토성), 청원의 일모산성(연산성, 양성산성)과 낭성산성, 단양의 적성산성·온달성(성산성)과 공문성, 하늘재의 차단성, 중원의 야문성 등이 있다.65) 다만 온달성은 고구려계로 축조된 이후 다시

^{61) 《}三國史記》 권34, 志3, 地理1 良州 大城郡.

⁶²⁾ 沈奉謹,《鎮海 龜山城址》(東亞大博物館, 1984).

⁶³⁾ 진평왕 46년(624)에 速含(함양)・櫻岑・岐岑・烽岑・旗懸・穴柵 등 6성을 구원하러 간 신라군이 백제군의 공세에 눌려 진군하지 못하고 다만 부근에 6성을 쌓고 왔다고 한다(《三國史記》권 47, 列傳 7, 訥催). 이 사료는 이 일대에 12개이상의 신라 성곽이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⁶⁴⁾ 成周鐸,〈新羅三年山城研究〉(《百濟研究》7, 忠南大, 1976), 131~160\.

⁶⁵⁾ 李元根, 앞의 글, 387~466쪽.

신라식으로 개수가 이루어진 성곽이라 한다.66) 이러한 사실은 신라가 점령하기 이전 단계에 축조된 성곽을 신라군이 개수하거나 혹은 개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성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리라는 점을 상정하게 한다.

강원도지역에는 춘천의 삼악산성·산천리성, 횡성군의 덕고산성, 철원의 토성리토성, 양구의 비봉산성, 강릉의 예국토성·장안성, 삼척의 갈야산고성 등 신라가 점령하기 전에 축조된 성들이 있고 그 외에 축성 연대를 알 수 없는 성들이 많이 있다. 자비왕 11년(468) 봄에 고구려와 말갈이 실직성을 침습하였다고 하고, 9월에 하슬라인 15세 이상을 정발하여 니하에 성을 쌓았다고 하며, 지증왕 5년(504)에 파리(삼척)·미실(홍해) 등에 12성을 쌓았다고 전하는 사실에 주목하면67) 강원도지역에도 신라가 많은 성곽을 축조하였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예가 축성한 기존의 성곽을 이용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창녕비〉에 나오는 碑利城으로, 이 성은〈廣開土王陵碑〉에도 보이는 바 동예가 축성한 성을 신라가 이용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라군은 북진을 계속하여 함경도지역에도 성곽을 축조하였다. 함경남도 홍원의 성령산성, 함주의 오로리산성, 정평의 봉대산성, 북청의 다탄대산성, 이원의 율지산성 등이 그것이다.68)

경기도지역에 신라가 축성한 성곽은 여주의 신지리성, 하남의 이성산성, 광주의 남한산성, 안성의 금산산성 등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이들 성곽외에도 백제가 축조한 성곽이 많이 있고, 고구려가 축조한 성곽도 있다. 이들 성곽은 대부분 신라에 점령된 후에 신라군에 의하여 이용되었다.⁶⁹⁾

성곽시설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초기단계에는

⁶⁶⁾ 車勇杰, 〈竹嶺路와 ユ 부근 嶺路沿邊의 古城址 調査研究〉(《國史館論叢》16, 1991), 302~312쪽.

^{67)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자비마립간 11년·권 4, 新羅本紀 4, 지증마립간 5년.

⁶⁸⁾ 朴方龍, 앞의 글, 370~372쪽.

^{69)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진평왕 25년·선덕왕 7년 및 11년·태종무열왕 8년.

토성 또는 목책성이 축조되었다. 주로 하천을 낀 낮은 구릉지에 소규모 축성이 이루어졌으며, 성벽 속에 잡석을 넣어 다지는 石心土築한 토성이 많다. 석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5세기 후반 이후이며,700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에는 외벽 기단 보축이 행해지고,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기단외면 보축이 행해졌다.710 7세기경부터 해발 400m 이상의 고지에 산성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대체로 고지에 입지한 이 시기 성곽의 규모는 성벽 길이 2km 이상인 대규모 성곽이 주류를 이루었다.

성곽은 주요 교통로에서 가까우며 사방을 관망할 수 있는 험준한 지형을 택하여 최소한의 工力으로 守城과 攻城에 유리하도록 축성하였다. 경사도가 심한 낭떠러지가 있는 곳은 처음부터 축성하지 않았으며, 큰 바위가 있는 곳 은 바위 옆과 위로 성돌을 쌓아 그대로 성벽이 되게 하여 자연을 최대한 이 용하였다.⁷²⁾

신라의 성곽은 대부분 전투용 방어시설이었으며, 전쟁시에 인근 주민들이 모여 적에 항쟁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다.⁷³⁾ 신라 초기에 지방의 주요 성곽에 는 성주가 이끄는 戍卒이 주둔하였다.⁷⁴⁾ 6세기 초반 이후에 변경과 內地의 수많은 성곽을 지킨 병력은 法幢에 편성된 농민군사들이었다. 6정과 10정은 주요 전략지점에 배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신라정부는 지방의 성곽에 지방관 을 겸한 법당군관을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농민들로 법당을 편성하고, 이들 이 적과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6정·10정 등의 병력을 출동시켜 적을 격퇴 하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⁷⁵⁾

〈李仁哲〉

⁷⁰⁾ 朴方龍, 앞의 글, 387쪽

⁷¹⁾ 朴鍾益,〈古代山城의 築造技法에 대한 研究〉(《嶺南考古學》15, 1994), 115~168等. 高正龍,〈韓國古代山城〉(《古代文化》47-12, 1995), 715~716等.

⁷²⁾ 朴方龍, 앞의 글, 388쪽.

⁷³⁾ 李宇泰, 앞의 글, 88쪽.

⁷⁴⁾ 浜田耕策、〈新羅の城村設置と州郡制の施行〉(《朝鮮學報》84, 1977), 8~9쪽.

^{75)《}三國史記》 권 47, 列傳 7, 奚論 및 訥催.

3. 경 제

1) 농 업

(1)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보급

삼국시대 신라의 주요한 경제기반은 농업이었다. 농업은 신라인들의 기본 적인 생산활동이었고, 상업과 수공업 등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농업에서의 생산증대, 즉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당시 사회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신라 초기에는 청동기시대 이래 농업 생산기술의 전통 위에다 철제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업생산이 이루어졌다. 청동기 시대인들은 목제의 따비와 괭이를 기초로 농사를 지었다. 1970년 대전 괴정동에서 발견된 이른바「농경문청동기」에는 한 사람이 목제로 보이는 따비를 가지고 규칙적인 고랑과 이랑이 있는 네모진 밭을 가는 모습과 다른 한 사람이 목제 괭이로 땅을 파는모습이 보인다. 여기서 사용된 따비는 따비날 부분이 상당히 길어 목제 자루의 약 2분의 1 정도이며, 날 부분은 두 갈래로 갈라진 형태를 하고 있다. 이따비는 횡목에 발힘을 가하여 따비날 부분을 흙속에 넣은 다음에 자루를 지렛대를 움직이듯이 움직여 뒤로 후퇴하면서 밭을 가는 데 사용된 것이었다. 그리고 괭이는 갈이작업 이후 땅을 공그르는 작업에 이용되었다. 이외에도 괭이는 파종 후 培土작업ㆍ제초작업에도 쓰였고,1〉 또 根菜植物을 수확할 때도 사용되었다. 여기다가 당시는 곡물의 이삭 하나하나를 따는 수확도구로서반월형석도가 널리 사용되어졌다. 신라 초기에 이르면 이러한 농기구들은 철제로 대체된다.2〉

¹⁾ 괭이는 묘 사이를 긁어 줌으로써 뿌리의 호흡을 촉진시켜 생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²⁾ 최근 경상남도 창원시 다호리 1호분에서 두 종류의 따비가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폭이 좁고 길며 단면이 삼각형을 이룬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폭이 좀더 넓고 짧은 것이다. 그리고 모두 목제 자루가 끼워져 있으며, 자루와 날은 140도 각도

그러나 신라 초기에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목제나 석제 농기구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더구나 목제나 석제 농기 구는 물론이거니와 철제로 만들어진 당시의 농기구들 역시 효율성이 매우 낮았다. 때문에 파종시기나 수확시기 등 농사철을 제때에 맞추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집단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사람들의 사회생활도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3)

4세기 이후 철기 제작기술의 발달에 따라 철제 농기구의 개량이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급도 확대되었다.4) 이 때 갈이작업에 주로 이용되었던 농구가 U字形 따비였다. 이것은 대부분 길이 약 15~20cm 내외, 너비 역시 15~20cm의 크기로서 삽이나 가래의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괭이형의 착장구에 연결시켜서 괭이와 같은 용도로 쓰이기도 하면서 주된 용도는 땅을 일구는 것이었다.5)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추정해 본다면, 손잡이와 더불어 밭을 갈 때 발로 힘을 주어 누를 수 있는 횡목을 가로 끼워 만든 자루의 끝에 U자형 따비날을 부착하는 형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로 끼운 손잡이를 옆으로 돌린 다음, 뒤로 후퇴하면서 흙을 떠 엎는 형태로 땅을 일구었을 것이다. 이 U자형따비가 갈이작업에 이용되면서 날이 좁고 긴 따비 종류보다 더 많은 양의흙을 떠 엎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에 따라서 갈이작업의 효율성도 배가되었다. 이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철제 괭이와 쇠스랑의 보급도 확대되었다.

한편 이 시기 수확도구상에서의 커다란 변화는 낫의 보급에서 찾을 수 있

로 휘어진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李健茂 외,〈義昌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考古學誌》1,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89, 22쪽). 그런데 앞의 것은 두 갈래로 갈라진 부분만을 제외하면, 농경문청동기에 보이는 따비와 유사하다. 비슷한 모 습의 따비가 삼국 초기의 무덤인 경주 조양동 고분이나 울산 하대 고분군 등에 서도 출토되었다. 이외에 신라 초기에 철제 괭이와 鐵刀子도 제작되었다.

^{3) 《}三國志》권 30, 魏書 30, 東夷傳의 기록에서 3세기 단계 사람들의 사회생활 모습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형태를 띠었던 것은 이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4) 4}세기 초부터 주조와 단조방법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硬性 ·展性을 지녀 충격에 강하고 날 부분이 예리한 농구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최근에 발견된 경주시 황성동 제철 유적은 製鐵-鑄造-製鋼-鍛冶의 일괄공정을 갖추어서철제 도구들을 대량으로 생산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⁵⁾ 金光彦,〈新羅時代의 農器具〉(《民族과 文化》1, 正音社, 1988), 50~53\.

다. 압록강 중류, 두만강 유역 등의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지에서는 철도자와 낫이 공반 출토되고, 茶戶里 고분 등에서도 그것이 출토된 바 있다. 그러나 삼국 초기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낫은 매우 소수였다. 그러다가 4세기 초 이후 낫은 한반도 전역의 유적에서 고르게 출토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경상도지역의 경우 4세기 초 이후에는 수확도구 가운데 낫이 지배적인위치를 차지하였다.6)

더욱이 이 때에 이르면 낫의 종류도 날이 곧게 뻗은 것과 약간 곡선을 이룬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 전자는 날과 나무자루가 직각으로 연결되어져서 주로 곡식을 수확하는 데만 이용할 수 있었고, 후자는 날 부분 전체가 곡선을 이루거나 뽀족한 날 끝 부분만이 안으로 약간 구부러진 형태로서 수확뿐만 아니라 초목을 벨 때에도 사용되었다. 특히 후자와 같은 종류는 곡물이미끄러지지도 않고, 또 구부러진 부분에 힘이 집중되어 쉽게 절단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날 끝 부분이 뾰족하고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다른 한 손이부상당할 염려가 없었으며 작업시 곡물 사이로 잘 헤치고 들어가 작업능률을 높여 주었다.

반달칼이나 철도자는 곡물의 이삭 하나하나를 자르는 도구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의 수확이 불가능하여 수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수확에 많은 시간이 걸리면 자칫 때를 놓쳐 이삭이 땅에 떨어지고, 또 완전히 익기도 전에 수확하게 되면 결국은 곡물 건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그 기간에 부패되기 쉬워서 이전에 아무리 작황이 좋았다 하더라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낫은 한꺼번에 여러 포기를, 그것도 그루터기를 뿌리째 베어낼 수 있으므로 많은 양의 수확이 가능하여 수확기에 상당한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손실을 크게 줄여 주었다. 게다가 짚의 수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축의 사료나 연료・퇴비 및 농민의 각종 수공업 재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4세기 이후 U자형 따비(갈이작업), 괭이와 쇠스랑(整地作業과 中耕除草作業),

⁶⁾ 李賢惠, 〈三國時代의 농업기술과 사회발전-4~5세기 新羅社會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8, 1991), 54쪽.

낫(수확작업)의 보급에 따라 농업생산기술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U자형 따비역시 인력을 이용하여 갈이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牛耕은 인력 대신 축력을 갈이작업에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의미있는 농업기술상의 발전이었다.

신라에서는 智證王 3년(502)에 처음으로 우경을 이용하였다고 한다.7)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우경의 시작을 알려 준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우경을 장려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로 '犁耜를 제작하였다'라는 기록이《三國遺事》紀異篇 弩禮王條에 보이고 있다. 그리고 5세기 중엽에서 6세기중엽 사이의 고구려 군사요충지였던 서울 구의동에서도 V자형의 홈이 파져있는 보습 4점이 발견되었고,8)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진주 옥봉 7호분에서도 너비 27cm의 보습이 출토되었다.

U자형 따비의 형태에서 간단하게 사람이 끌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켜 쟁기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때문에 우경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는 사람이 쟁기를 끄는 人力耕이 갈이작업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우경이보급된 이후에도 소와 쇠보습을 모두 갖출 수 없었던 농민들도 그러하였다고 보인다. 6세기 중·후반 시기 인력경의 실시를 시사해 주는 자료가 바로 강원도 안변군 용성리 신라계 횡혈식 석실분에서 발견된 보습이다. 이것은 길이 약 24cm, 폭 10cm 정도의 소형으로서 우경보다는 인력경에 쓰였다고보이기 때문이다.9)

우경의 이용은 농업생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한 사람이 따비나 인력경으로 밭을 갈 때보다 우경을 행할 때 훨씬 더 넓은 면적의 밭을 가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우경은 개간을 촉진시켰다. 잡초의 뿌리가 깊고 조밀한 상태에서는 따비 종류나 괭이만으로 하는 갈이작업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축력을 이용한 우경으로 그 이전 갈이작업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개간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한편 축력을 이용하

^{7)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지증왕 3년 3월.

崔鍾澤, 〈九宜洞遺蹟出土 鐵器에 대하여〉(《서울大博物館年報》3, 서울大, 1991), 28쪽.

⁹⁾ 金光彦, 앞의 글, 48쪽.

여 갈이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이제 深耕이 가능해졌다. 심경은 잡초와 병충해 제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우경의 도입은 경지 이용방식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최근에 발견된 하남시 미사리 경작유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제1·제2의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다. 제1경작유구는 고랑과 이랑 사이의 폭이 70~80cm 정도로 일정한 편이며, 고랑의 방향은 동서방향이고, 현재 확인된 전체 면적은 1,500여 평에 이른다. 그리고 고랑의 바닥에 30cm 폭으로 작물을심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에 반해 그 윗층에서 발견된 제2경작유구는 고랑과 이랑을 합한 폭이 약 100cm 가량이고, 그 길이가 약 160m 정도이며, 밭의 총면적은 약 3,000평 정도이다.100

이 경작유구는 오늘날의 밭과 마찬가지로 고랑과 이랑을 약 50cm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160m에 이르는 고랑과 이랑을 50cm 간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경의 사용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그보다 하층의 제1경작유구는 비교적 넓은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또 고랑 바닥에 30cm 간격으로 작물을 심었던 것으로 보아 우경이실시되기 이전 경지 이용방식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짐작된다. 발굴보고자는 각각의 경작유구층에서 발견되는 토기와 유물을 통해 제1경작유구를 4~5세기 단계의 유적으로, 제2경작유구는 그보다 늦은 6세기를 전후한 무렵의 유적으로 편년하였다.

제1경작유구에서 제2경작유구로의 변화는 파종처의 확대를 의미할 뿐만아니라 농법의 발달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국시대에 넓은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경작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이랑과 고랑을 번갈아 가면서 작물을 파종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것이다.11) 이러한 중국의 경우를 참조해 볼 때, 미사리 제1경작유구는 이랑과 고랑을 번갈아 가면서 작물을 파종하였던 단계의 유적으로 여겨진다. 반면 제2경작유구는 전단계보다 고랑과이랑의 간격을 줄임으로써 토지이용을 극대화시켰던 단계의 유적이었을 것

¹⁰⁾ 崔鍾澤,〈美沙里遺蹟發掘調査〉(《서울大博物館年報》4, 1992), 40쪽.

¹¹⁾ 崔德卿,《中國古代 鐵製農具와 農業生産力의 발달》(建國大 博士學位論文, 1991), 180~192等.

이다. 매년 폭이 좁은 고랑과 이랑을 번갈아서 이용하였다면 常耕도 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경이 가능해지면서 지력의 회복기간이 단축된 데 힘입은 결과였다.¹²⁾

한편 우경의 보급은 家戶 단위의 자립적인 농업생산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私的 소유권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그 들의 계층분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수전의 확대

水田의 입지조건은 배수와 관개시설의 축조, 그리고 토목기술의 수준 정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비교적 철기의 보급이 미약하였던 삼국 초기에는 급수가 용이한 저습지에 수전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4세기 초 이후 철제 토목공구와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면서 수전도 점차 저습지에서 半濕田・半乾田・乾田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삽과 가래 등의 보급은 비교적 규모가 큰 저수지나 제방의 축조를 가능케 만들면서 그러한 현상을 촉진시켰다.

먼저 訖解尼師今 21년(330)에 둑의 길이가 1,800步인 碧骨堤를 개축하였다고 전한다.13) 오늘날 벽골지가 전라북도 김제지역에 소재하기 때문에 위의사실을 백제와 연관시키기도 하나,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벽골지의 정확한위치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많다. 한편《삼국유사》에서는 '벽골지의둘레가 17,026步이고 □□가 166보, 수전이 14,070(結)'이라 기술하였다. 이 표현은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의 사정을 전한 것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하여튼 벽골지의 축조에 의해 상당한 양의 수전이 확보되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눌지마립간 13년(429)에는 둑의 길이가 2.170보인 矢堤를 축조하였

¹²⁾ 중국의 경우 전국시대에 6尺의 이랑, 6尺의 고랑을 만들어 이랑 위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고, 이후 점차 이랑 위의 파종면적을 늘려 경지이용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랑을 3尺, 1尺으로 축소시켜 나가다가 우경이 도입되면서 1척의 이랑, 1척의 고랑으로 田地內의 파종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는 우경의 도입으로 深耕이 가능해져 지력의 회복기간이단축된 덕분이었다고 한다(崔德卿, 위의 글, 155~208쪽).

^{13) 《}三國史記》 권 2, 新羅本紀 2, 흘해니사금 21년.

고,14) 법흥왕 18년(531)에는 왕이 有司에게 堤防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15) 일반적으로 제방이나 저수지는 水害와 旱害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일뿐만 아니라 반건전이나 건전지역까지 수전을 확대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永川 菁堤의 경우는 산곡간의 溪流를 한꺼번에 막아 그 계곡 아래에 펼쳐진 완만한 경작지에 안정적으로 급수하는 저수지가 당시에 많이 축조되었음을 알려 주는 사례의 하나다.

早田에 그대로 볍씨를 뿌릴 때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해를 만나게 되면 곧 벼가 말라 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반면에 水耕直播를 한다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해를 만난다 해도 쉽게 말라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전의 개간은 단위면적당의 수확량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게다가 수리관개시설의 확대는 토지의 이용을 증대시켰다. 즉 필요에 따라서 같은 땅에 수전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한전농사도 짓는「水陸兼種」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수전이 확대되면서 6세기 이후에는 벼의 재배가 크게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

(3) 맥류 재배의 확산

한반도 지역에서 일찍부터 五穀이나 벼가 재배되었음은 고대의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콩이나 조 등의 발작물은 보리나 벼에 비해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작기술이 그리 높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널리 재배되었다.

이들과는 달리 보리를 비롯한 麥類는 삼국 초기 이전에 널리 재배되지 않은 것 같다.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유적에서 벼나 콩류, 기장·조등에 비해 보리나 밀의 발견 예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 초기 이후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이에 따른 농업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맥류, 특히 보리의 재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통하여확인할 수 있다.

^{14)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마립간 13년.

^{15)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8년 3월.

〈표 1〉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작물현황(지증왕대 이전)

연 도	봄 • 여름	연 도	가 을
祗摩 3	春3月 雨雹麥苗傷	婆娑 30	秋7月 蝗害穀
奈解 27	夏4月 雹傷菽麥	祗摩 11	秋7月 飛蝗害穀
訥祗 41	夏4月 隕霜傷麥	逸聖 6	秋7月 隕霜殺穀
		阿達羅 8	秋7月 蝗害穀
婆娑 5	夏5月 南新縣麥連歧	阿達羅 17	秋7月 霜雹害穀
		奈解 10	秋7月 霜雹殺穀
		助賁 8	秋8月 蝗害穀
		味鄒 11	秋7月 霜雹害穀
		奈勿 34	秋7月 蝗穀不登
		實聖 5	秋7月 國西蝗害穀
		訥祗 4	秋7月 隕霜殺穀
		訥祗 15	秋7月 霜雹殺穀
		訥祗 38	秋7月 霜雹害穀

위의 〈표 1〉에서 가을에 피해를 입은 곡식을 단지「穀」이라고만 표현하였는데, 그것이 벼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곡물 일반을 지칭하는 것인지 앞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봄과 여름에 피해를 입은 곡식은 콩과보리이다. 보리는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에도 잘 견디므로 봄가뭄이 심한 우리 나라 기후조건에 적합한 작물이며, 무엇보다 성장기간이 짧고 쌀·조 등의 추곡이 바닥나는 6월경에 수확할 수 있어 농민들의 식량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맥류의 재배가 확산되면서 신라 초기부터 보리는 쌀과 함께 당시 신라인의 주식의 하나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2) 수공업

철기는 청동기와 달리 원료의 채취가 쉽고, 대량 생산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므로 무기뿐만 아니라 토목공구·농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 그런데 철기의 제작과 사용은 철광석의 채취·제련·제작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숙련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採鑛과 철기제작에 종사하는 전문적 匠人

集團을 전제로 한다. 초기에는 우수한 제철기술을 보유한 야장이 정치적 지배자로 부상하기도 하였다.16) 그러나 어느 단계부터 정치적 지배자가 정치력을 강화하면서 철기만을 제작하는 전업적인 장인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들은 사로국이나 각 소국 수장층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 아래 철기류를 생산하였고, 그 대가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최근 발견된 경주시 황성동 제철 유적은 4세기 단계에 製鐵一鑄造一製鋼一鍛冶의 일괄 공정을 갖춘 제철공방을 중심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17)

한편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금·은·동 등이 생산되었고, 가공기술도 매우 발전하여, 고대 일본인들은 신라를 「金銀의 나라」로 일컫기도 하였다.18) 일 반적으로 금·은·동의 원료는 산지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또 원료의 채취에서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장인 내지 장인집단이 필요하고, 그 집단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일관되게 움직이는 생산조직과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세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금은세공품을 가공할 수 있는 세력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금은의 사용을 禁한다'라는 기록이19) 말해 주듯이 신라는 귀금속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생산체계를 통제하였다. 철제품과는 달리 금으로만든 귀중품은 경주지역 이외의 신라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경상도지역에서는 그 발견 예가 드문 것은20) 이와 관련이 있다. 물론 각 소국마다 金銅製品을 생산하는 체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5세기 초·중엽 이전 시기에 일부 소국에서는 出字形 立飾이 아닌 독특한 형식의 금동관을 제작하였던 사실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21) 이후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발견된 금

^{16) 《}三國遺事》권 1, 紀異 2의 昔脫解 관련 설화에 석탈해 자신이 야장임을 밝힌 내용이 보인다.

¹⁷⁾ 李榮勳, 〈경주 황성동 철기제작유구〉(《第34回 全國歷史學大會發表要旨》, 1991), 372~379쪽.

^{18) 《}日本書紀》 권 9, 神功王后 攝政前紀(中哀天皇 9년 10월).

^{19)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일성니사금 11년.

²⁰⁾ 금제 귀걸이가 대구 내당동과 비산동 고분군, 양산 부부총, 동래 복천동 고분군 등에서 발견되었고, 또 양산 부부총에서는 금제 팔찌가 발견된 바 있다. 이외에 낙동강 동안지역의 경상도지역 고분들에서 발견되는 장식품들은 은이나 금동제가 대부분이며, 그 품질도 경주지역의 것에 비해 저열하다.

²¹⁾ 이러한 형식의 金銅冠은 5세기 초·중엽 이전에 축조된 의성 탑리 고분, 동래 복천동 11호분에서 출토되었고, 성주지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동관이 출자형입식으로 획일화된 현상은²²⁾ 그러한 제품들의 생산체제가 신라세력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사정을 반영한다.²³⁾ 장신구를 비롯하여 금은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의 대부분은 신라가 직접 제작하여 각 소국의 수장 층과 지배층에게 사여한 것이었다고 보인다.²⁴⁾

5세기 이후 신라의 지방 소국 수공업 생산체계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를보여 주는 또 다른 유물이 바로 토기이다. 토기는 일상적인 용구이기 때문에신석기시대 이래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아무나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다가 2~3세기경 정치권력이 일찍 확립되는 곳에서부터 전업적 토기 생산체계가 갖추어져 陶質土器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거기로부터토기 제작기술과 양식이 주변지역으로 서서히 전파되는 양상이 보인다.25) 4세기 말 이후에 낙동강 동안지역(신라식 토기:성주 포함)과 낙동강 서안지역(가야식 토기)으로 토기의 양식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양상은 신라와 가야의정치적 영향력이 주변으로 확대되는 과정과 관련이 깊다. 이 때 신라 영향권아래에 있었던 각 소국들은 신라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각각 도질토기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삼실과 명주실을 섞어 짠 縑布(거친 비단)가 생산되었다. 天馬塚(황남동 155호 고분)에서 나온 섬유질은 대부분 平織과 1/2綾織이고, 浸染에 의한 염색법과 夾纈에 의한 捺染法을 사용한 것으로서 5세기단계의 직조 및 염색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려 준다.26) 이섬유질은 전업적인 수공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급 비단으로 추정된다.

신라 초기의 수공업체계는 6세기 무렵 각 소국의 해체와 그에 이은 중앙집

²²⁾ 出字形 立飾의 金銅冠은 동래 복천동 1호분, 창녕 교동 7호분, 경산 임당동 7호분, 대구 비산동 37호분, 양산 부부총에서 출토되었고, 선산지방에서도 그것이 수습된 바 있었다.

²³⁾ 全徳在,〈新羅 州郡制 成立背景研究〉(《韓國史論》22, 서울大, 1990), 43~45쪽.

²⁴⁾ 李漢詳,〈5~6세기 新羅의 邊境支配方式-裝身具 分析을 중심으로-〉(《韓國史 論》33, 서울大, 1995), 46~52쪽.

²⁵⁾ 李盛周,〈原三國時代 土器의 類型・系譜・編年・生産體制〉(《韓國古代史論叢》 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1), 294等.

²⁶⁾ 金相溶、<遺物을 통하여 본 古代 織物技術-경주 황남동 155號 고분 출토 섬유 물의 분석고찰->(《직물검사》2-2, 1974), 3~4쪽.

권적인 국가체제의 정비와 더불어 새롭게 재편되었다. 中古期에 국왕이나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궁중 자체에서 생산하는 궁중수공업과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관영수공업으로 수공업체계가 분화·정비되었는데,27) 이 가운데 궁중수공업의 정비는 內省의 설치와 밀접한 관계를 지녔다. 眞平王 44년(622)에 金龍春을 內省私臣에 임명하고, 大宮・梁宮・沙梁宮을 관장하도록 하였다.28) 진평왕 7년부터 3궁에 각각 私臣을 두어 관장케 한 바 있는데, 내성사신의 설치는 3궁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의도의 반영이다. 아마도 이 때 궁중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수공업 계통의 관청들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을 것이다. 내성 관하에는 106개의 관청들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수공업과 관련된 관청은 약 30여 개이다. 직관지에 전하는 내성 관하의 수공업 관청들과 그 업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내성 관하 수공업 관청 가운데어느 것이 중고기에 설치된 것인지를 가려내기는 어렵다.일단 여기서는 《삼국사기》 직관지의 내성 관하의 관청 가운데 수공업 관청을 모두 망라하였다.

직관지에는 내성 관하 수공업 관청의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각 관청의 직능을 통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추론해볼 때일부 제품의 경우는 분업화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물류의 생산과 관련하여 누에고치에서 실을 켜는 일을 담당한 跣典, 精練한 후에 표백을 맡은 漂典, 염색을 담당한 染宮과 紅典, 직조 후 印染을 맡았던 攢染典, 직접 織品을 만드는 錦典과 朝霞房・綺典 등 원료의 채취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생산공정을 갖추었음을 살필수 있다. 가죽제품의 생산에서도 皮典—打典—靺典—皮打典—鞧典・靴典 등서로 연관되는 분업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29) 이외에 다른 제품의경우에는 일련의 생산공정을 추론할 수 있는 분업체계는 보이지 않는데, 이

²⁷⁾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지양사, 1988)에서 는 신라의 관청수공업 내에 궁정수공업이 포함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朴南守, 〈宮中手工業의 成立과 整備〉(《東國史學》26, 東國大, 1992)에서는 궁중수공업을 관영수공업과 구별되는 국왕 직속 內省 산하의 수공업 경영형태로 이해하였다.

^{28)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44년 2월.

²⁹⁾ 朴南守, 《新羅手工業史》(신서원, 1996), 109~112쪽.

러한 경우에는 貢賦의 형태로서 보완하였다고 추정된다. 궁중수공업은 신라 수공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국왕을 비롯한 왕실 과 일부 진골귀족들의 사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었 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전반의 수공업 발전 수준과 괴리를 보이기도 하였다.

〈표 2〉 궁중수공업 관청

T	字 廳	名	改		名	職能
朝	霞	房				朝霞紬(고급비단) 생산
染		宮				염색작업과 염료제조
疏		典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일
紅		典				붉은 염색물 취급
蘇	芳	典				蘇木을 길러 붉은 물감을 채취하는 일
攢	染	典				옷을 염색하는 일
漂		典				표백 담당
倭		典				일본과의 무역에 필요한 수공업품 제조
錦		典	織	錦	房	고급비단 생산
鐵	鍮	典	築	冶	房	각종 철기와 유기의 생산
漆		典	飾	器	房	각종 그릇의 옻칠 담당
毛		典	聚	耄	房	모직물 제작
皮		典	鞄	人	房	가죽제품 생산
鞦		典				마구에 쓰이는 가죽제품 생산
皮	打	典	華	工	房	각종 가죽 북 제조
后		典	梓	人	房	각종 목공품 제조
鞜		典				가죽신 제조
靴		典				가죽장화 제조
打						가죽제품의 무두질 관계
麻	履	典				각종 미투리(삼신) 제작
麻		典	織	房	局	각종 의복 제조와 천 짜기
曝		典				각종 제품을 햇볕에 말리는 일
阿	尼	典				
綺		典	別	錦	房	고급비단 생산
席		典	奉	座	局	돗자리를 비롯한 자리 제조
机	概	典	机	盤	局	밥상, 책상, 탁상 등 제조
楊		典	司	篚	局	각종 광주리 제조
瓦	器	典	陶	登	局	각종 도기와 벽돌, 기와 등 제조
南	下戶		雜	工	司	각종 특수한 수공업품 제조
針		房				의복과 자수품 제조

한편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관영수공업은 국가조직의 분화가 미숙한 단계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세기이후 신라가 중앙과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면서 각 행정조직에 필요한 수공업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영수공업이 궁중수공업 체계와는 다른 체계로서 분리되었던 것이다.

수공업 관계 행정부서로서 대표적인 것이 工匠府이다. 신문왕대에 공장부의 장관과 차관급인 습과 卿이 두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급 실무관리인 主書는 眞德王 5년(651)에 설치되었으므로 중고기에 이미 관영수공업을 관장하는 조직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병장기와 선박의 제조를 담당하던 兵部, 선박제조 등을 관리하던 船府, 국왕의 의장용 수례와 말을 관리하고 수례의 제작과 마구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관청을 관리하던 乘府, 수도 경주의 성을 축조하거나 수리를 책임지던 六部少監典 등이 수공업과 관련된 관청들이다.

관영수공업은 크게 보아 관청이 직접 관리하는 수공업공장에서 그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장인들에게 貢賦의 형태로 바치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고 추정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수공업자들의 집단거주지로서 成의 명칭을 지닌 지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검을제작하던 寶劍成, 금을 생산하던 麗金成, 비단을 생산하던 進錦成과 濯金成등이 대표적인 곳이다.30) 수공업자의 집단거주지는 신라가 각 지방 소국을 베나 郡・村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각 소국의 일부 장인들을 집단적으로거주케 한 것에서 기원하지 않았나 한다. 물론 삼국통일 이후에도 백제나 고구려계통의 장인들을 그와 같은 곳에 거주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이 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신분은 6두품인 强首와 釜谷(가맛골)에사는 冶匠의 딸이 결혼한 것에서 보듯이 천민이 아니라 양인신분이었다.31)이들 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받았을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관청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³⁰⁾ 홍희유, 앞의 책, 7~10쪽.

³¹⁾ 폐쇄적인 신분제사회인 신라시대에 야장의 자식과 6두품 신분이 결혼하였다는 것은 야장이 천민이 아닌 양인신분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들 지역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중고기에는 민간수공업도 분화되고 발전하였다. 우선 이 때 지방사회에서 전업적으로 수공업에 종사한 장인으로서 匠尺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외위를 수여받은 지방사회의 지배층이었다. 초기에 각 소국 수장층의 보호와 관리를 받던 이들은 6세기 이후에 각 촌에서 필요한 철제품이나 각종수공업제품들을 자립적으로 생산한 다음 그것을 판매하여 상당한 경제적 富를 축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장착층이 지방사회에서 이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국가는 그들에게 외위를 수여하고 지방사회의 지배자로서 인정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32) 국가는 대신 이들에게 부역의 의무를부과시켰다. 그 의무로는 南山新城의 축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정 기간 축성이나 중요한 건축물 조성 등의 요역에 동원되는 경우, 관영수공업 공장에일정 기간 노역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만든 수공업 제품을 대신 바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33) 이 당시 지방사회에서는 장착 이외에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존재하였는데, 비문에 보이는 雜工・工人・面石捉人・小石捉人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도 장착과마찬가지로 외위를 수여받았다.

그리고 일부는 귀족 개인들의 수공업공장에서 일하였다. 중대에 황룡사의 종을 만든 사람이「里上宅下典」이었는데,34) 여기서 이상택하전은 33金入宅 가운데 하나인 里上宅에 예속된 장인을 말한다. 당시 재상가에는 奴僮이 3천 명이 있었고, 甲兵과 牛・馬・猪도 그와 비슷한 숫자가 있었던 것에서 보듯이35) 유력귀족들은 독자적인 수공업 공장을 차리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무기들을 생산하였다. 후대의 경우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 중고기의 귀족들도 그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라시대에 가내수공업으로 생산된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조물

³²⁾ 全德在, 앞의 글, 30~33쪽.

³³⁾ 일본 고대국가의 율령 조항에 백성들에게 賦稅로서 철제품을 바치게 한 규정이 있다(原島禮二,〈8世紀における鐵の生産と流通〉,《日本古代社會の基本構造》, 未來社, 1968, 390~397쪽).

^{34)《}三國遺事》 권 3, 塔像 4, 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德寺鐘.

^{35) 《}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이었다.《梁書》에는 신라에 '뽕나무와 삼나무가 많았으며, 縑布(거친 비단)를 짰다'라는 내용이 전한다.36) 그리고 신라 초기에 6부 여자들이 길쌈경기를 하기도 하였다.37) 麻布는 백성들의 일상적인 옷감이었던 만큼 그들은 이것을 주로 자급자족적인 가내수공업으로 조달하였다. 그리고 마포는 초기부터 국가의 과세대상이기도 하였다. 당시 직조에 쓰인 방직기구는 고구려 쌍영총고분벽화「직녀도」에서 보듯이 베틀의 구조와 바디・북・잉아 모양들이 조선시대에 흔히 쓰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38)

3) 상 업

삼한에서는 중국의 郡縣·倭 등과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三國志》에 의하면, 변한지역에서 생산된 철은 韓·濊·倭뿐만 아니라 중국 군현에 공급되었고, 이 때 그것은 교환수단으로서 돈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한다.39) 당시에 삼한 각 소국 간에도 교역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당시 교역의 성격을 잘 보여 주는 유물이 실물화폐의 용도로서 사용된 鐵 鋌이다. 철정이 발견된 고분들은 크기나 규모, 부장유물의 성격 등으로 보아 각 지역의 수장층이나 최고 지배층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40) 이와 같은 고 고학적 증거는 당시 철정이 수장층과 일부 지배계층에게만 집중되었던 사실 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각 소국이나 읍락의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반영한다.

그리고 3세기 단계에서 고구려가 漢 郡縣과의 경계지점에「幘溝漊」를 설치하여 중국과의 대외적인 교섭과 교역을 일원화하였다거나41) 倭의 女王國(邪馬臺國)이 여러 소국에 관리를 파견하여서 교역을 감시하도록 하였던 예에

^{36) 《}梁書》 권 54, 列傳 48, 諸夷 東夷 新羅.

^{37) 《}三國史記》 권 1, 新羅本紀 1, 유리니사금 9년.

³⁸⁾ 홍희유, 앞의 책, 13쪽.

^{39)《}三國志》 권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弁辰.

⁴⁰⁾ 林孝澤,〈副葬鐵鋌考〉(《東義史學》2, 東義大, 1986), 3쪽.

⁴¹⁾ 幘溝漊는 고구려 중앙정부에서만 中國 郡縣과의 대외교섭을 가질 수 있도록, 즉 대외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도군과의 경계지점에 설치한 교역지 점을 말한다.

서42) 보듯이 당시 사로국도 통상적인 교역루트를 장악하여 각 소국 사이의 교역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하였다. 사로국이 일찍부터 낙동강 하류 수로교통의 요지인 양산의 黃山津을 장악하고 경상도 내륙지방과 백제·고구려를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계립령과 죽령을 개통하여 그 곳을 통제하고,43) 주요 교통로나 변방지역에 성을 쌓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 때 사로국은 교통의 요지에 관리를 파견하여 소국 자체뿐만 아니라 각 소국과 소국 사이의 교역까지도 감시케 하였는데, 양산지역에는 5세기 전반에 朴堤上을, 그 전에 대구지역에 위치한 達伐城에는 城主로서 克宗을 파견한 바 있었다.44)

그러나 신라 초기에 각 소국이나 읍락 사이의 교역이 활발하였던 것에 반하여 각 소국이나 읍락집단 내부의 교역은 미미하였던 것 같다. 이 당시 각소국은 國邑과 邑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읍락에는 공동체적인 관계의 유제가 강고하게 잔존하여 국읍의 主帥가 읍락에 雜居할 만큼 수장층의 정치적 지배력은 여전히 미약한 형편이었다. 동예에서는 타읍락집단과의 어떠한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강고한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관계의 유제가 온존된 사회에서는 그들 내부 성원 사이의 교역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일상 생활용품들은 자급자족적인 형태로 조달되었기 때문이다. 읍락 내부에서 교역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사회분화가 좀더진전되어 그 내부의 계층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신라 초기의 상업은 6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그 양상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의 계기는 4~6세기에 걸친 농업생산력의 발달이었다. 이것은 각 소국이나 읍락집단들을 신라의 州나 郡・村으로 재편하는 動因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에 성행하던 각 소국 사이의 교역체계는 와해 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농업생산성의 증대는 교환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다.《삼국사기》에서는 炤知麻立干 12년(490)에 신라가 처음으로 시장을 개설하였다고 전한

^{42)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倭.

^{43)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에 보면 阿達羅尼師今 3년과 5년에 각각 鷄立嶺路와 竹嶺을 열었다고 한다.

⁴⁴⁾ 全德在, 앞의 글, 13~15쪽.

다.45) 이어서 지증왕 10년(509)에도 경주에 東市가 개설되고, 아울러 그것을 관리하는 市典이 설치되었다.46) 경주는 각 지방에서 바치는 조세와 공물이 집중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으므로 그만큼 교역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이처럼 6세기 이후 교환경제가 발달하면서 교환수단으로서 철정 대신 布가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47) 포는 이른바「男耕女織」을 하는 일반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품목으로 곡물과 함께 국가 조세품목의 하나였다. 따라서 포가 교환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교환경제 체제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모두 부녀자들이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新唐書》의 기록은48) 통일신라시대에 부녀자들이 거래를 행하던 소규모 시장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자료이다. 위의 기록이 통일기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시장들은 중고기 이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상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 일반 백성들의 교환행위는 고리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본래 고리대는 빈농들에게 사원이나 귀족, 또는 부호농민들이 높은 이자로 곡식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고리대는 고구려에서는 이미 3세기부터 성행하였고,49) 신라에서는 文武王 9년(669) 고리대 원곡과 이자 탕감조치를 통하여50) 그 이전에 고리대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리대의 성행은 부수적

^{45)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소지마립간 12년 3월.

^{46)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에서는 지증왕 10년에 東市만을 설치하였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같은 책 職官志에서는 東市典을 설치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 설치 연대 또한 신라본기와 달리 지증왕 9년이라고 하였다. 이를 볼 때 지증왕 10년을 전후하여 동시와 그것을 관리하는 시전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7) &#}x27;都城 안의 시장 물건값은 布 1匹에 30碩 내지 50碩이었다'라는《三國遺事》권 1, 紀異 2, 太宗春秋公조의 기록과 '예전에는 絹布 10寿의 길이를 1匹로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고쳐서 길이 7步, 너비 2尺으로서 1匹로 삼는다'라는《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5년조의 기록 등에서 布가 교환수단으로서 널리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8) 《}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49) 3}세기 무렵인 故國川王代에 賑貸法을 실시하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고리대라고 할 수 있다.

^{50)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9년 2월.

으로 토지매매의 증대와 더불어 계층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6세기 이후 교환경제의 발달은 운송수단과 교통로의 발달에 의해서도 뒷 받침되었다. 신라는 訥祗麻立干 22년(438)에 民에게 牛車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炤知麻立干 9년(487)에는 4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官道를 수리하여 운송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육상운송과 더불어 수로를 이용한 운송체계도 정비하였다. 즉 智證王 6년(505)에는 선박 이용제도를 새로이 정비하였고, 문무왕 18년(678)에는 船府를 설치하여 선박운송에 관한 업무를 전담케 하였던 것이다. 이전에는 병부의 大監과 弟監이 그것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운송수단과 교통로의 정비는 일차적으로 각 지방에서 바치는 조세나 공물들의 수송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각 지방과 경주 사이뿐만 아니라 각 지방들 간의 교환을 촉진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4) 토지제도와 조세 · 요역제도

(1) 토지제도

신라 초기에는 읍락내에 공동체적인 관계의 유제가 온존하였기 때문에 개별 농가의 자립성이 매우 미약하였다. 이 때 각 읍락내의 농민들은 비교적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신라 초기에는 토지소유의 주체들이 뚜렷하게 부각되기 힘들었고, 이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토지제도가 정비되기도 어려웠다. 물론 部나 읍락 그리고 소국의 지배층은 대규모 토지를 노비노동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추정되기도 하나,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법제화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신라의 토지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된 것은 6세기 이후였다. 4~6세기 철제 농기구와 牛耕의 보급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발달은 농민들의 계층분화를 촉진시켰다.51) 이 결과로 읍락내에서는 토지를 둘러싼 소유의 분화

⁵¹⁾ 고구려에서는 3세기 무렵부터「力田自給」하는 계층과 더불어 고용농의 존재가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의 심화는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확립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52) 한편 이 무렵에 신라는 이와 같은 사회변동에 대응하여 소국이나 읍락을 해체한 다음, 그 곳을 써나 郡・村으로 재편하여 전국에 걸친 일원적인 수취체계를 정비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적 규모에서 비로소 토지제도가 정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3)

6세기 이후에 정비된 토지제도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지 않기때문에 그 전모를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현재 확인되는 토지의 종류로서는 국유지와 사유지, 촌락공유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유지에는 왕실직속지와 국가소유지, 사유지에는 농민과 귀족들의 사유지가 있었다.54)

먼저 왕실직속지는 내성에서 관리한 토지를 말한다. 문무왕 2년에 왕은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내성 관하로 추정되는 本彼宮의 財貨・田莊・奴僕을 나누어 주었다.55) 본피궁과 마찬가지로 內省私臣이 관장하였던 大宮・梁宮・沙梁宮에도 각각 그에 딸린 田莊이 있었을 것이다. 사량궁의 唱翳倉은 이들 전장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왕실직속지와 관련된 토지로는 말기르는 목장인 馬陆가 있었다. 문무왕 9년에 왕실은 22곳의 마거를 하사받았다.56) 마거는 섬 등의 변방지역에 산재하는 것이보통이었다.

국가소유지는 국가에서 귀족들에게 下賜한 토지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확인되고, 〈광개토왕릉비〉을 통해서「富足之者」가 각 촌락마다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에서도 4세기 말부터 유이민의 존재가 발견되며, 5세기 말에는「游食百姓」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변동〉,《역사와 현실》4, 한국역사연구회, 1990, 30~40쪽).

⁵²⁾ 전덕재, 위의 글, 35~37쪽.

⁵³⁾ 安秉佑, 〈6~7세기의 토지제도〉(《韓國古代史論叢》4,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278쪽

⁵⁴⁾ 사유지는 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 토지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수취대상 토 지를 말한다. 왕실직속지는 국가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사유지로 보기 힘들다.

^{55)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2년 2월.

⁵⁶⁾ 문무왕 9년에 174곳의 馬阹를 官과 관리들에게 하사한 바 있는데, 이 때 왕실을 의미하는 所內가 22곳을 하사받았다(《三國史記》권 6,新羅本紀 6, 문무왕 9년 5월).

수 있다. 진홍왕 23년(562) 대가야 멸망에 공을 세운 斯多含에게 진홍왕이 良田을 하사하려 하였다.⁵⁷⁾ 그리고 문무왕 2년에는 김유신에게 田 500結을 하사하였다.⁵⁸⁾ 여기서 양전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또는 전 500결이라고 서술한 사실에서 사여대상 토지가 이미 경작하고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인물들에게 사여되기 이전에 이들 경작지의 소유 주체는 국가였을 것이다.

국가소유지의 기원과 관련하여 김인문이 熊川州의 토지를 하사받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59) 웅천주는 백제의 故地였으므로 김인문이 위의토지를 하사받은 시점은 백제 멸망 후이다. 당시 일반 농민들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인문이 하사받은 토지는 백제의 국가소유지나 백제왕실의 직속지, 또는고위 귀족들의 사유지였다고 짐작된다. 여기서 국가소유지의 확보가 바로신라가 멸망시킨 나라들의 위와 같은 성격의 토지들을 몰수하는 것에서 연원하였다고 추론해볼 수 있겠다. 물론 백제와 고구려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加耶諸國, 그리고 경상도 각 지역의 辰韓小國들을 병합하는 과정에서도 그와같은 토지가 확보되었을 것이다. 초기에는 왕실직속지와 국가소유지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이들 토지역시 왕실직속지와 국가소유지로 구분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국가소유지 가운데 특수한 토지의 하나로서 변경지대 군대주둔지에 설치한 屯田을 들 수 있다. 통일전쟁이 한창이던 7세기 중반에 신라에서 둔전을 두었음이 확인된다.60) 그리고 〈丹陽 赤城碑〉에 보이는「佃舍法」은 둔전경영과 관련된 법조항으로 보인다.61)

왕실직속지와 더불어 국가소유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되었는지 알려주는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원 1세기경 漢人 1,500여 명이 진한인

^{57)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23년 7월. 한편 列傳 斯多含條에서는 사다함이 良田을 거부하고 閼川의 不毛之地를 請하 역 사여받았다고 서술하였다.

^{58) 《}三國史記》 권 42, 列傳 2, 金庾信.

^{59)〈}聖住寺朗慧和尚塔碑〉(《譯註韓國古代金石文》3, 1992), 107쪽.

^{60)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7월 26일.

⁶¹⁾ 安秉佑, 앞의 글, 319~324쪽.

에게 잡혀 노비가 되었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밭에서 참새를 쫓았다고 전한다.62) 이 때 노비들 대부분은 소국 수장층의 소유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수장들이 노비노동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작하던 당시의 모습을 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로국왕의 직속지에서도 그 와 같은 방식으로 경작되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6세기 이후 왕실직속지에서도 노비노동을 이용한 농업 경영방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봄직하다. 그렇지만 모든 왕실직속지가 그러하였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다. 물론 국가소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63)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된 사유지는 신라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읍락공동체의 해체과정에서 농민들은 세습적으로 점유하던 토지를 자신들의 사유지로 확보하였다. 국가는 각 읍락이나 촌락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토지소유관계를 조사하여 수취의 기준자료로 삼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을 것이다.⁶⁴⁾ 통일신라시대에 이러한 농민들의 토지는「烟受有田(畓)」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농민들의 토지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증여뿐만 아니라 매매까지도 가능하였다.

한편 농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대규모 사유지를 소유한 주체였다. 귀족들은 우선 국가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대규모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족들은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였을 것이다.⁽⁵⁵⁾ 당시 귀족들의 대규모 사유지를 田莊이라고 불렀다.

^{62)《}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

⁶³⁾ 통일신라시대의 官僚田이 佃戶制에 의하여 경영되었다고 본 견해가 있다(李喜寬,〈統一新羅時代 官僚田의 支給과 經營〉,《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3, 1992, 74쪽). 이러한 경영방식이 중고기의 왕실직속지와 국가소유지에도 존재하였으리라 짐작되지만, 그 비중이 얼마만큼이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⁶⁴⁾ 당시에 量田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촌마다 어느 곳의 논과 밭은 누구의 소유라는 정도는 관행상 모두에게 인지되는 사실이었다고 믿어진다. 아마도 국가는 그러한 관행을 그대로 추인해 주었지 않았을까 한다.

⁶⁵⁾ 귀족들의 대규모 토지소유의 연원과 관련하여 신라 초기에 骨伐國王 阿音夫가 사로국에 항복하고 田莊을 하사받은 사실이 주목된다. 초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한편 이것을 통해 신라국가에 귀속된 각 소국의 수장층이나 지배층들이 국가로부터 그와 같이 토지를 수여받았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아마도 이 때 신라에서 수여한 토지의 대부분은 원래 소국 수장층이나 지배계층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였다고 생각된다.

사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수취대상 토지였다. 그리고 이들 토지들은 귀족이나 관리들이 부분적으로 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食邑地와 綠邑地로 도 설정되었을 것이다. 이 때 귀족들은 자신의 대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고을을 자신들의 식읍지나 녹읍지로 수여받으려고 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신라에 항복한 金官國王 金仇亥는 김해지역을 식읍지로 수여받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촌락공유지는 阿達城太守가 날짜를 정하여 일제히 성 밖에 나가 麻를 심도록 한《삼국사기》의 내용을66)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달성은 말갈의 침입이 잦은 변경지방에 위치하였으므로 위의 조치는 그들의 침입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것만이 성민들이 일제히 나가麻를 심은 이유의 전부였을까. 일반적으로 麻田의 경작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 가호가 독자적으로 그것을 경영하기는 힘들다고 한다.67) 이와 같은 마전 경영의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위의 사실은 城民전체가 공동으로 마전을 경영한 실례를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촌민 전체로 경영되는 토지를 「촌락공유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 조세・요역제도

신라 초기의 수취제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없는 편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힘들다. 다만 三韓小國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성곽을 쌓을 때年少勇健者를 징발하였다는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의 내용을 통해서 신라 초기에 部나 읍락의 지배층이 읍락민을 요역에 정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晋書》에서는 馬韓에 調役이 있었다고68) 하였다. 당시에 요역과 군역을 뚜렷하게 구별하여 정발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공건물이나 城의 축조, 그리고 전쟁 등 국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읍락민을 무작위로 정발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당시 사회생활이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모습을 띠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66)《}三國史記》 권 47, 列傳 7, 素那.

⁶⁷⁾ 마전 경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安秉佑, 앞의 글, 310~312쪽이 참조된다.

^{68) 《}晋書》권 97, 列傳 67, 東夷 馬韓. 한편 진한은 마한과 풍속이 거의 같다고 하였다.

또한 신라 초기에 곡물을 저장하던 物藏庫와 그것을 관장하던 관리의 존재가⁽⁶⁾ 확인되는데, 이것은 신라에서 일찍부터 일반민들로부터 부세를 거두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초기에 신라는 내부의 통치에 대하여 자치력을 행사하는 6개의 부로 구성되었으므로⁷⁽⁾ 당시 부세수취의 주체는 부의 지배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부의 주요 수취대상은 읍락민의 대부분을 차지한 下戶였다. 고구려의 하호들이 지배층에게 양식과 생선·소금을 멀리서져다 바쳤다고⁷¹⁾ 하였으므로 신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부의 지배층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세를 수취하였고, 얼마만큼의양을 거두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部集團은 왕권에 의하여 일정한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왕에게 공납물을 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라 초기에 경주분지에 위치한 사로국은 주변의 진한소국들과 지배 -복속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때 각 소국은 복속의 표시로서 사로국에 공물을 헌상하였다.72) 사로국은 소국들이 공물을 바치기를 거부하면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을 응징하였다.73)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로국이 주변의 소국 민들을 전쟁이나 축성 등에 정발하기도 하였다.74)

신라의 수취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된 것은 6세기 이후였다. 이 무렵 신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종래의 部를 왕경의 행정구역으로, 소국이나 읍락을 주·군·촌으로 재편하고, 부민을 비롯하여 각 소국의 읍락민들을 국가의 公民으로 편제하였다. 이에 따라 수취제도상에서도 커다란 변동이 뒤따랐던 것이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요역의 체계적인 정비에서 찾을 수 있다. 《삼

^{69)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첨해니사금 5년.

⁷⁰⁾ 全德在,《新羅六部體制研究》(一潮閣, 1996), 10~38\.

^{71) 《}三國志》 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

⁷²⁾ 예컨대 于山國(울릉도)에서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든지, 古陁郡(安東)主가 婆娑 尼師今 5년에 靑牛를, 助賁尼師今 13년에 嘉禾를 헌상한 사실 등이 바로 그러 한 실례들이다.

⁷³⁾ 전덕재, 앞의 글(1990b), 8~12쪽.

⁷⁴⁾ 신라 초기에 자주 보이는 축성 기사는 사로국이 주변 소국민을 정발하여 축성 하였던 실례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국사기》신라본기 소지마립간 8년(486)에 '一善界 丁夫 3천 명을 정발하여 三年・屈山 2城을 改築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계량된 정부의 수까지 명기하여 요역을 정발한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주민을 무작위적이 아니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계량한 15세 이상의 정부 3,000명을 정발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신라가 5세기 말 단계에 각 家戶마다의 사정을 참작하여 축성역에 人丁을 정발하였던 것이다.75) 실제로 6세기 중반〈단양 적성비〉에서 미성년 소년・소녀를 小子・小女로 표현하였듯이 신라가 각 가호마다의 연령별・성별 인구수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중고기 신라의 요역 정발체계는 지금까지 발견된 비문들을 통해 살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南山新城碑〉이다. 이 비문은 남산신성을 쌓고 만약 3년 이내에 무너지면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서술하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적기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산신성제1비〉와〈제2비〉에서는 책임자들을 지방관(邏頭・道使;왕경인)—재지지배자(村主・匠尺)—기술자 집단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비문의 구성을 볼때, 役夫의 동원은 지방관과 재지지배자 등이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신성비문에는 지방관이 보이지 않고 다만 재지지배자만이 보이는데, 이것은 지방관의 개입 여부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비문을 통해서 볼 때, 중고기에는 국가가 郡 단위로 요역을 부과하였고, 다시 각 군은 〈남산신성 제1비〉와〈제2비〉에서 보이듯이 특정한 한 촌이나 또는 여러 촌의 丁夫들을 요역에 징발하였던 것 같다.

한편 요역과 마찬가지로 군역 정발방식도 중고기에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隋書》新羅傳에는 신라에서 건장한 남자를 모두 뽑아 군대에 편입시켰다고 하였다.76) 그리고 《삼국사기》薛氏女傳은 진평왕대 설씨녀의 아버지가 3년 기간의 군인으로 정발되었으나 嘉實이란 청년이 그것을 대신하였던 사정을 전해 주고 있다.77)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단혼소가족인 경우에도 예외없

⁷⁵⁾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역사비평사, 1991), 91쪽.

^{76) 《}隋書》 권81, 列傳46, 東夷新羅.

^{77) 《}三國史記》 권 48, 列傳 8, 薛氏女.

이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었음을 알려 주기까지 한다. 이 때 왕경민뿐만 아니라 지방민도 군역에 징발되었다.78) 물론 중고기 초에는 왕경인으로 구성된 군대와 지방민으로 구성된 부대는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왕경인으로 구성된 군대는 四方軍主가 사령관으로 있었던 停에 주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는 군역과 요역과의 관계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6세기 이후 일반민들은 군역과 요역을 모두 부담하였다. 군복무 기간은 3년이었으므로 군에 징발된 사람들은 3년 동안 집을 떠나 오로지 국방의 의무에만 전념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군역을 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요역이나 조세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특히 설씨녀의 집안처럼 가세가 곤궁한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군사를 차질없이 징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군사로 징발된 가족들에게 요역이나 조세부담을 감면시켜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隋와 唐나라에서는 府兵으로 징발된 人丁의 경우 租庸調의 부담을 면제시켜 주었음이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9)

노동력과 더불어 중요한 수취대상의 하나는 현물이었다. 신라의 경우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 부세로서 米 또는 粟과 絹布를 바치게 하였다.⁸⁰⁾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풍속·刑政·의복이 거의 같았으므로 신라의 賦稅制度 역시 그들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중고기 초 수취관계를 총괄하던 중앙관부는 稟主였다. 이는 一名 租主라고도 불렀는데, 품주·조주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 관부가 租를 거둔 다음그것을 창고에다 저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였기 때문이었다.81) 그리고진평왕 6년(584)에 貢賦의 수취를 담당하는 調府가 설치되면서 품주에서 관장하던 수취관련 업무가 조부로 이관되었다.

⁷⁸⁾ 진흥왕대 관산성전투에서 三年山郡 高干 都刀가 이끄는 지방민 군대가 新州軍 主가 지휘하는 州兵에 속하였던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⁷⁹⁾ 樊樹志,《中國封建土地關係發展史》(北京; 人民出版社, 1988), 155~158쪽.

^{80) 《}周書》 권49, 列傳41, 異域上, 高麗 및 百濟.

⁸¹⁾ 李基白,〈稟主考〉(《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140~144쪽.

신라가 중고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부세를 거두었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 록은 전하지 않으므로 고구려와 백제, 후대의 자료를 통해 그것을 유추할 수 밖에 없다. 먼저 고구려의 경우《수서》고려전에 '人稅는 布 5匹에 穀 5石이 다. 遊人은 3년에 한 번을 내되 열 사람이 어울려서 細布 1匹을 낸다. 租는 (上: 필자)戶는 1석, 다음은 7斗, 그 다음은 5斗를 낸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각 가호마다 조를 거두었다는 점이다.82) 위의 기 록에서 포 5필과 곡 5석은 중국 세제상에서 바로 戶調에 비견될 수 있고. 租 는 부가세의 성격이 강한 戶稅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부 세제도를 가지고 짐작하건대, 중고기 신라의 경우도 각 가호마다 組의 명목 으로 쌀 또는 다른 곡물을, 調의 명목으로는 絹과 布를 부과하는 賦稅制度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수서》 신라전에 '혼례를 치를 때 단지 酒 食을 차리는데, 빈부에 따라 그 輕重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였듯이 중고기 신라사회에서는 빈부 격차가 심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호마다 의 빈부 격차를 고려한 부세 징수체계를 정비하여 나갔다고 판단된다. 통일 전쟁기를 거치면서 확립된 9등호제는 그와 같은 측면을 반영한 수취제도의 정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기에 작성된〈佐波理加盤文書〉에는 巴川村이 매달 1일마다 上米와 大豆를 바치는 예가 보인다. 그리고〈村落文書〉에서는 통일기에 신라에서 수취의 기준자료로서 각 촌마다 計烟을 설정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것

⁸²⁾ 기존에 《隋書》 권 81, 列傳 46, 高麗傳에 나오는 앞 규정을 근거로 고구려에서 人丁을 기준으로 부세를 부과하는 稅制 즉 人頭稅를 시행하였다고 보았다(金基與, 앞의 책, 50~59쪽).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人丁을 기준으로 곡물이나 布・絹을 부과하는 부세제도는 唐代 또는 율령국가 시기에 가서 마련되며, 그것도 국가에서 토지를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급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정비되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家戶 단위로 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주변 나라들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위의 규정만을 근거로 고구려에서도 인정을 기준으로 부세를 부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부세의 양이 인정 1인에게 부과한 것으로서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규정은 국가에서 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정한 일정한 기준치를 모두 갖춘 家戶에게 부과한 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遊人은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은 여타의 피지배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이며, 그러한 이유로 국가에서는 농민들과 차등을 두어 부세를 거두었다고 짐작된다.

은 통일기에 촌을 단위로 요역과 조세, 貢賦를 거두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들이다. 그런데 중고기에 요역을 촌 단위로 징발하였다. 즉 중고기의 요역 징발방식이 어느 정도 통일기에도 계승되었던 것이다. 부세의 수취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아마도 국가에서 郡을 통해 촌마다의 사정에 따라 부세수취량을 할당하고, 촌은 그 할당량을 다시 개별 가호마다 할당하여 거두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농민들의 부세부담이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기 곤란하다.83)

〈全德在〉

4. 사회구조

1) 신라사회의 대본이 되는 골품제도

최초 오늘날의 慶州 일원을 중심으로 하여 조그만 농업공동체로 출발한 斯盧國이 주변의 辰韓 동료 국가들을 모두 병합하여 대연맹왕국을 형성한 것은 대체로 4세기경의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연맹왕국은 지역적으로는 매우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는 있었으나, 아직 조정의 통제력은 미약한 편이어서 다수의 城邑國家들이 망라된 모자이크 형태의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奈勿麻立干 이래 1백 년 이상에 걸친 이른바 마립간시대를 통해서 왕권은 꾸준히 성장하고 이에 따라 신라조정의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력도 크게 강화되어 6세기에 들어서면 연맹왕국시대의 부족적・다원적인 유제가 청산 극복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신라조정이 중앙집권체제로의 질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즉 그 하나는 전국적인 지방제도의 채택이었고 다른 하나는 律令의 반포였다. 신라는 智證麻立干 때 처음으로 州郡制度를

⁸³⁾ 다만 戶調制를 실시한 중국 北魏의 경우 一夫一婦가 粟 2石과 帛 2匹을 바쳤고, 租庸調制가 확립된 唐나라에서는 1丁當 租로서 粟 2石, 調로서 絹 2丈과 棉 3兩(또는 布 2丈 5尺, 麻 3斤)을 바쳤던 사실을 참고할 수 있겠다.

시행하여 그 동안 사로 연맹왕국에 참여해 온 여러 지방세력들을 강고한 전국적인 지배망 속에 결속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뒤이어 法興王 7년 (520)에 반포된 율령제도는 단편적인 지역세력들을 중앙의 통제 아래 통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까 지방제도가 일종의 접착제의 구실을 하였다면 율령은 그야말로 용해제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 주군제와 율령제 실시를 계기로 하여 바야흐로 신라사회에는 법제화·조직화의 시대가 전개되었는데, 이 시대가 되면 뭔가 통합된 단일국가로서의 전반적인여러 기능이 서로 연관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사회학자 뒤르켕의 용어를 빌린다면 그것은 부족의 同類性에 의한 소위 기계적 連帶에서 분업에 의한 유기적 연대로의 移行을 달성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같은 시대적인 추이에 따라 신라사회는 줄곧 변화를 강요당하고 새로운 집단이 출현했을 것이다. 신라의 사회구조란 필경 이처럼 많은 서로 다른 집 단들 사이의 사회관계를 합산해 놓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세 계의 어떤 민족사회 ·국가사회이건 간에 사회구조의 파악에서 가장 유력하 실마리가 되는 것은 경제ㆍ정치적 측면이다. 다만 우리들이 사회의 고유한 영역에 국한시켜 이를 고찰할 경우 무엇보다도 계급이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된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여기에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산업사회에 이르러 비로소 그 개념이 전형적으로 형성된 계급개념을 사용하여 신라사회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무 리가 따르게 된다. 실제로 우리들은 그러한 개념적 구조를 검증할 만한 구체 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계급만이 유일한 고려의 대상 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인종ㆍ지역사회ㆍ직업ㆍ가족ㆍ연령ㆍ性 등 많은 유대관계들이 사회구조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신라사회에서는 직업이 곧바로 신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사회구조의 양상을 신분 제사회라는 틀 속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신분제사회의 세포는 물론 가족이지만, 이는 연합하여 지역적으로 村을 구성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친족집단의 혈연조직망 속에 은폐되어 있는 까닭에 그 파악이 쉽지 않다.

중국 上海에 거주하면서 1860년대 후반에 전후 세 차례에 걸쳐 來韓하여 開港 통상을 요구한 바 있는 유태인 계통의 독일상인이었던 오페르트(Ernest J. Oppert)는 한국의 풍속·습관·종교에 대해 기술하면서 한민족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엄격한 계급차별이라고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1)

이같은 조선의 계급제도는 인도의 힌두족에 있어서 지배적인 계급제도 (Caste)와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힌두족의 경우에는 이같은 계급 구별이 종교적인 규율과 관습에 의거하고 있는데, 한민족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이유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에만 근원이 있는 것이다.

과연 오페르트가 지적한 것처럼 카스트제도의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이 전적으로 브라만교의 가치체계에 있는 반면에 양반제도는 비록 유교의 가치관에 그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 자체는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카스트제도와 같은 엄격한 계급차별은 韓國史上 양반제도보다는 오히려 신라의 骨品制度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실로 골품제도야말로 신라의 사회적 본질을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緊線이었다. 2) 아니, 그것은 바로 신라사회의 大本이 되는 제도였다. 3)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라의 사회구조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려 할 경우 무엇보다도 이 골품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골품제도의 형성 배경

(1) 왕경 6부의 성립과 그 전개과정

골품제도는 6세기 전반에 王京 6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제된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들이 골품제도의 형성 배경을 추구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6부의 역사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6부야말로 초기 신라국가의 中核으로 그 형성사는 그대로 신라의 발전과정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

¹⁾ Ernest J. Oppert,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Korea,* Leipzig, 1880;韓沽劤 譯、《朝鮮紀行》(一潮閣, 1974, 75쪽).

²⁾ 李德星, 《朝鮮古代社會研究》(正音社, 1949), 85·123\.

³⁾ 李基白, 《韓國史新論》(一潮閣, 1967), 91 .

러므로 우리들은 신라의 성장 및 발전과정 속에서 6부 성립의 계기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조선 英・正祖시대의 학자 李種徽는 시조 赫居世로부터 5세기 말의 炤知마립간에 이르기까지의 신라역사를 마치 道家의 이념이 구현된 매우 평화스러운 시대인 양 예찬한 바 있다. 즉 이 기간 중에 신라는 변화에 잘 순응하면서 無爲自然의 상태로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 갔으므로 가령 老子와莊子가 맡아 다스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통치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 하였다. 4) 사실《三國史記》新羅本紀 기사를 보면 上古시대에 신라의 王系는 朴・昔・金의 3姓이 交立하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력적인 대결이 발생하지 않은 채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왕실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다. 이는 高句麗本紀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나는 점이다.

그러나 소위 3성에 의한 왕실 교체가 역사서에 기록된 것처럼 항상 평화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리는 없다. 어쩌면 왕실 교체는 때때로 무력 대결을 수반했을 터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李德星의 다음과 같은 추측은 매우 흥미가있다. 즉 그에 의하면 사로 6촌의 전설부터가 한 개의 정복수단의 표징이며, 박씨 시조라는 혁거세야말로 신라 역사상 최초의 정복자였다고 한다. 나아가그는 석씨 시조라는 脫解가 경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도 어디까지나 정복의식의 결과이며, 김씨 시조인 閼智의 경주 진출 역시 정복행동에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조정이 알지의 출현을 계기로 하여 국호를 始林에서 鷄林으로 바꿨다고 한 사실에서 어떤 중대한 의미를 찾으려고했다. 그리고 그는 내물마립간의 석씨 왕실 제압을 비상수단에 의한 것으로 추측했다. 요컨대 그에 의하면 3성이 교립한 사로국 왕실에는 억제할 수 없는 정복의식의 저류가 흐르고 있었고, 王系의 교체는 항상 정복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5)

우리는 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한 쪽을 택하여 신라 上古시대의 역사를 복원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의혹과 난관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라본기에 기술되어 있는 상고의 世系와 紀年에도

⁴⁾ 李種徽《修山集》 권 6, 史論, 新羅論 1.

⁵⁾ 李德星, 앞의 책, 44・62~63・70・74・110~111・123쪽.

많은 불합리한 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령 세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년에 있어서는 어떤「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그리하여 그간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기년 조정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조정안은 나오지 못한 채 가설의 범주에 머물고 있을 따름이다.

이제 문제를 왕경 6부의 발생에 한정하여 생각해 보면,《삼국사기》와《三國遺事》에는 건국 당시부터 존재해 오던 6촌을 제3대 儒理尼師今 9년(32)에 6부로 개칭하면서 각 부에 姓氏를 부여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가령 성씨의 下賜와 같은 것은 신라통일기의 어느 때임이 분명한 것이다. 또한 6부 관련 기사에 뒤이어 17관등을 제정했다는 기사가 보이지만, 이 역시 훨씬 후대인 6세기 전반의 사실에 불과하다. 한편 6부의 성립이종전의 6촌을 개편한 결과라는 역사서의 기록에도 의문이 없을 수 없다. 왜냐하면 6부는 역시 사로국의 진한 병합의 정치적 산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신라는 연맹왕국 형성과정에서 병합한 크고 작은 주변 성읍국가들의 지배층을 경주 일원에 이주시킴으로써 왕경 6부를 편제해 나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6부의 성립 시기는 일단 내물마립간의 시대, 즉 4세기 후반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6)

다만 6부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6부가 어느 한 시기에 성립된 것인가 어떤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6세기경의 금석문자료에서 볼 때 6부 가운데 喙部(梁部)와 沙喙部(沙梁部) 2부의 압도적인 우세가 간파되기 때문이다. 사실 本彼部나 岑喙部(漸梁部・牟梁部), 斯彼部(潛比部)는 매우 미약한 존재로 등장할 뿐이며, 韓岐部(漢只伐部・漢祗部)의 존재는 완전히 몰각되어 있다. 그리하여 6부의 원류는 대체로 5세기 初頭를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의 군사적 영향 아래 탁부와 사탁부가 설치된 뒤 5세기를 통해서 牟梁部 이하의 4부가 增置되어 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오고 있

⁶⁾ 최근 신라본기의 초기 기록에 대한 긍정론이 대두하면서 6부의 성립시기를 사로국이 진한의 맹주국으로 등장했다고 보는 3세기 후반경으로 잡아보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全德在,《新羅六部體制研究》,一潮閣, 1996, 10~37쪽 참조).

고,7) 한편 마립간시대에 탁부·본피부·한기부의 3부가 먼저 성립되었다가 뒤에 탁부에서 사탁부와 잠탁부가, 본피부에서 사피부가 각기 분화된 결과 6 부로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8)

이처럼 6부가 5세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혹은 3부가 분화함에 따라서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는 그럼직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역사서에 보이는 6부 관련기사와 충돌하는 듯한 면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즉 탁부와 사탁부가 마립간시대 김씨 왕실 직속의 세력기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 김씨 이전에 왕실을 장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박씨와 석씨의 세력집단이 각기 모량부 혹은 한기부와 관련이 있는 듯이 역사서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가령《삼국유사》에 의하면, 智證王의 妃인 박씨나 진흥왕의 비인 박씨는 모두 모량부 출신으로 되어 있어, 어쩌면 모량부가 소위 박씨 족단의 장악 아래 놓여 있던 부가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자아낸다. 한편 석씨 족단이 한기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의 하긴 상고시기의 3성 교립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소위 중고시기의 박씨 왕비의 존재는 박씨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5세기경의 6부는 연맹왕국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국왕 직속의부는 최초 탁부에 불과했고, 나머지 부는 국왕의 직접적인 통제로부터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보유했다. 조정은 6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 정치운영은 국왕과 6부 대표자들과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 그 뒤 사탁부가 국왕의 통제 아래 들어가면서 흔히 왕(금석문에는 寐錦王으로 표기됨)의 동생으로임명되는 葛文王을 사탁부에 소속시켰다. 이처럼 왕실이 탁부와 사탁부를 발판으로 하여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여 간 결과 다른 부 대표들의 조정에서의

⁷⁾ 武田幸男、〈新羅六部와 그 展開〉(《碧史李佑成停年紀念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창작과비평사、1990)、123~125즉.

⁸⁾ 朱甫暾,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新羅를 中心으로-〉(한림과학원,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11~18쪽.

⁹⁾ 金哲埈、〈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歷史學報》1, 1952, 29쪽)·〈新羅上古世系와 그 紀年〉(《歷史學報》17·18, 1962;《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74~76쪽).

입지는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慈悲마립간 12년(469) 정월에 조정은 서울의 坊里에 이름을 정했는데, 종래 이를 6부 성립의 주요한 계기 내지 지표로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방리는 6부지역 안의 행정구역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조치는 각 부에 대한 국왕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10)

(2) 율령의 수용과 신분층의 결정화 과정

골품제도는 법흥왕 7년(520) 중국 율령의 수용을 계기로 하여 제도적 기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집작된다. 당시 제정된 율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권 33, 志 2, 色服조에 법흥왕 때 처음으로 6부사람들의 복색의 尊卑제도를 제정했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制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公服制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공복제는 이의 적용을 받는 관료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름아닌 관등제도를 표시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골품제도적인 신분제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된다.11) 그러니까 율령 반포를 계기로 하여그 이전부터 시행해 오던 몇몇 관등이 17관등제로 정비되고 나아가 골품제도의 原型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잘못이 없다고 집작된다.

중국사에서 보면 본디 율령은 황제권의 이념을 뒷받침할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런데 율령을 수용할 당시 신라의 군주권은 종전의 소위「6부체제」의 제약을 받아 아직 강고하지 못한 편이었다. 사실 국왕이라고 해도 초월적인 君主像과는 거리가 멀었다. 근래 세상에 알려진〈迎日 冷水里 新羅碑〉(503)나 혹은〈蔚珍 鳳坪里 新羅碑〉(524)에서 볼 수 있듯 국왕(寐錦王)은 탁부출신이라는 그 소속 部名이 표기되어 있을 정도이다. 더욱이〈냉수리비〉에서 보면 사탁부 소속의 갈문왕 이외에 관등을 보유한 유력자 6명이 일괄「王」으로 總稱되어 있다. 본래 王이란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또한 어느 시대를

¹⁰⁾ 全德在, 앞의 책, 30 · 79쪽.

¹¹⁾ 武田幸男、〈新羅・法興王代の律令と衣冠制〉(朝鮮史研究會編,《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85~93等.

^{-------, 〈}新羅官位制の成立〉(《旗田巍古稀記念 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979), 167~173等.

문지 않고 다소간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왕이 전체사회를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은 결코 전체사회의 어느 한 부분과 자신을 동일시한다거나 혹은 그것과 이해관계를 같이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¹²⁾ 요컨대 신성한 것은 왕 개인이 아니라 왕의 지위인 셈인데, 6세기 초반 무렵만 하더라도 신라의 국왕은 敎書 속에 자신이 특정한 部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기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그런 만큼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왕이 6부의 대표자들과 합의를 거친다음 더욱이 그들과의 공동명의로 교서를 반포하고 있는 것도 하등 놀랄 일이 아니었다. 다만 53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라의 정치 운영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법흥왕 18년(531)에 上大等직이 설치되면서 지금까지 국왕이 주재하던 6부 대표자회의, 곧 귀족회의를 상대등이 대신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13) 또한 530년대에 이르면 국왕은 더 이상 소속 部名을 冠稱하지 않아도 되는 「太王」이 되었다. 이는 국왕이 탁부뿐 아니라 전 6부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그 位相이 올라간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일련의 현상을 갖고「6부체제」의 해체에 따른 국왕 중심의 집권적 정치체제로의 변화로 파악하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 시기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서그 때까지 자치적인 단위정치체로서 기능했던 6부가 해체되고 그 대신 다만행정구역의 의미를 띠게 된 것으로 파악할 여지가 크다.14)

¹²⁾ E. E. Evans-Pritchard, The Divine Kingship of the Shilluk of the Nilotic Sudan, *Essays in Social Anthropology*, Faber and Faber, 1962, p.84.

¹³⁾ 李基白,〈上大等考〉(《歷史學報》19, 1962;《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93~96等).

¹⁴⁾ 全德在, 앞의 책, 111~140쪽. 전덕재는〈울진 봉평 신라비〉에 보이는 本彼部와 岑喙部의 대표자가 갖고 있던「干支」를 관등으로 인정하지 않아(이 점은 徐毅植도 마찬가지이다. 徐毅植,《新羅上代'干'層의 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大博士學位論文, 1994, 29쪽 참조), 법흥왕 11년(524) 당시까지 관등은 탁부와 사탁부 출신에게만 부여되었고 본피부와 잠탁부 출신에 대한 관등 부여는 530년 대에 이르러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간지」를 大阿湌보다 상위의 어쩌면 伊伐湌이나 伊湌, 혹은 洒湌에 상당하는 관등으로 보는 건해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조된다.

武田幸男, 앞의 글(1990), 111~112쪽.

朱甫暾、〈6세기초 新羅王權의 位相과 官等制의 成立〉(《歷史教育論集》13·14, 慶北大、1990)、257~260等.

율령은 바로 이같은 급격한 정치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포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신분제도의 편성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즉 신분제도 편성의 원동력은 당시 증대일로에 있던 왕권이었지만, 그것이 아직 6부세력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골품제도는 기본적으로 6부에 소속된 왕경사람들이 지방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왕경 지배자 공동체의 배타적인 특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밖에 없었다. 15) 비록 6부체제 자체는 약화의 길로 접어들었으나, 그 지배층은 골품제도에 포섭되어 골품귀족으로 再生 轉化함으로써 그 정치·사회적 명맥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다. 소위 중고시대를 통해서 귀족 연합체제적인 정치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도16) 이 때문이었다. 당시 신라의 國制는 형식은 군주제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귀족제적 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골품제도는 6부 귀족연합체제의 정치적 산물이었던 셈이다.

이같은 의미에서 법흥왕 때 정비된 신분제가 과연《삼국사기》職官志에 규정된 것과 같은 그 자체 정연하고 엄격성을 띠고 있는 골품제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眞骨과 6頭品 양 귀족이 구분되는 관등인 大阿湌과 阿湌 모두가 소위 干群계열에 속하고 있으며, 6세기 초의 금석문 자료에서는 이들 사이에 신분적인 간극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골품제도가 직관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확립된 시기를 아찬 관등에 6두품을 위한 特進제도로서 소위 重位制가 적용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 7세기 중엽 무렵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17) 골품제도와 같은 정연한 신

宣石悅、〈迎日冷水里新羅碑에 보이는 官等・官職問題〉(《韓國古代史研究》3, 1990), 193~194等.

申衡錫,〈5~6세기 新羅六部의 政治社會的 性格과 ユ 變化〉(《慶北史學》15, 1992), 21~22\.

李仁哲、《新羅 律令官制의 運營》(《新羅政治制度史研究》,一志社,1993),129~ 131목.

¹⁵⁾ 武田幸男、〈新羅の骨品體制社會〉(《歷史學研究》299, 1965), 7~8・10等.

¹⁶⁾ 李基白, 앞의 책(1974), 94~101쪽.

¹⁷⁾ 全德在, 앞의 책, 141~143쪽. 朱甫暾, 앞의 글(1992), 39~40쪽.

분 계층제가 확립되는 데는 필경 상당한 기간에 걸친 사회 成層의 結晶化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특히 여기에는 진골귀족집단의 배타성도 작용했을 터이므로 이러한 견해는 시사하는 바 크다.¹⁸⁾

사실 골품제적인 신분제도는 중고시대를 통해서 꾸준히 강고한 정치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 갔다. 그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 신분제도가율령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19) 당시는 신라의 관직제도 발달사에서 볼때 창설기로부터 정비기에 해당했는데, 골품제도의 가장 큰 정치·사회적 기능은 바로 6부 사람들의 家格을 평가하여 각기 일정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관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골품제도는 관료집단 내부에 발생하는 기구상의 하이어라키가 곧바로 신분적 上下의 성격을 띠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은 삼국통일 후 정상적인 관료제도 발달을 억제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소위 中代정치를 파탄으로 이끈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20)

3) 골품제도의 계층 구성

골품제도는 크게 骨制와 頭品制라는 두 개의 신분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골제는 왕족의 신분제였는데, 이는 다시 聖骨과 眞骨로 구별되었다. 崔致遠은 眞聖女王 때 지은〈朗慧和尚碑〉에서 진골보다 높은 신분으로「聖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성골의 別稱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두품제는 6頭品에서 1頭品까지 6개의 신분으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골품제도는 모두 8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는 물론 신라사회를 통해서 일관된 것은 아니었고 어느 한 시기의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주지하듯이 사회구조라든가

¹⁸⁾ 사회적 등급에 대한 고질화된 관념은 항상 새로운 구별을 만들어 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인류학자 로우이의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Robert H. Lowie, *Social Organization*, Rinehart & Company, 1948, p.278).

¹⁹⁾ 李基東、〈新羅의 骨品制度와 日本의 氏姓制度〉(《歷史學報》94・95, 1982), 137 ~138쪽

²⁰⁾ 李基東,〈新羅 中代의 官僚制와 骨品制〉(《震檀學報》 50, 1980;《新羅骨品制社會外 花郎徒》,一潮閣, 1984, 131~141쪽).

신분제도는 본래 靜態的·無時間的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필경 하나의 과정이며, 비교적 안정된 사회구조라 할지라도 動的인 힘이 다만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제 신라사회의 신분계층을 편의상 골제와 두품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골제-성골과 진골-

骨制의 원류를 생각할 때 먼저 고려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신라왕실의 血族집단이다. 이 집단은 麻立干시대를 통하여 6부 가운데 가장 유력한 탁부(급량부 혹은 양부)와 사탁부(사량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골제의 대상이 된 사회세력을 오로지 왕실 구성원만으로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6부 가운데서도 본피부나 혹은 모량부의 지배적인 씨족은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고시대의 박씨 왕비들 중에는 이 모량부 출신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또한 신라에 병합된 지난날의 유력한 小國들의 지배층 일부도 골제의적용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법흥왕 19년(532) 신라에 병합된 金官伽耶의 왕족은 사탁부에 편입되면서 진골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이같은 예는 고구려멸망 후 그 왕족인 安勝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그는 전북 益山에설치된 報德國의 왕에 임명되어 고구려 유민들을 다스리고 진골 출신의 여성과 혼인하기까지 했다. 보덕국이 해체된 뒤 그는 蘇判 관등을 받았다.

소위 중고시대에 골제는 성골과 진골의 두 계층으로 나누어졌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金春秋가 654년 武烈王으로 즉위함으로써 왕통이 종래의 성골에서 진골로 바뀌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즉《삼국유사》 王曆에는 眞平王의 죽음과 함께 성골 남성이 없어져서 그의 딸 善德女王이즉위했다고 되어 있고, 그 뒤 眞德女王의 죽음으로 성골 왕의 중고가 끝나고 새로이 진골 왕의 下古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삼국사기》신라본기 진덕여왕 8년조에도 여왕의 사망 기사에 뒤이어 國人의 말이라고 하면서 시조 혁거세로부터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28명의 왕들은 성골이요, 무열왕으로부터 마지막 왕(敬順王)에 이르기까지 28명의 왕들은 진골이라는 기사를 덧붙이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역사서들은 신라 왕통에 있어서 성골

에서 진골로의 변화에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편 이들역사서의 초기 기록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李德星은 이같은 견해에 무조건따르고 있다. 즉 그는 골품제도가 전 사회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채 오직 지배층의 建官의 기준이 되었을 뿐, 성골의 단절과 더불어 전면적으로 붕괴되어 갔다고 논했던 것이다.²¹⁾

이같은 이유로 해서 종래 역사학계의 골품제도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이 성골로부터 진골로의 왕통의 변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그 변화의 원인을 탐구하는 일이야말로 곧 골품제도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이라도 되는 양 생각했다. 그러나 같은 왕족의 骨種인 성골과 진골이 구별되는 事由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골의實在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성골과 진골은 실질적으로는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으며, 어쩌면 성골은 진성여왕으로부터 얼마 지나지않은 시대에 고대의 王者를 聖王으로 崇尊하는 중국사상의 영향에 의해서 上代의 諸王을 追奪한 것이거나22) 아니면 선덕·진덕 兩王의 소위 여왕 통치를 정당화할 필요에서 진덕여왕이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곧 武烈・文武 양왕 때에 성골을 추존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23)

하기야 성골의 실재를 부인하기는 쉽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여기에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성골 생성의 배경이랄까 그 진골과의 차이를 탐구하는 것이 올바른 연구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고시대 왕실의 혼인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일단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고시대 왕비의 아버지에게는 대개 갈문왕 칭호가 붙는데, 진골인 무열왕의 할아버지 眞智王의 왕비 아버지인 起烏公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 어쩌면 성골에서 진골로의 변화, 즉 신분상의 降等은 혹 母系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견해도 있었고,²⁴⁾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골은 父

²¹⁾ 李德星, 앞의 책, 48・84・95쪽.

²²⁾ 池内宏、〈新羅の骨品制と王統〉(《東洋學報》28-3, 1941;《滿鮮史研究》上世 2, 吉川弘文館, 1960, 569~572零).

²³⁾ 武田幸男,〈新羅骨品制の再檢討〉(《東洋文化研究所紀要》67, 1975), 153~166쪽.

系와 母系가 모두 순수한 王種임에 대하여 진골은 그 중 어느 쪽의 한 代라도 非王種의 혈통이 섞인 까닭에 각기 구별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요컨대 성골의「聖」은 부모 兩系의 혈통이 모두 신성하다는 의식에서 취한 것이고, 한편 진골의「眞」은 한 쪽은 非眞이나 다른 한 쪽이 眞種이라는 의미에서 취했다는 것이다. (25) 혹은 성골 남성이 '盡했다'는 역사서의 기록에 유의하여 胃의 계승이 성골 간의 족내혼으로 한정된 결과 성골이 차츰 감소되어 간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다. (26) 한편 무열왕이 중고 왕실의 혼인법칙인 성골 남녀 간의 족내혼을 어기고 파계적으로 금관가야 출신 여성과 혼인한 까닭으로 성골로서의 자격이 부정되었다가 즉위의 실현과 동시에 진골로서 긍정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27)

이처럼 성골에서 진골로의 변화 문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관점으로 부각된 것이 중고 왕실의 혈족집단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족내혼의 문제로부터 혈족집단의 구성원리라는 범위 문제로 새롭게 확대되었다. 즉 성골의 계승에는 直系가 하나의 조건이 되며 무엇보다도 친족집단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무열왕이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된 것은 가야 계통 여성과 혼인했을 뿐 아니라 마침 그가 박씨 왕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증왕대로부터 7代째가 되어 소위 7世同一 친족집단의 말단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라시대에는 7세동일 친족집단이 사회편제의 기본단위였다고 한다.28) 그 뒤 중고시대의 왕위계승 친족집단 구성원리로는 3代 家系說이 제기되고 성골 신분을 유지하는 혈족집단도 역시 이 원리

다만 진지왕의 아들인 龍春(혹은 龍樹)이 성골 신분임이 틀림없는 진평왕의 딸 天明夫人과 혼인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같은 견해에는 따르기 어렵다.

²⁵⁾ 李丙燾,〈古代南堂考〉(《서울大論文集》1,人文社會科學,1954;《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1976,632~633等).

²⁶⁾ 三品彰英、〈骨品制社會〉(《古代史講座》7, 學生社, 1963), 192~200\,

²⁷⁾ 末松保和、〈新羅三代考〉(《史學雜誌》57-5・6, 1949;《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11~15쪽). 金庠基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여 놓은 바 있다(金庠基,〈國史上에 나타난 建國說話의 檢討〉,《建國大學術誌》5, 1964;《東方史論叢》, 서울大 出版部, 1974, 42~45쪽 참조).

²⁸⁾ 金哲埈、〈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下(《歴史學報》2, 1952), 99쪽. ——, 〈新羅時代의 親族集團〉(《韓國史研究》1, 1968; 앞의 책, 157~179쪽, 특히 169쪽).

와 일치한다는 견해가 나온 바 있다.²⁹⁾ 그러나 진골 신분의 경우 世代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독 성골 신분에만 그것 이 적용되었다는 견해에는 따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긴 같은 진골이라고 해도 정치적·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현실의 국왕과의 寸數 여하에 따라 그 우열에 차등이 있었을 터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분 자체에 어떤 변동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었다.

왕족의 골제가 성골과 진골로 갈라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해명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종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의미에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정치적 차원에서의 파악이다. 즉 7세기 중엽의 선덕·진덕·무열 3 王代를 중심으로 한 왕족의식의 변화라는 일반적인 배경에, 다시 직접적으로는 선덕여왕 때의 정치·외교문제가 성골의식을 촉발시켜 마침내 성골이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30) 이러한 발상법은 무엇보다도 성골·진골의 문제를 「골품 降下」라는 면에서만 추구한 종래의 연구법과는 달리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골 생성」의 면에 주목한 참신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덕여왕 말년에 일어난 상대등 毗曇의 반란(647)을 진압하면서 마침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은 여왕의 후계자로 진덕여왕을 옹립한 김춘추 일파가 진덕여왕을 성골로 떠받들면서 정작 자신은 진골에 머물렀다는 점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성골의 성립은 중고시대 왕실 혈족집단의 分岐化과정에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진골 최초의 왕인 무열왕의 가계집단을 보면 그 시조가 진흥왕의 次子인 眞智王이고, 한편 이와 對蹠的인 위치에 있던 가계로서는 진지왕의 맏형인 銅輪太子系가 상정된다. 진지왕은 동륜태자가 진흥왕 33년(572) 3월에 죽자 어린 조카 白淨을 제치고 즉위했으나, 재위 4년째 되는 해에 和白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폐위되었다. 백정이 즉위하여 진평왕이 되었는데, 당

²⁹⁾ 李鍾旭,《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嶺南大 出版部, 1980), 148~162 · 266~279쪽.

³⁰⁾ 井上秀雄,〈新羅の骨品制度〉(《歷史學研究》304, 1965;《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304~312쪽).

시는 국가불교의 고조기로 진평왕은 자신의 가족 이름을 釋迦의 가족 이름에서 고스란히 빌려올 정도로 가계의 신성화 작업에 집착했다. 여러 가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골은 바로 이 동륜태자의 직계 卑屬으로 구성된 왕실의 小家族집단이 일반 내물왕계 왕족의 진골 신분과 구별되는 상급 신분으로서 스스로 주장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된다.31) 이 점 성골의 개념이 불교 공인 후 불교의 종교적 신성 개념에서 도출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는32) 참고할 만하다. 皇龍寺 丈六尊像・9층탑과 더불어 이른바 신라 3寶의 하나로전해 내려오는 金玉으로 장식한 국왕의 實帶는 본디 진평왕이 쓰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사람들이 「天賜帶」33) 혹은 「聖帝帶」34)라 불렀다는 것도 성골의식의 발생을 암시하는 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삼국간의 항쟁이 한창 치열하던 국가 비상시기에 진평왕의 딸 선덕여왕이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골이라고 하는 특수한 왕족의식에 힘입은 바 컸던 것으로 집작된다. 실제로당시 신라인들은 여왕에게 「聖祖皇姑」35)라는 칭호를 올렸다고 한다.36)

(2) 두품제

두품제는 6頭品에서부터 1두품까지 모두 6개의 신분으로 구분되었는데, 종 래 이를 왕경 6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아 왔다.³⁷⁾ 실제로 골품제도는 6 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였던 만큼 이같은 견해에는 기본적으로 아

³¹⁾ 李基東、〈新羅 奈勿王系의 血縁意識〉(《歷史學報》53・54, 1972; 앞의 책, 31~35쪽).

³²⁾ 丁仲煥,〈新羅 聖骨考〉(《李弘稙回甲紀念 韓國史論叢》,新丘文化社,1969),33~52等.

^{33) 《}三國遺事》 권 1, 紀異 2, 天賜玉帶.

^{34) 《}高麗史》 권 2, 太祖 20년 5월 癸丑.

^{35)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선덕왕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傳.

³⁶⁾ 李基東, 앞의 글(1982), 142쪽. 辛鍾遠은 「聖祖皇姑」를 "신성한 祖先의 皇統을 이은 여인"으로 풀이하고, 이 청호를 당시 신라인의 성골 관념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간주한 바 있다(辛鍾 遠,〈'三國遺事'善德王知幾三事條의 몇가지 問題〉,《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 集》17, 1996, 45~48쪽 참조).

³⁷⁾ 今西龍, 앞의 책, 217쪽.
末松保和、〈新羅六部考〉(《京城帝國大學記念論文集》史學篇, 1936; 앞의 책, 307쪽).

무런 잘못이 없다. 다만 6부 중 가장 유력했던 及梁·沙梁·本彼의 3부가 6~4두품에, 그리고 3~1두품은 나머지 3부에 각기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³⁸⁾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6부는 전체적으로보아 그 우열에 차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각 부의 소속원들이모두 等質的인 성격을 띠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급량부나 사량부소속원 중에서도 신분이 낮은 자가 있었던 반면 열세한 韓岐部나 習比部도상대적으로 신분이 높은 자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요컨대 각 부 소속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두품 신분을 부여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두품제의 적용 대상이 된 족단 중에는 原新羅國을 구성했던 소위 斯盧부족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라가 연맹왕국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흡수 병합한 각 지역의 크고 작은 족장세력들이 포함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들은 각기 6부에 편제되었을 터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지방의 基層에 있던「干」이나「上干」층이 4두품으로, 그보다 큰 것이 5두품으로, 다시 그 위에 성립된 대족장급으로서 국가 형성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했던 자가 6두품으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39) 대체로 옳은 견해라고 생각되지만 다만 이같은 구분에는 다소간 막연하다는 느낌이들기도 한다. 또한 6~4두품이 지방세력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여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두품 가운데 가장 높은 6두품은 崔致遠이〈朗慧和尚碑〉의 협주에서 晋나라 陸機의《文賦》를 인용하여「得難」이라고 자부했듯이 매우 얻기 어려운 신분이었다. 그런데 이 신분의 기본이 되는 요소는 사로부족을 형성한 6촌 씨족장 가문 안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이에 의하면 6두품은 이밖에도 사로부족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에 병합된 성읍국가의 지배자들과 고구려・백제 멸망 후 신라에 포섭된 그 상급 귀족들, 또한 진골에서 한 등급 강등된 사람들이 여기에 첨가되어 갔을 것이라고 한다.40) 이와는 달리 6

³⁸⁾ 武田幸男, 앞의 글(1975), 189쪽.

³⁹⁾ 金哲埈、〈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一潮 閣, 1956; 앞의 책, 138~152等).

⁴⁰⁾ 李基白,〈新羅 六頭品 研究〉(《省谷論叢》2, 1971; 앞의 책, 1974, 39~57쪽).

두품은 중고시대 후반에 國士風의 하위 신분이 일부 특정한 진골세력에 대해 투철한 종속성과 충성심을 보임으로써 그 비호 아래 생성된 부류라는 견해도 있는데,41) 이는 당시의 신라사회를 족적인 제약과 部체제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차원에서 자유로히 새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할 수 있었던 시대라는 이미지를 토대로 하여 나온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6두품이 阿湌에서 級湌에 이르는 소위 干群 계열의 관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사실 간군 계열의 관등은 진골이 독점할 만한 관등이다. 그렇다면 6두품은 어느 시기에 이르러 국가권력에 의해서 진골 신분의 下位계층을 별개의 신분층으로 下向 고정시킴으로 해서 성립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게도 한다.

그것은 어쨌든 두품제의 성립 및 그 骨制와의 化合・合一의 시기를 둘러 싸고서도 학계에서 견해가 엇갈려 있다. 골제와 두품제 양자는 그 계통 내지 범주를 각기 달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어떤 연구자는 두품제의 성립시기를 9세기 초로 보고, 그것이 골제와 결합하게 된 것은 憲德王 14년(822) 金憲昌의 반란을 겪고나서부터의 일이라고 논단한 바 있다. 그는 그근거로 興德王 9년(834)의 敎書에 보이는 골품제에 입각한 色服・車騎・器用・屋舍 등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 두품제의 실태를 보여 주는 첫번째 자료인점을 들었다.42) 이와는 달리 두품제의 성립시기를 6세기 후반에서 찾으려는견해가 주목된다. 즉 두품제가 6두품에서부터 1두품까지로 되어 있듯 숫자가많은 쪽을 上位로 하는 특이한 명칭인 점에 착안, 이를《周禮》春官 大宗伯조에 보이는 九命制와 결부시켜 이 구명제를 정치이념으로 내걸었던 중국북조국가인 周의 관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사실 최치원은〈낭혜화상비〉의「득난」에 대한 협주에서 "數가 많은 것을 貴히 여기는 것은 마치 一命에서 九命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하듯 간접적으로나마 구명제

⁴¹⁾ 徐毅植,《新羅上代'干'層의 形成・分化의 重位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4), 167~174等.

⁴²⁾ 井上秀雄, 앞의 책, 320~324쪽.

그런데 1978년 학계에 알려진 경덕왕 14년(755) 제작의《華嚴經》寫經 跋文에 同 관여자들 중의 한 사람인 經題筆師 同智 大舍의 신분이 6두품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견해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두품제의 성립시기를 진흥왕 18년(557) 이후의 어느 시기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43) 이 6세기 후반 성립설은 그 뒤 지지자를 얻어 衣冠制와 稟主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를 진평왕대 초, 대체로 중앙관제가 발전·확립되는 시기로 보여지는 580년대에 구하여 골제와의 결합시기도 이 때쯤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44) 이와 마찬가지로 관등제도와 골품제도와의 대응이 일단 정착을 본 시기를 이 580년대에서 구하려는 견해도 나왔다.45)

그러나 이같은 견해에는 문제점이 없지도 않다. 앞서 지적한 대로 법흥왕 7년(520)의 율령반포 때에 17등 관등제도(京位)와 골품제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령 숫자가 많은 쪽을 上位로 하는 것이 두품제의 특징이라고 하더라도 신라가 이같은 발상을 반드시 북주를 통해서만 얻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 남조국가인 梁의 武帝는 508년 18班 관제를 제정했는데, 이 역시 숫자가 많은 쪽을 상위로 하는 제도였다. 그러므로 신라가 직접 교섭을 갖지 않았던 북주의 제도를 '간접적으로 輸入'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흥왕 8년 이래 직접 교섭이 있었던 양의 제도를 모방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순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된다.46)

두품제는 삼국통일 전쟁을 거치면서 차츰 사회적 분해작용을 겪은 듯하다. 신라가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을 4두품 이상으로 제한한 결과 3두품 이하는 이를 세분할 의의를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평민층과 하등 다를 바 없게 된 이들을 뒤에 平人 혹은 百姓이라 불렀다. 이처럼 골품제도는 한때 8등급으로까지 세분된 적이 있었으나 성골이 진덕여왕을 끝으로 소멸되고, 3두품・2두품・1두품이 평민으로 떨어진 결과 진골・6두품・5두품・4두품・백성의 5계층으로 정리되었다. 탈해가 龍城國의 사람인 양 말하였다는

⁴³⁾ 武田幸男, 앞의 글(1965), 13쪽.

^{----,} 앞의 글(1975), 190~191쪽.

⁴⁴⁾ 木村誠、〈6世紀新羅における骨品制の成立〉(《歷史學研究》428, 1976), 30~32쪽.

⁴⁵⁾ 三池賢一,〈新羅官位制度〉下(《駒澤史學》18, 1971), 21~22쪽.

⁴⁶⁾ 李基東,〈新羅 骨品制 研究의 現況과 그 課題〉(《歷史學報》74, 1977; 앞의 책, 36쪽 주 92) 참조.

이른바「八品姓骨」⁴⁷⁾은 신라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것을 기록한 듯하지만, 실은 이는 중고시대 말기 골품제도의 실태를 전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3) 불완전한 사회성층의 지표-화랑도

주지하듯이 골품제도는 골품, 즉 개인의 혈통의 尊卑・上下에 따라 정치적 인 출세는 물론 혼인이라든가, 그 밖에 가옥의 크기, 의복의 빛깔, 장신구인 器用, 심지어는 牛馬車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여러 가 지 특권과 제약을 가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그 族制的 · 세습적인 성격이 나 제도 자체의 엄격성으로 보아 흔히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비교되고 있다. 다만 골품제도는 카스트제도와는 달리 고유한 직업세습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족제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커다 란 약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골품제도의 계급성에 沮害的인 요인으 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집단으로서의 花郞徒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는 사회성층의 기초가 되는 성분 간의 결합이 약한 사회구조상의 상태를 「불완전한 성층」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기준으로서 흔히 거론되는 것이 연령집단이다. 그런데 前近代사회에서는 청소년집단이 보통 광범위한 연령집단을 이루는 조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본디 청소년집단은 가족 내지 친족단위가 그 성원의 충분한 사회적 지위 달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 회, 혹은 그것을 방해하는 듯한 사회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非親族的이며 또한 보편성의 원리 위에 규제되어 있는 사회에서 발 생하는 것이다.48)

이같은 사회학의 일반적인 知見을 갖고 볼 때 청소년집단으로서의 화랑도는 처음부터 골품제적인 사회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화랑도는 진흥왕 때, 그러니까 골품제도가 제정되던바로 그 시기에 조정에 의해서 개편된 뒤 약 1백년 간 전성을 누렸다. 그 때까지 촌락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해 온 청소년조직이 중앙에 흡수되면

^{47)《}三國遺事》 권 1, 紀異 2, 第四脫解王.

⁴⁸⁾ S. N. Eisenstad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ge Groups and Social Structure, The Free Press, 1956, p.133.

서 화랑도로 개편될 수 있었던 것은 율령의 수용에 따른 전반적인 법제화· 조직화 시책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골품제도 역시 율령 수용의 산물이었다. 요컨대 화랑도와 골품제도는 법제화 시대의 雙生兒 였다고 할 수 있다.

화랑도의 조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중앙집권화·법제화 시대의 산물이면서도 완전한 국가기구의 일부가 아니라 半官半民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의 청소년조직의 전통이나 遺制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아직 강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역시골품제도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전통적인 힘과 새로운 율령의 정신과의 타협의 소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화랑집단의 구성에서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은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더욱이 誓約의 형식을 통해서 조직되어 있는 점이다. 실제로 당시 화랑집단 구성원 사이에서는 서약의 관념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 점을 강하게 표현한다면 화랑도는 서약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화랑도는 신라사회의 혈연 제일주의, 씨족적 결합주의를 초월한 하나의 자치단체적 성격을 띤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나아가 이것이야말로 혈족집단을 토대로 하여 편제된 골품제도와는 그 구성원리상 서로 배치되는 점이다. 49) 더욱이 화랑집단은 서로 다른 여러 골품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의 수령인 화랑만은 진골귀족에서 뽑혔으나, 그를 따르는 낭도 중에는 왕경에 사는 진골 이하 하급 귀족, 그 밖에 일반 평민의 자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50) 요컨대 화랑도의 조직 자체는 왕경 안의 거의 모든 사회계층을 연결・망라한 포괄적인 집단이었다. 그들은 盟友・死友관계로 맺어져서 같은 목표를 향해 몇 해 동안 함께 수련생활을 했다. 그런데 이 수련이란 필경 화랑 아래서의 낭도 상호간의 사회작용인 것이며, 이를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화랑도 성원으로서의 一體性(Identity)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라 할

⁴⁹⁾ 李基東、〈新羅 花郎徒의 社會學的 考察〉(《歷史學報》82, 1979; 앞의 책, 332~335・353~354・356~357쪽).

⁵⁰⁾ 李基白,〈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198쪽. ———,〈韓國社會發展史論〉(위의 책), 231쪽.

수 있다. 이는 화랑도가 골품제와 같은 엄격한 신분제사회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신분간의 갈등・알력을 완화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된다. 사회계층을 형성・유지하는 메카니즘의 하나가 歸屬원리에 못지 않게 排他性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랑도 조직이 고취하고 있던 계층 간의 連帶性 제고 방향은 확실히 골품제도의 불완전한 성층 요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청소년집단 내부에는 공통의 生涯 유형(Life Style)이 발전해가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집단 조직은 유년기부터 성년기, 다시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장기간의 생활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51) 이같은 사실은 화랑도에서도 간파되고 있다. 《삼국유사》권 2, 紀異 2孝昭王代 竹旨郞조에 실려 있는 화랑 竹旨가 그 낭도였던 得烏를 비호했다는 이야기와 후일 득오가 죽은 죽지를 추모하여 향가를 지은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돈독한 관계가 평생토록 지속했던 것을 보여 주며, 이는 화랑도집단 성원 간에 공통의 생애 유형이 정착되고 있던 사실을 암시하는 자료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4) 골품제사회의 권력구조

다 아는 바와 같이 골품제도는 각자가 골품에 따라 차지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을 규정해 놓았으며, 한편 관직은 관등의 고하에 따라 부여되었다.이 점은 《삼국사기》권 38~40, 職官志 상·중·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실골품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카스트제적인 계층사회의 力動性은 정치적인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52) 그런 만큼 신라의 관등제도 및 관직체계에 대한 분석은 골품제사회의 권력구조를 해명하는 데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수가 있다. 더욱이 관등제도와 골품제도는 그 확립 시기를 거의 같이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서로 분리해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⁵¹⁾ S. N. Eisenstadt, *Social Differentiation and Stratification*,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71; 丹下隆一・長田攻一 譯,《社會分化と成層》(早稻田大出版部、1982, 94~95等).

⁵²⁾ Georges Balandier, *Political Anthropology*, Pelican Books, 1972, Chapter 4 Social Stratification and Power, 특히 p.86.

신라의 관등제도는 소위 京位와 外位로 크게 구별된다. 전자가 왕경 6부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후자는 왕경 이외의 지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왕경에 살던 사람들만이 골품제도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엄격히 말하자면 외위를 가진 사람들은 탈락계층(the outcaste)이었을 뿐이다. 사실 외위를 받더라도 관직을 얻을 수 없었고, 이 점 경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외위제는 그 나름의 일정한 의의와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골품제사회의 권력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외위제는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되어 있다. 이제 골품제사회의 권력구조를 경위제와 외위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위제-골품제도와의 대응관계-

본디 관등은 사로국시대 부족회의에서의 석차·계층에서 원류한 것으로 짐작된다.53) 그런데 많은 성읍국가를 망라한 연맹왕국 단계에 이르면 각기서로 다른 관등이 그대로 조정의 관제 속에 중첩되어 관직과 관등을 구별할수 없는 일종의 무질서 상태를 노출하게 되었다. 신라는 대체로 내물마립간때로부터 辰韓 12개 국을 아우르는 큰 연맹왕국시대로 돌입했는데, 이 무렵마련된 정청이 바로 南堂이었다. 이 남당에는 君臣의 좌석을 나타내는 소위橛標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서는 전하고 있다. 어쩌면 이 때쯤 되어서 관직의서열에 따라 宮中 席次가 정해지는 정치체제를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증왕 4년(503)에 만들어진 〈영일 냉수리 신라비〉에는 壹干支・阿干支・居伐干支・奈麻 및「干支」등의 관등 명칭이 보이고 있어 경위제가 마립간시대의 산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이 17등 관등제로 완성된 것은 국가체제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체제로 재편성된 법흥왕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율령의 수용이었다. 본디 율령은 그 정치이넘상 족제적인 신분제와는 상치하는 것이고, 관등제도 자체가 이미 율령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령 제정때 관등제도가 족제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도에 의해 규제되는 형태로 정착

⁵³⁾ 李丙燾, 앞의 글, 629~631쪽. 三品彰英, 앞의 글, 204쪽.

된 것은 당시 율령체제를 충실하게 강행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성장하지 못한 데 起因한다고 생각된다.

경위제가 17관등제로 완성되기 이전 단계에 12관등제의 시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伊伐湌과 伊湌은 하나가 二分된 것이고, 大阿湌은 阿湌에서, 大奈麻는 奈麻에서, 大舍는 舍知(일명 小舍)에서 각각 분화하고 大鳥와 小鳥는 鳥知에서 각각 2분된 것으로 보아 17등의 숫자는 12등으로 압축된다고 한다.54) 한편 韓・中・日 삼국의 位階制를 서로 연관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중국 品階制의 영향 아래 성립한 고구려 관등제도가 백제와 신라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 신라의 관등제도가 17등급으로 移行하는 중간에 고구려와 같은 12관등(혹은 13관등)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한다. 이 논자는 그 근거로 이별찬에서 대아찬까지의 5개 관등이 어느 시기에 한 관등(대아찬)으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55) 다만 이러한 견해는 근래 6세기 초두에 만들어진 신라 금석문자료가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17관등은 크게 干(Khan)群 계열과 非干群 계열의 두 개 群으로 나누어진다. 즉 이벌찬에서 級湌(級伐湌)까지의 9개 관등이 간군에 속하고, 대나마 이하 造位(先沮知)까지의 8개 관등은 그와는 다르다. 그러나 비록 비간군 계열이라고는 해도 어떤 점에서는 간군과 서로 통하는 일면이 엿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대나마와 나마는 나마(Na-maru)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큰 지역(那)의 우두머리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또한 (12)大舍와 (13)舍知는 사지(Maruchi) 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작은 지역 곧 마을(村)의 우두머리로 볼 수 있다. (15)大鳥와 (16)小鳥의「鳥」역시 이를 訓借音으로 읽을 때 首・長과 서로 통한다.56) 그러니까 간군과 비간군은 모두 일정한 지역세력의 우두머리를 가리키

⁵⁴⁾ 末松保和,〈梁書新羅傳考〉(《靑丘學叢》25, 1936; 앞의 책, 400~408쪽).

⁵⁵⁾ 宮崎市定,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朝鮮學報》14, 1959), 253~280쪽.

⁵⁶⁾ 徐毅植, 앞의 책, 37쪽. 단 maru群 京位에 대응하는 것을 外位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것이 순전히 京位的인 성격, 전통적・토착적 성격을 보여 준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武田幸男,〈新羅官位制の成立にかんする 覺書〉(武田幸男編,《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ァジァ》, 山川出版社, 1997), 122쪽 참조.

며, 양자의 차이는 다만 지배하는 지역의 크고 작음에 지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왕경 6부 자체가 이처럼 사로국의 영토 확장과정에서 새로이 획득한 각 지역의 다양한 지배층을 왕경에 결집함으로써 성립된 것이었다. 종래간군 관등과 비간군 관등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법흥왕대 초두에 邑落 首長의 신분서열로서 먼저 간군 경위가 창설되고 다시 진흥왕대에 이르러 나마ー사지군 경위와 간군 외위가 추가적으로 설치됨으로 해서 진평왕 때 경위・외위가 완성되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57) 법흥왕 11년(524)에 만들어진 울진 봉평리 소재 신라비석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경위・외위제가 이미 법흥왕대 완성단계에 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58)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등제도는 골품제적인 신분제가 전제가 되어 성립된 것이지만, 다만 우리들이 《삼국사기》 직관지의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17관등과 여러 골품신분간의 대응관계가 정착된 시기를 둘러싸고서는 학계에서 약간의 논쟁을 빚고 있다. 직관지 규정에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 제1관등인 이벌찬에 이르기까지는 "오직 진골만이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신분은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진골은 관등 승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6두품은 그 승진 한계가 제6관등인 아찬으로 규제되어 있다. 한편 公服 빛깔로 미루어 볼 때 靑衣에 상당하는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 黃衣에 상당하는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로 각기 제한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제6관등으로부터 제9관등까지의 소위 간군 계열의 관등이 6두품에게 「개방」된 것은 간군 관등이 분화된 결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필경 본래의상태에서 변질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5의 이같은 의미에서 6두품 신분은 종래의 干層에서 유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非干層이 그 간 신흥세력으로 성장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60) 한편 진골귀족이 최고위 관등을 독점하는

⁵⁸⁾ 盧泰敦,〈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韓國古代史研究》2, 1989), 183쪽.

⁵⁹⁾ 三品彰英, 앞의 글, 203~204쪽.

⁶⁰⁾ 徐毅植, 앞의 책, 167~171쪽. 다만 그는 "6두품은 그 하위의 신분이 진골귀족에게 國士로 인정받아 오르게 되는 말하자면 획득되는 신분"이라고 했는데(徐毅植, 위의 책, 172쪽), 이는 몇몇 특정한 사례를 갖고 6두품 전체에 해당하는 것인 양 확대 해석한 느낌이 든다.

배타적·독자적인 신분층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도 간군 관등이 어느정도 분화된 시기의 현상으로 생각되며, 어쩌면 그 시기는 진골로서 관등을 가진 자에게 牙笏을 갖도록 한 교서가 나온 진덕여왕 4년(650) 4월 무렵으로일단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61) 《삼국사기》권 33, 志 2, 色服조에의하면, 법흥왕 때의 制습에는 제5관등인 대아찬 이상 太大角干까지 紫衣를입은 자나 혹은 제9관등인 급찬 이상 제6관등인 아찬까지 緋衣를 입은 자는모두 아홀을 갖도록 하였다.

한편 관직은 관등의 규제를 받았다. 신라의 관직체제를 보면 중앙의 제1 급 官府인 部・府의 경우, 제1등관으로서의 장관직인 令(집사부는 侍中, 位和府 는 衿荷臣), 2등관으로서의 차관직인 卿(집사부는 侍郞, 병부는 大監), 3등관으로 서의 대사, 4등관으로서의 사지 그리고 제5등관으로서의 史 등 5단계로 되어 있다. 이 5단계 조직은 神文王 5년(685)에 종전의 4단계 조직에 사지를 신설 함으로 해서 완비되었는데, 그 중 특히 령은 대아찬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 로 제한한 결과 진골만이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6두품은 차관직에 그 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5두품은 대사직에, 4두품은 史직에 한정되지 않 았을까 짐작된다. 또한 6停·9誓幢을 비롯한 주요 군부대의 지휘관인 장군직 (정원 36명, 경덕왕 때 3명 증원)도 진골만이 차지할 수 있었으며, 부지휘관인 大官大監(정원 62명)의 경우 6두품에게 개방되기는 했으나 그 보임 관등이 대 나마 이상 4重阿湌까지로 되어 있는데 비해 진골은 대나마보다 하위인 사지 이상이면 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지방장관직인 州의 都督도 보 임 관등이 급찬~이찬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진골만이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보이지 않으나, 이 역시 진골이 독점한 듯하다.62) 결국 6두품은 군직 으로는 최고로 서북 일선지대인 황해도 平山에 그 본영을 두고 있는 浿江鎮 典(782년 설치) 장관직인 頭上大監을 차지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지방관직으 로는 도독 아래의 州助(일명 州輔)나 郡太守가 될 수 있는 데 불과했다. 실제

⁶¹⁾ 徐毅植, 위의 책, 119쪽.

⁶²⁾ 邊太燮,〈新羅官等의 性格〉(《歷史教育》1, 1956), 67等.

申瀅植,〈新羅 軍主考〉(《白山學報》19, 1975;《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4, 212零).

로 6두품 출신으로 중앙의 執事部侍郎직과 패강진전 두상대감을 최후로 하여 관직에서 물러난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⁶³⁾

이처럼 골품제사회는 어디까지나 진골귀족 만능의 사회였다. 그 바로 밑의 6두품 신분은 얻기 어려운 신분이라는 뜻에서「得難」이라 불려지기도 했으나, 역시 관직 진출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삼국사기》권 47, 薛罽頭傳에 의하면 설계두는 비록 衣冠子孫이기는 했으나 신라가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골품에 입각하여 진정 그 족속이 아니면 아무리 큰 재주와 뛰어난 功이 있더라도 주어진 한계를 뛰어 넘을 수가 없음을 불만으로 여겨 진평왕 43년(621) 몰래 배를 타고 중국(唐)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薛氏가 대표적인 6두품 가문 중의 하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그는 6두품 출신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64) 6두품 출신이 느끼는 불만과 좌절이 이와 같았다면 5두품 이하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라 조정이 6두품 이하에게 제한된 관등 범위 안에서나마 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은 사실이다. 소위 重位制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6두품에게는 重阿湌으로부터 4重阿湌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5두품에게는 重大奈麻로부터 9重大奈麻까지, 그리고 4두품에게는 일종의 특례로 重奈麻로부터 7重奈麻로까지 승진의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65) 다만 나마 관등의 경우 그 중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4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은 대사인 만큼, 만약 4두품을 위해서 특진제도를 마련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대사에 적용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66)

또한 중위제의 제정 시기를 둘러싸고서도 학계에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

⁶³⁾ 李基東,〈新羅 下代의 浿江鎭〉(《韓國學報》4, 1976; 앞의 책, 222~224쪽).

⁶⁴⁾ 李基白, 앞의 책(1974), 39~40쪽.

⁶⁵⁾ 三池賢一, 앞의 글(1971), 20~21쪽. 그는 4두품 출신 國學 수학자에 대한 특전 으로 마땅히 大舍(제12관등)에 적용해야 할 重位가 바로 그 위인 奈麻에 설정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⁶⁶⁾ 邊太燮, 앞의 글, 70~76쪽. 한편 奈麻 중위제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는 혹 삼국 통일 후 신라에 歸附한 옛 백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다 (權惠永,〈新羅 官等 阿湌·奈麻에 對한 考察〉,《國史館論叢》21, 國史編纂委員會, 1991, 53~55쪽 참조).

다. 삼국 통일전쟁 기간 중에 몇 차례 걸쳐 단행된 文武官 전원에 대한 한 등급 관작 승진조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중위제가 성립된 것이 아닐까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67) 내물마립간 때로부터 진평왕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설정되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후자에 의하면, 마립간시대에이미 나마 중위제가 古拙한 형태로나마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 뒤 그것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아찬 중위제가 새로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즉 아찬 중위제는 6두품이 독자적인 신분층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진평왕 때 나타난 것으로,이는 그 자체 비간층이 종전의 나마 중위제의 제약을 뛰어 넘어 간군 관등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갔던 사정을 반영한다고 한다.68) 이같은 견해는 논리적으로는 성립될 수 있겠으나, 다만 중고시대의 사회 분위기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된다.

(2) 외위제—지방촌락사회의 계층구조—

앞에서 보았듯이 사로국의 정복과정에서 그에 의해 병합된 각 지역의 유력 首長層은 왕경으로 옮겨져 6부에 편제되었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지역세포망을 구성하고 있던 村의 수장층들은 대부분 그대로 재지세력으로 남게되었다. 외위는 바로 이들에게 주어진 관등이었다. 외위제의 제정 및 완성시기는 경위제와 거의 같은 6세기 전반경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즉 下干支이하 阿尺에 이르는 하위 5개 관등은 법흥왕 11년(524)에 만들어진〈蔚珍 鳳坪 新羅碑〉에 모두 나타나 있고, 540년대 말경으로 짐작되는〈丹陽 赤城碑〉에는 撰干支가, 그리고 진흥왕 22년(561)에 만들어진〈昌寧 眞興王 巡狩碑〉에는 述干 등 상위 관등이 등장하고 있어 늦어도 이 때쯤에는 11관등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비간군 외위가 6세기 초에 먼저 성립되고 뒤이어 6세기 중반경에 간군 외위가 성립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69)

⁶⁷⁾ 李基東, 앞의 책, 134~135쪽.

⁶⁸⁾ 徐毅植, 앞의 책, 162~178쪽.

⁶⁹⁾ 朱甫暾, 앞의 글(1990), 262~268쪽. 이와는 달리 逸聖尼師今 5년(138)경에 干・一尺・一伐・彼日・阿尺의 5등관제로 성립되었다가 법흥왕 7년(520)경에 干位에 上干・選干・貴干・高干・述干・嶽干 등이 설치되어 11관등제로 발전했다는 설도 있다(李仁哲, 앞의 책, 135쪽 참조).

외위 관등은 크게 간군 계열 7개 관등과 비간군 계열 4개 관등으로 되어 있다. 이 11개 관등은 그 제1관등인 嶽干이 경위 제7관등인 一吉湌에 대응하면서 차례로 경위 17등 체계에 맞추어 편성되었는데, 다만 이 가운데서 악간은 실제로 문헌 및 금석문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 실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다.70) 한편 그 다음가는 述干・高干・貴干・撰(選)干・上干・干(下干) 등은 6세기 중엽 이후의 금석문이나 문헌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이 중 술간은 유력한 村主層에게 부여한 관등인 듯하다. 《삼국사기》권 1, 祗摩尼師今조에는 先王인 婆娑王이 韓岐部의 伊湌 許婁에게 「酒多」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酒多」는 뒤에 角干(일명 舒弗郎)이라일컬었다고 한다. 이는「술한」으로 訓讀할 수 있어71) 그 명칭의 연원이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외위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정비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중 간군 계열 관등을 명칭상 借音표기 관등(述干・撲干)과 借訓표기 관등(嶽干・高干・貴干・上干・下干)으로 대별하여, 전자가 먼저 성립되고 후자는 훨씬 뒤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72)

그런데 외위 관등 중 비간군 계열에 속하는 一伐·一尺·彼日(波旦)·阿尺이 경위 관등의 一伐干(이벌찬)·一尺干(伊尺淮, 이찬)·波珍干(파진찬)·阿尺干(아찬)과 명칭상 서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흥미를 끈다. 즉 국왕 직속의 최고위 관등 명칭이 지방 수장층인 干 아래의 臣僚層에 해당하는 관등 명칭과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왕이 기층사회의 수장층인 간과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3) 다만 이들 경위 관등 명칭이 외위 명칭에서 기원한 것인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다.

외위제는 어디까지나 경위제와 別個의 관등체계이고, 설령 외위 관등을 갖고 있더라도 관직을 받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외위를

⁷⁰⁾ 李鍾旭、〈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歷史學報》64, 1974), 56~65等.

三池賢一, 앞의 글(1971), 28~29쪽.

武田幸男, 앞의 글(1977), 108쪽.

⁷¹⁾ 李宇泰, 〈新羅의 村과 村主〉(《韓國史論》 7, 서울大, 1981), 114쪽.

⁷²⁾ 徐毅植, 앞의 책, 50~51쪽.

⁷³⁾ 徐毅植, 위의 책, 12~14쪽.

받은 재지세력가들은 村主·軍師·公兄 등의 직책을 받아 중앙에서 파견된 幢主 혹은 道使·邏頭와 같은 행정관을 도와서 촌락민으로부터 조세 및 力 役을 징발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바꿔 말하면 외위제는 지방통치의 말단에 서 행정관과 촌락민을 연결시켜 주던 행정고리의 역할을 수행했다.74)

외위제의 기능은 이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골품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지방민의 신분제로서도 기능했다. 외위 관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민의 신분 계층을 구분해 보면 대체로 세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즉 최상위 계층은 촌주로 대표되는 干群 관등을 가진 유력자들로, 이들은 지방민을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계층이다. 두번째 계층은 非干群 관등을 가진 계층으로, 이들은 간군 계층과 일반 촌락민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최하위 계층은 외위를 받지 못한 일반 촌락민이었다.75)

신라는 삼국통일전쟁이 막바지 고비에 이른 7세기 중반경에는 軍功을 세운 軍師 등 지방세력가들에게 선별적으로 외위 대신 경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일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고구려 '백제로부터 항복해 온 관인층에게 경위를 주었다. 그러던 중 문무왕 14년(674)을 기하여 모든 지방세력가들에게 외위 대신 경위를 부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경위 일원화의 방침에 따라 마침내 외위제는 폐지되었다. 그리하여지방세력가의 새로운 신분개념으로 대체된 것이 眞村主 · 次村主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하지만,76) 그 자세한 내막은 잘 알 수 없는 실정이다.

〈李基東〉

⁷⁴⁾ 權惠永,〈新羅 外位制의 成立과 그 機能〉(《韓國史研究》50・51, 1985), 93~103쪽.

⁷⁵⁾ 權惠永, 위의 글, 103~109쪽.

⁷⁶⁾ 權惠永, 위의 글, 109~110쪽.